

研究報告 27
1981. 10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研究

金 基 成(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現代國家에 있어서 課稅의 주요 理念의 하나는 그 衡平에 있으며, 財政 需要의 증가와 社會構造의 複雜 多樣化는 課稅의 衡平을 더욱 絶실히 요구하고 있다. 農民을 대상으로 실시한 輿論調査에서도 農地稅賦課에 대한 그들의 不平은 稅額의 絶對額 증가나 過多보다 課稅의 不公平과 相對的隔差 등에 그 根源을 두고 있었으며, 대체로 租稅不滿은 大農보다 中農層에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 經濟가 成長爲主의 開發政策에 의하여 全體 國民所得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그것이 반드시 國民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었다고 반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궁이 되는 현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農村의 경우도 經濟的으로 發展은 하였지만 상당수의 農民이 農業과 農村을 떠나 都市로 집중함으로써 農村에는 農業勞動力 부족이라는 심각한 現象을 초래하고 있으며, 政府는 營農後繼者育成을 위하여 새로운 政策을 강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研究結果에 따르면 그와 같은 農民의 離農向都의 主要原因이 그들의 所得不滿에 있고 그밖에 敎育, 醫療 및 文化惠澤 등의 미흡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本「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研究」는 바로 이와 같은 農民의 所得不滿을 일부라도 解消키 위한 方案의 하나로 租稅輕減에 의하여 農民의 絶對的 및 相對的 所得補填策을 찾고자 수행된 것으로서, 現行 稅制自體의 일부 不合理 非現實性 등으로 인한 農民의 租稅不滿도 아울러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 機會에 農民의 負擔稅輿論은 어떠하며 그 理由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代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을 파악하고, 研究檢討하는 것은 農民의 所得을 補填하고 農村社會의 安定 및 農民의 福祉向上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問題는 農民의 擔稅輿論이나 稅制의 分析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이나 이 研究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체로 그 範圍에 머물렀으며, 다만 그 점을 다소 보완키 위하여 租稅 이외에 公課金의 부담이나 農業補助金의 歸屬 및 公共投資惠澤의 受惠度 등을 아울러 고찰하고, 農民租稅 중 가장 比重이 큰 農地稅制에 관하여는 그 變遷過程이나 租稅思想史的 意義로 음미하는 등 비교적 多角的 接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租稅負擔의 문제는 상대적이고, 主觀的 및 社會心理的 要因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農民의 擔稅行態를 겨냥한 租稅課徵行政의 客觀化도 요청되며, 특히 현재 國會審議 중인 稅制改革案에서 都市勤勞者의 綜合所得稅 輕減論이 제기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都農間의 課稅衡平化도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懸案問題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納稅者가 누구이든 그는 거의가 國民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國家次元의 租稅政策도 最高決定者의 價値基準에 따라 可變의 일 수 있으므로, 本研究結果에서 제시하는 農民의 租稅制度 改善方案도 여러 政策變數와의 충분한 調和 속에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研究報告書가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參考資料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研究를 직접 담당한 金基成 責任研究員에게 感謝를 드린다.

이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研究者의 견해이며 本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81. 10.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甫 炫

目 次

머 리 말

第 1 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1
2. 研究의 方向과 制約條件	3
3. 研究의 範圍와 方法	4
4. 研究의 主要內容	7

第 2 章 農民의 租稅負擔 概況

1. 農民의 所得과 租稅公課金 負擔	8
2. 農業補助金과 農民의 福祉惠澤	14

第 3 章 農地稅

1. 序(前提)	17
2.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位置와 稅制上의 特徵	19
3. 農地稅制의 變遷過程과 租稅思想史의 意義	25
4. 農地稅의 法規的 側面과 農民의 担稅行態	36
5. 農民의 農地稅 負擔現況과 問題點	48

第 4 章 其他 租稅 및 公課金

1. 住民稅。財産稅。防衛稅	74
2. 取得稅와 登錄稅	88
3. 所得稅(山林。畜産。讓渡。事業所得稅)와 相續稅 및 贈與稅	92
4.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105

5. 農地改良組合會費	110
第 5 章 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減免	113
第 6 章 結 論 및 提案	125
註 및 參考文獻	142

表 目 次

第 2 章

表 2 - 1	都農間 所得比較(戸當) (1970 ~ 1980)	9
表 2 - 2	都農間 可處分所得 推移(戸當) (1970 ~ 1979)	10
表 2 - 3	都市間 租稅公課金負擔 推移(1970 ~ 1979)	11
表 2 - 4	租稅公課金中 農地稅의 比重과 그 推移(1971 ~ 1979)	12
表 2 - 5	郡單位 市郡稅 稅目別 構成(農地稅 등 比重)(1977, 1979)	12
表 2 - 6	都農間 醫療, 通信, 教育, 文化施設 比較(1979)	16

第 3 章

表 3 - 1	地方財政의 農地稅 依存率(1978)	22
表 3 - 2	地方財政, 地方稅收 및 農地稅 規模 推移(1971 ~ 1978)	23
表 3 - 3	農地의 基準收穫量 等級表	37
表 3 - 4	農地稅의 稅率構造	39
表 3 - 5	農地稅 納付農家 現況	43
表 3 - 6	農民의 2 大農地稅不滿	43
表 3 - 7	農民의 農地稅確認行態	44
表 3 - 8	甲類農地稅 納付形態別 選好性向	46
表 3 - 9	一線行政實務者의 農地稅 理解率	47
表 3 - 10	一線行政實務者가 본 農民의 農地稅不滿要因	48
表 3 - 11	農民의 農地稅負擔 現況(1979)	50
表 3 - 12	農民의 農地稅負擔 推移(1971 ~ 1979)	51
表 3 - 13	甲類農地稅負擔 推移(1972 ~ 1979)	52
表 3 - 14	甲類農地稅 納付形態別 稅額 推移(1975 ~ 1979)	54

表 3 - 15	乙類農地稅負擔 推移(1972 ~ 1979)	55
表 3 - 16	國民總生產額中 農地稅比重 推移(1971 ~ 1979)	56
表 3 - 17	農地稅担稅率 現況과 推移(1971 ~ 1979)	58
表 3 - 18	都農間 所得稅負擔 現況 比較(1980).....	59
表 3 - 19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 推移(1977 ~ 1979)	62
表 3 - 20	家計費와 基礎控除 및 都農間基礎控除額比較(1977 ~ 1979)	63
表 3 - 21	農地稅基礎控除額 推移(1973 ~ 1979)	65
表 3 - 22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比較(1981)	66
表 3 - 23	甲類農地稅의 平均課標와 쌀의 段收 推移(1977 ~ 1979)	70
表 3 - 24	品種別・地域別 乙類稅對象作物 所得標準率差(1980)	72

第 4 章

表 4 - 1	均等割 住民稅의 稅率(標準稅率).....	76
表 4 - 2	所得割 住民稅의 稅率	76
表 4 - 3	農民의 住民稅負擔 現況(1977 ~ 1980)	78
表 4 - 4	土地課稅 時價標準額表	80
表 4 - 5	財産稅의 徵收率 및 郡稅의 比重(1975 ~ 1979)	82
表 4 - 6	市道別 農地稅와 財産稅負擔額比較(1977~1979)	83
表 4 - 7	課稅客體別 財産稅賦課現況과 推移(1975 ~ 1979)	83
表 4 - 8	土地中 田畝別 財産稅賦課現況과 推移(1975 ~ 1979)	84
表 4 - 9	防衛稅의 國家財政上 位置와 比重推移(1973 ~ 1979)	85
表 4 - 10	取得稅의 地方稅收中 比重(1975 ~ 1979)	89
表 4 - 11	登録稅의 地方稅收中 比重(1977 ~ 1979)	92
表 4 - 12	稅目別 內國稅 徵收現況(1975 , 1979)	93
表 4 - 13	山林所得의 所得階層別 算出稅額(1979)	94
表 4 - 14	綜合所得稅의 稅率	95
表 4 - 15	農家副業의인 畜産의 範圍	97

表 4 - 16	所得種類別 所得稅 賦課額規模(1975 ~ 1979)	97
表 4 - 17	讓渡所得稅 對象別 算出稅額 (1979)	98
表 4 - 18	讓渡所得稅 特別控除稅率 推移(1968 ~ 1980)	99
表 4 - 19	讓渡所得稅率	100
表 4 - 20	現行法定相續分 및 計算例	103
表 4 - 21	相續稅의 稅率	103
表 4 - 22	贈與稅의 稅率	104
表 4 - 23	附加價值稅의 國家稅收 寄與率	107
表 4 - 24	特別消費稅의 國家稅收 寄與率	109
表 4 - 25	農地改良組合 會費 賦課基準	111

第 5 章

表 5 - 1	所得稅 免除對象 畜産施設 및 規模	119
---------	--------------------------	-----

第 6 章

表 6 - 1	農民의 租稅公課金負擔額推定試算表(耕地規模 및 營農模 型別)	127
表 6 - 2	農民의 租稅公課金負擔率推定表(耕地規模 및 營農模型別)	130
表 6 - 3	農地稅基礎控除額再調整試案	134
表 6 - 4	農地稅 稅率構造 再調整試案	135

圖 目 次

第 1 章

圖 1 - 1	農民租稅負擔問題의 提起	2
圖 1 - 2	租稅政策의 所得再分配機能	4

第 2 章

圖 2 - 1	地方稅의 團體別, 稅目別構成(1979)	13
---------	-----------------------------	----

第 3 章

圖 3 - 1	農業部門에 관한 政党別 選舉公約 中 農地稅問題의 比重	18
圖 3 - 2	租稅體系(1981.6 月末 現在)	20
圖 3 - 3	地方財政 中 農地稅伸張趨勢	24
圖 3 - 4	舊韓末의 國稅體系(1909 ~ 1910)	26
圖 3 - 5	光復直前(1945)의 國稅體系	28
圖 3 - 6	1961 년도 稅制改革으로 설정된 租稅體系	30

第 4 章

圖 4 - 1	防衛稅新設當時의 國稅體系	86
---------	---------------------	----

第 6 章

圖 6 - 1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所得基準 稅率構造圖	136
---------	------------------------------	-----

第 1 章

序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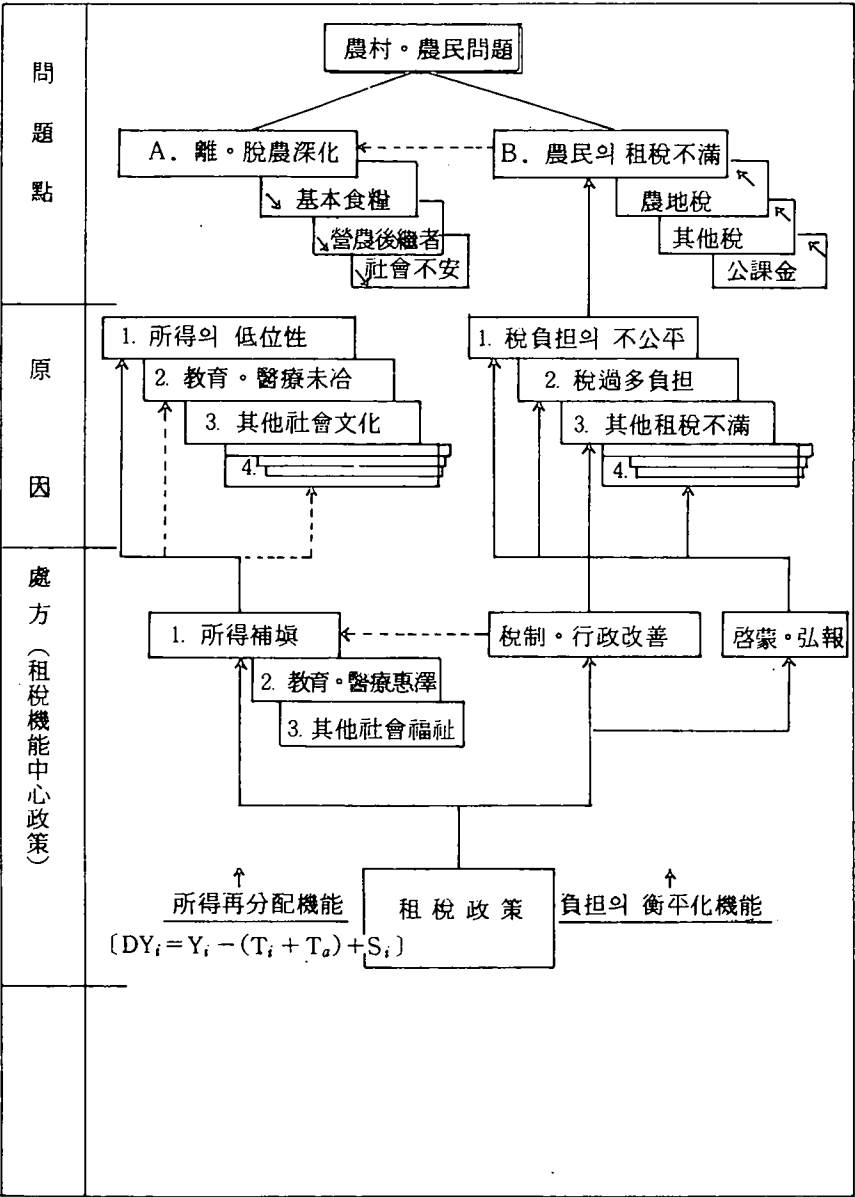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目的

1970년대 초기부터 실현된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증가한 韓國農民의 所得水準은 1979년에 農家戶當 2,227,500 원, 農家口員 1인당 442,800 원 수준에 달함으로써 10년전 對比 10배 이상 늘었고, 1974년부터는 都農間 所得隔差도 상당히 완화되어 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¹⁾ 그러나 農民의 所得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서 教育, 文化 및 醫療惠澤 등의 低位性과 더불어 農民의 脫·離農 내지 離村向都 促進의 主要因이 되어 왔다.²⁾

한편 이와 같은 農民의 所得 및 福祉問題와 관련하여 낮은 可處分所得, 그리고 그와 表裏關係에 있는 農民의 租稅不滿 또한 현재 農村·農業의 한懸案問題로 提起되고 있다.³⁾ <圖 1-1>

이 研究는 이와 같이 農民의 離·脫農 現象과 可處分所得의 變動을 통하여 그 離·脫農의 요인이 되면서 그 자체가 主要 農村問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農民의 租稅不滿이 農民의 都市民에 대한, 小農의 大農에 대한 所得 分配의 不平衡性 내지 相對的 被奪意識에서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 租稅가 지니는 所得再分配 내지 負擔衡平化라는 일반적 機能을 중심으로 農民의 可處分所得에 영향을 미치는 農業租稅의 現實問題를 조사분석함으로써, 農民의

圖 1-1 農民租稅負擔問題의 提起



* B는 그 自體가 獨立的으로 農村의 現實問題인 同時에 A에 대한 促進要因으로 提起되고 있음

租稅不滿要因을 검증하고 關聯稅制 및 稅務行政上的 問題點 導出과 改善方向 내지 方案을 모색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方向과 制約條件

가. 研究의 力向

1) 이 研究는 都農間 租稅負擔의 衡平性 여부를 검증하는 客觀的, 制度的인 側面과 農民의 租稅不滿을 진단하는 主觀的, 社會的 側面的 兩面的 接近을 시도한다.

2) 農民의 都市民에 대한 相對的 被奪意識을 그 眞否를 가려서 農民의 誤認에 의한 租稅不滿을 최소화하고, 실재하는 不衡平性을 시정키 위하여 主로 都農間 比較分析에 연구의 着점을 맞춘다.

3) 直接稅로서 都農間 比較가 비교적 용이하고 所得과 직결되는 의미있는 稅目으로는 農地稅와 綜合所得稅를 선정, 主要 分析對象으로 한다.

4) 都農間 衡平性 比較의 補完的 根據로서 租稅負擔과 相反概念인 補助金 및 公共投資惠澤의 歸屬問題를 同時 比較한다.

5) 分析結果로 도출된 問題點에의 處方은 法規 및 제도적 分析和 輿論分析의 結果에 의거 稅制의 改善과 對農民 弘報·啓蒙·指導 등 間接 支援策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나 이 연구는 前者, 즉 稅制改善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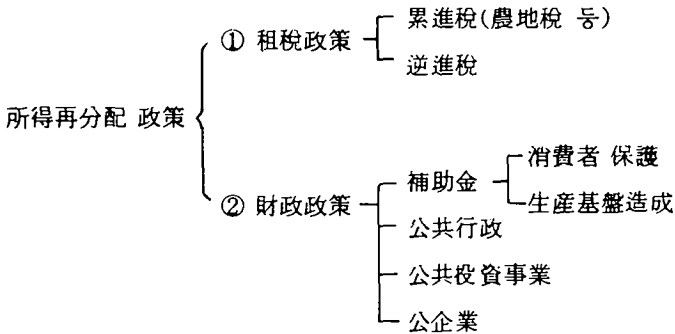
나. 制約條件

1) 所得分配의 衡平化 내지 租稅負擔의 公平性問題, 특히 都農間 및 大小農間の 所得分配의 衡平化論理는 所得再分配政策 中 租稅政策이 지니는 限界性⁴⁾ 때문에 이 研究에서 제시되는 稅制改善方向 내지 方案도 어디까지나 稅制分析 結果에만 한하여 근거한 것이다(圖 1-2).

2) 이 研究에서 실시한 輿論調査 結果로 분석된 農民의 租稅不滿속에 내포되어 있을, 農民의 無知와 沒理解에 인한 오도된 불만을 선별,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處方으로서의 不滿解消 方案은 稅法이나 稅制의 改

善만으로는 미흡하다.

圖 1-2 租稅政策의 所得再分配機能



3) 納稅者의 입장에서 주는 것(稅金)과 받는 것(補助金, 公共投資惠澤 등)의 定量的 비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租稅面의 분석만으로는 都農間 衡平性의 判斷尺度로서 한계가 있다.

4) 社會, 經濟 및 政治의 背景과 位置가 다른 農民과 非農民(도시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直接比較方式이 都農間 衡平性 判別에 암시하는 妥當性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5) 都市勤勞者가 부담하는 農地稅(甲類, 乙類 모두)은 모두 그에 적용되어야 할 事項(예컨대 稅率, 基礎控除)의 絶對적 및 相對적인 最適水準이란 그 基準이 명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最適代案의 “最適性”에는 한계가 있다(예: 農地稅와 綜合所得稅 또는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의 稅率이나 課標間隔은 어느 水準이 最適水準인가에 대한 客觀적 尺度가 애매하다).

3. 研究의 範圍와 方法

가. 研究의 範圍

1) 이 研究는 租稅가 개인의 可處分所得 決定의 한 주요 變數이라는

점에 착안, 그 범위를 $DY_i = Y_i - (T_i + T_a) + I_i + S_i$ 및 $DY_i = f(Y_i, T_i, T_a, I_i, S_i)$ 의 兩關係式에서 租稅의 機能 中 특히 農民이 부담하는 農業租稅가 役割할 수 있는 所得再分配機能으로 압축하여 고찰한다(단, DY_i : 個人可處分所得, Y_i : 所得, T_i : 非農業租稅, T_a : 農業租稅 및 公課金⁶⁾, I_i : 借入金利子, S_i : 補助金임).

2) 이 研究에서 지칭하는 「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概念上 範圍는,

가) 農民 또는 農家の 概念에는 一般 農業從事者와 山林・漁業從事者 中 農業를 병작하면서 農地稅를 납부하는 農民을 포함하고,

나) 租稅의 概念에는 國稅 및 地方稅를 중심으로 하되, 分析의 필요에 따라 公課金도 포함한다.

이때 國稅에는 所得稅, 相續稅(贈與稅 포함), 防衛稅 등 直接稅를 대상으로 하고, 印紙稅, 附加價值稅 및 特別消費稅 등 일부 間接稅가 포함되며, 地方稅에는 農地稅, 財産稅, 住民稅 등 直接, 普通稅가 중심이 되어 取得稅, 登錄稅 등 間接稅가 포함된다. 그리고 國稅 中 所得稅는 事業所得 中 林業所得, 畜產所得, 山林所得 및 讓渡所得에 관한 稅金, 相續稅와 贈與稅는 주로 農地와 家屋 등에 한한 것 만을 분석범위로 한다.

다) 公課金の 범위는 諸組合費(農地改良組合會費, 山林組合會費 등)와 軍警援護會費, 赤十字會費, 部落協議會費 및 里長・班長租 등 公的 性格을 띤 諸負擔(都市家口는 防犯費, 赤十字會費 등 家計를 위한 각종 公的 性格의 非事業的 支出의 概念⁸⁾임)을 포함하되 그 中 農地改良組合會費에 比重을 둔다.

3) 이 研究에서 추구하는 稅制改善의 法規의 根據는 上記 國稅基本法과 地方稅法 이외에 租稅減免規制法, 農地擴大促進法, 農村近代化促進法, 公有水面埋立法, 相續稅法, 附加價值稅法 및 特別消費稅法 등에 둔다.

나. 研究方法

1) 研究의 進行過程

이 研究는 入手 가능한 文獻 및 統計資料의 조사와 現地實態調查, 資料分析, 討議 및 諮問 등의 過程으로 進行한다.

가) 文獻調査

關聯稅法 및 既存論文과 關聯機關 등의 公式 및 非公式資料의 蒐集分析.

나) 現地調査

農民과 郡, 面의 稅務行政實務者(財務係職員) 등 상반된 立場의 兩集團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前者는 全國規模의 2,464 戶 農家에 대한 郵便調査를, 後者는 現地 標本地域(忠北陰城, 慶北義城, 全北任實, 鎭安郡 등) 邑面 事務所 勤務 現・前職 財務担当 職員에 대한 面接調査를 실시 함.

다) 資料의 蒐集과 分析

農民的 租稅反應 내지 担稅意識構造는 輿論調査에서 나타난 農民的 担稅行態分析을 통하여, 農民的 租稅負擔現況을 비롯한 기타 諸統計는 農水産部, 內務部, 經濟企劃院, 國稅廳 등 關聯政府機關의 公式資料와 研究機關 및 大學 등에서 調査集計한 資料 등을 인용, 분석함.

라) 討議 및 諮問

研究設計過程에서의 討議와 研究結果中間報告會 등을 통하여 農經研 일부 研究陣의 諮問과 內務, 農水産部 및 農水協 등 關聯機關 實務經驗者들의 개별적 助言 등을 참고함.

2) 分析方法

가) 이 研究는 稅制 및 對農民 租稅行政體制의 改善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國稅와 地方稅, 都市(都市勤勞者)와 農村(農民), 制度와 行態 및 問題와 處方이라는 다각적 相對的觀點에서 體制分析의(system analysis)으로 접근한다.

나) 體制分析의 接近法에 의하여 數的合理性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缺陷과, 지나친 計量化 위주에서 야기되는 質的分析의 脆弱性은 실증적, 규범적 접근의 병행으로 보완한다.

다) 이 研究에서 直接, 주로 사용한 分析道具는 時系列・製表分析(table analysis)이다.

4. 研究의 主要内容

1) 農民의 종합적인 租稅負擔狀況을 農地稅를 주축으로 한 直接稅 중심으로 조사, 분석, 고찰한다.

2) 農民이 國家社會로부터 받는 補助金 및 公共投資의 惠澤은 어떻게 귀속하는가를 아울러 파악한다.

3)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 중 가장 比重이 큰 農地稅에 관하여,

가) 그 特徵 및 租稅體系, 地方財政上的 位置

나) 農地稅制의 變遷過程과 租稅思想史的 意義

다) 稅法(地方稅法)上 農地稅制의 全貌와 農民의 担稅行態

라) 農民의 農地稅負擔 概況과 問題點 등을 분석, 검토한다.

4) 農地稅 이외의 農民負擔 諸租稅(예: 財産稅, 附加價値稅 등) 및 公課金 負擔狀況도 종합적으로 검토, 고찰한다.

5) 農民負擔의 諸租稅의 減免事項(關聯條項 등)을 재점검한다.

6) 分析結果로 도출된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問題點을 중심으로 農地稅制 등 稅制改善을 위한 政策建議事項을 집약, 제시한다.

第 2 章

農民의 租稅負擔 概況

1. 農民의 所得과 租稅公課金 負擔

가. 農民의 所得水準

序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農民의 所得水準은 農業構造改善을 통한 農業生産性の 向上과 多收穫新品種의 開發普及, 價格支持政策 및 農外所得 增大政策 등에 의하여 이제 과거 1950 ~ 60 년대와 같은 絶對貧困의⁹⁾ 水準은 탈피하였으며, 그 결과로 農家의 家口當所得이 都市家口의 所得水準을 상회하였다는 기록도 남겼다.¹⁰⁾ 그러나 家口員 1인당 所得은 여전히 都市家口에 뒤지고 있으며(1970 ~ 79 년 : 60.5 % ~ 96.4 % 수준으로), 특히 1978 년부터는 都農間 所得隔差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農家所得은 家口當으로나 家口員 1인당으로나 모두 都市勤勞者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表 2-1).

한편, 農家의 可處分所得은 1979 년에 家口當 2,148 千원, 家口員 1인당 413 千원으로서 1970 년 對比 名目上으로 각각 862 %, 983 %씩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農家所得中 可處分所得의 比重은 減少勢를 보였으며(1970 년의 97.4 % → 1979 년에는 96.4 %로) 都市勤勞者의 所得 중 可處分所得의 比重이 增加趨勢에(1970 년의 93.7 % → 1979 년에는 96.4 %로) 있는 것과는 反對現象을 나타냄으로써 都農間 實質所得隔差 擴大相을 반

영하고 있다(表 2-2).

表 2-1 都・農間 所得 比較(戶當)(1970~1980)

年 度	家 口 當 所 得			家 口 當 人 員		1 人 當 所 得		
	農 家 (a)千圓	都 市 (b)千圓	對 比 (a/b)%	農 家 人	都 市 人	農 家 (c)千圓	都 市 (d)千圓	對 比 (c/d)%
1970	255.8	381.2	67.1	5.81	5.34	44.0	71.4	61.6
1971	356.4	451.9	78.9	5.93	5.28	60.1	87.2	68.9
1972	429.4	517.4	83.0	5.99	5.27	71.7	98.2	73.0
1973	480.7	550.2	87.4	5.98	5.25	80.4	104.8	76.7
1974	674.5	644.5	104.7	5.65	5.21	119.4	123.7	96.5
1975	872.9	859.3	101.6	5.57	5.15	156.7	166.9	93.9
1976	1,156.3	1,151.8	100.4	5.47	5.05	211.4	228.1	92.7
1977	1,432.8	1,405.1	102.0	5.34	4.76	268.3	295.2	91.1
1978	1,884.2	1,916.3	98.3	5.18	4.68	363.7	409.5	88.8
1979	2,227.5	2,629.6	84.7	5.03	4.64	442.8	566.7	78.1
1980	2,773.2	3,205.2	86.5	5.02	4.54	552.4	706.0	78.2

資料：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1980.

나. 農民의 租稅 및 公課金 負擔

1971년에 農民이 부담한 租稅 및 公課金은 農家戶當 평균 4,137 원으로서 農家所得에 대한 租稅公課金 負擔率은 1.16%였는데 이 比率은 계속 증가하여 1978년에는 1.68%, 1979년에는 2.10%에 達하였다(表 2-3). 이에 비하여 都市勤勞者家口는 1971년(26,760 원, 5.02%)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78년에 2.49%, 1979년에는 2.15%선까지 하락함으로써 農家の 租稅公課金 負擔率과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였는 바(表 2-3), 만일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農家は 都市家口보다 더 높은 率의 負擔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租稅公課金 負擔率의 都・農間接近은 언뜻 보아서 均衡의인 듯 하나 都・農間の 所得隔差가 현저한 한 여전히 租稅配分의 應能原則에는 어긋나며 農民의 相對的 重負擔 現象은 계속될 것이다.

表 2-2 都・農間 可処分所得推移(戸當)(1970～1979)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79/70
可 處 分 所 得											
都市勤勞者家口(A)	千圓 357.1 (66.9)	424.4 (80.4)	438.5	517.9	627.6	828.2	1,099.3	1,348.0	1,843.6	2,535.0 (551.1)	7.1 倍
農 家 口(B)	千圓 249.1 (42.9)	349.4 (58.9)	421.7	470.2	659.9	852.7	1,127.1	1,386.7	1,825.8	2,147.5 (426.9)	8.6 倍 9.9 倍
B / A (%)	69.7	82.3	86.3	90.8	105.1	103.0	102.5	102.9	99.0	84.7	—
所得中可処分所得比											
都 市 家 口(A')	93.7	93.9	94.4	94.1	97.4	96.4	95.4	95.9	96.2	96.4	—
農 家 口(B')	97.4	98.0	98.1	97.8	97.8	97.7	97.5	97.5	96.9	96.4	—

()内は 1人當 所得임.

資料：經濟企劃院，「都市家計年報」，1980.

農水産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1980.

表 2-3 都・農間 租稅公課金負擔 推移(1970~1979)

區分 年度別	都市勤勞者家口			農 家 口		
	所得(A)	租稅公課 金 (B)	負擔率 (B/A)	所得(C)	租稅公課 金 (D)	負擔率 (D/C)
1970	451,920원 (532,800)	24,480원 (26,760)	5.42 % (5.02)	356,382원	4,137 원	1.16 %
72	517,440 (637,680)	28,920 (32,880)	5.89 (5.16)	429,394	4,282	1.00
73	550,200 (678,240)	32,280 (39,600)	5.87 (5.84)	480,711	6,399	1.33
74	644,520 (690,240)	9,720 (10,200)	1.51 (1.48)	674,451	8,720	1.29
75	859,320 (891,120)	20,520 (20,520)	2.39 (2.30)	872,933	12,687	1.45
76	1,151,760 (1,198,680)	35,400 (37,320)	3.07 (3.11)	1,156,254	19,540	1.69
77	1,405,080 (1,512,000)	36,120 (40,440)	2.57 (2.67)	1,432,809	26,723	1.87
78	1,916,280 (2,094,120)	45,600 (52,200)	2.38 (2.49)	1,884,194	31,590	1.68
79	2,629,596 (2,879,424)	55,810 (61,788)	2.12 (2.15)	2,227,483	46,862	2.10

() 內는 서울시 勤勞者家口.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9.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80.

다. 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主要 稅目別 構成

地方稅 中 郡單位 諸稅 統計가 農民의 租稅負擔 狀況을 가장 현실적
으로 반영해 준다. 農民이 主納稅者인 郡稅 中 農民의 부담과 直結되는 稅
目은 住民稅, 財産稅 및 農地稅 等으로서 그 構成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 및 公課金 中 農地稅의 比重은 農家單位에서
(微視的 觀點에서) 볼 때, 1971년에 44~47%, 1975년에 69~73%, 및
1979년에는 53~56% 等으로서 지난 10년 동안의 實績基準으로 44~
74% 수준이었으며(表 2-4), 國家全體의인(巨視的) 觀點에서는 郡單位
普通稅 中 農地稅의 比重은 1977년에 61.8%, 1979년에 57.9% 等으로
최근 3년 동안 60% 수준이었다(表 2-5). 財産稅는 郡單位 基準으로
普通稅 中에서 점하는 比重이 1977년에 21.0%, 1974년에 20.4% 등이었
고, 住民稅는 역시 郡單位 基準으로 普通稅 中 占有率이 1977년에 13.0%,

表 2-4 租稅公課金中 農地稅의 比重과 그 推移(農家戶當)

單位: 원, %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租稅公課金(A)	4,137	4,282	6,399	8,720	12,687	19,540	26,723	31,590	46,862
農 地 稅 ¹⁾									
總 農 家 (B)	1,822	2,150	3,300	5,823	8,760	13,544	16,036	19,929	24,814
耕 種 農 家 (C)	1,942	2,176	3,497	6,183	9,236	14,373	16,871	21,460	20,009
B/A	44.0	50.2	51.6	66.8	69.0	69.3	60.0	63.1	53.0
C/A	46.9	50.8	54.6	70.9	72.8	73.6	63.1	67.9	55.5

註: 1) 徵收額基準(단, 賦課額對 徵收額比는 1970 ~ 1980 년 사이에 98 ~ 99 % 水準임).

2) 畓作, 田作, 果樹栽培, 菜蔬栽培, 特作栽培農家의 合計值임.

資料: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80.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表 2-5 郡單位 市郡稅 稅目別 構成¹⁾(農地稅 등 比重)

	1977	1979	79 / 77	79 - 77
全國道稅收合計 ²⁾ (A)	59,043.0 百萬 원	96,953.7 百萬 원	1.64 倍	37,910.7 百萬 원
市 (普通稅) (B)	56,226.6	89,120.8	1.59	32,894.2
住 民 稅 (a)	7,336.2	13,300.1	1.82	5,963.9
財 產 稅 (b)	11,813.9	18,154.2	1.54	6,340.3
農 地 稅 (c)	34,743.5	51,617.3	1.49	16,873.8
其 他	2,333.0	6,049.2	2.59	3,716.2
目 的 稅 (C)	1,869.0	7,557.6	4.04	5,688.6
過 年 度 收 入	947.4	275.3	0.29	△ 672.1
構 成 比 (%)	B/A	95.2	91.9	△ 3.3 포인트
	a/B	13.0	14.9	+ 1.9 "
	b/B	21.0	20.4	△ 0.6 "
	c/B	61.8	57.9	△ 3.9 "

註: 1) 決算額 기준.

2)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제외.

資料: 內務部, 「지방재정연감」, 1978. pp.1026-1027, 1980. pp.1062-1063.

1979년에 14.9 %의水準으로서 農民의 租稅負擔에는 農地稅部門의 比重이 가장 높다.

특히 財産稅에는 家屋分 및 土地分 중 非農地分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農民과 直接關聯된 부분은 위의 構成比보다도 적을 것이 분명하고, 住民稅는 農業 및 農家所得 등과의 직접 관계없이, 都農間 구별도 없이 均一原則에 의하여 賦課되는 均等制 部分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構成比는 그 보다 낮을 것이다.

한편, 地方稅 稅目別 構成比를 서울, 釜山, 道, 市, 郡 등 團體別로 보아도 1979년에 서울이 取得稅, 住民稅(20.5%) 登錄稅의 順이며, 釜山은 取得稅, 登錄稅, 財産稅(17.4%) 등의 順이고, 全國 市는 財産稅(27.8%), 住民稅(23.7%), 都市計劃稅 등의 順, 全國 郡은 農地稅(53.6%), 財産稅(18.7%) 및 住民稅(13.5%) 등의 順으로 분포되어 있어 역시 郡單位 이하 地方財政에 있어서의 農民負擔의 主要 稅目은 農地稅, 財産稅, 住民稅 등이며 그 중에서도 農地稅가 지배적이다(圖 2-1).

圖 2-1 地方稅의 團體別 稅目別 構成(1979)

서울	取得稅 (21.1%)	登錄稅 (18.5%)	住民稅 (20.5%)	財産稅 (12.0%)	自動車稅 (10.8%)	其他 (17.1%)
釜山	取得稅 (25.4%)	登錄稅 (17.8%)	住民稅 (11.5%)	財産稅 (17.4%)	自動車稅 (8.2%)	其他 (19.7%)
道	取得稅(61.3%)			登錄稅(32.2%)		免許稅 (6.5%)
市	住民稅 (23.7%)	財産稅 (27.8%)	都市計劃稅 (14.3%)	自動車稅 (14.1%)	其他 (20.1%)	
郡	農地稅(53.6%)			財産稅 (18.7%)	住民稅 (13.5%)	其他 (14.2%)

資料 :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2. 農業補助金과 農民의 福祉惠澤

앞에서는 農民의 租稅公課金 등 國民된 입장에서 農民이 國家社會에 대하여 지는 負擔의 推移와 現況을 都農間에 비교, 고찰하였다. 이제 그 반대로 農民이 國家로부터 받는 측면에서 補助金과 公共投資의 惠澤 등을 요약 검토해 봄으로써 都農間 衡平化 實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農民에게 주어진 稅外的인 條件, 즉 補助金 및 社會福祉의 側面에서 公共惠澤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앞에서 고찰한바 租稅公課金面에서의 都農間 不平衡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農民租稅의 過負擔의 不平衡性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農業補助金

農業補助金은 過去 實績에 비추어 대략 大麥補助金, 米穀補助金, 肥料補助金 등으로 구분되는바, 우선 大麥補助金에 있어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보리栽培는 收益性이 낮고 水稻作과의 勞動力 競合 등으로 인하여 農民은 원치 않으면서도 國家의 主穀自給政策에 호응키 위하여 생산을 계속해 옴으로써 糧特赤字 등을 통한 國家補助形態로 실현된 것이다. 이 大麥補助金의 歸屬에 관해서는 아직 엄밀한 計數化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市中 價格보다 비싼 값으로 政府에 매상한 農民(生産者)과 市價보다 싼 값으로 보리쌀을 구입한 都市勤勞者(消費者)에게 골고루 귀속되었을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이미 租稅公課金面에서 과리된 都農間 衡平化에의 寄與度는 희박한 것임을 시사한다.

米穀補助金에 있어서는 지난 1973~1979년 기간 동안 高米價政策 등에 의하여 政府資金이 米穀部門에 투입되었으나, 同期間에 米穀의 政府收買價格(生産者米價) 上昇率이 21.9%였음에 비하여 米穀의 平均生産費 上昇率은 23.6%에 달함으로써 아무리 米穀補助金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價格面, 즉 農家交易條件에 있어서 農民은 불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反面에 같은 기간에 米穀의 放出價格 上昇率은 14.5%로서 消費者 物價上昇率

15.6 % 수준을 하회함으로써 生産者인 農民보다 消費者인 都市勤勞者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米穀補助金の 都農間 衡平化 寄與도 반드시 긍정적일 수 만은 없다.¹¹⁾ 끝으로 肥料補助金은 대체로 農民 일변도로 귀속되고 있으나, 첫째, 이 肥料補助金の 惠澤은 耕地 規模에 비례하여 大農일수록 單位面積當 補助金 歸屬額이 증가하는 傾向¹²⁾에 비추어 農業內部에서 大農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小農에 불리한 衡平阻害의 要因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둘째, 水稻作農家の 경우 甲類農地稅 課額을 米穀의 粗收入基準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肥料増投에 따른 生産費增加分에 對해서도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론상 甲類農地稅 負擔額 중 일부(肥料増投分에 賦課된 稅額만큼)는 肥料補助의 惠澤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衡平寄與的 要因은 못된다.

나. 公共投資 등에 의한 福祉惠沢

醫療, 教育, 文化, 通信 및 기타 生活環境 등 農民의 社會福祉的 側面은 現段階에서 都市勤勞者에 비하여 깊은 분석없이도 農民이 현저히 불리한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病院과 學校의 數 및 電話, 텔레비전의 普及率을 비교해 보면, 1979 년에 病院은 大都市인 서울과 大邱가 總人口 對比 0.028 ~ 0.029 %임에 비하여 農村인 舒川郡의 경우는 0.010 %에 불과하며, 高等學校 學級數는 서울이 人口對比 0.72 %, 大邱가 0.10 %임에 비하여 舒川郡은 0.06 %이다. 電話는 加入台數基準으로 서울과 大邱가 각각 11.3 %와 8.6 %였음에 비하여 舒川郡은 3.8 %에 불과하며, 텔레비전 普及率은 大邱 19.9 %, 舒川郡은 11.7 %였다(表 2-6). 이상 租稅公課金 負擔과 農業補助金 및 公共投資惠澤 歸屬, 즉 農民의 國家에 대한 給付와 受引의 兩面에 있어서의 都農間 比較考察을 통하여, 農民이 都市勤勞者에 비하여 過負擔, 低受惠的 立場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研究가 의도한바,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面의 關聯問題를 導出하고 改善方向을 모색키 위하여는 보다 넓은 深層分析을 요한다.

表 2-6 都農間 醫療, 通信, 教育, 文化施設 比較(1979)

區 分 地域別	醫療保健施設		教 育 機 關 ²⁾				其他通信文化	
	病院 ¹⁾	保健所	幼 稚 園		高 等 學 校		電 話 ³⁾	T V
			學級數	保母數	學級數	教員數		
서울特別市 (人口: 8,114,021名)	個所 2,295 % (0.028)	個所 15	學級 550 % (0.007)	名 1,367	學級 5,825 % (0.72)	名 13,495	台 919,348 % (11.33)	—
大邱直轄市 (1,572,824名)	459 (0.029)	5	131 (0.098)	353	1,561 (0.10)	3,185	135,769 (8.63)	313,240 (19.92)
舒 川 郡 ⁴⁾ (139,118名)	14 (0.010)	1	5 (0.004)	8	84 (0.06)	162	5,929 (3.80)	16,278 (11.70)

() 內는 人口對 100 分比.

註: 1) 綜合病院, 病院, 醫院 計(단, 齒科, 漢醫, 助産院 除外).

2) 公私立計.

3) 業務用, 住宅用, 公衆用 加入台數.

4) 郡內邑까지 포함.

資料: 各 地域別 統計年報(1980).

第 3 章

農 地 稅

1. 序(前提)

이 연구에서 農地稅에 더 비중을 두어 深層分析을 요한 이유는 “第 2 章 11 페이지” 및 “第 2 章 15 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앞으로 稅制改革案을 다루게 될 現 國會의 議員選舉 당시 民意를 의식하고 國民 앞에 내세운 각 政黨別 農業部門政策 公約事項 중 이 農地稅制 改善(輕減) 問題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다는〈圖 3-1〉政·經的 배경에도 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農地稅는, 그것을 財政收入源의 주요한 일부로 징수하고 있는 國家(地方自治團體)의 입장에서 보면, 「郡」單位 기준으로 一般會計豫算의 歲入部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3%~11.3%(1978, 1979년) 수준이고, 「郡」自體收入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34%(1978, 1979년), 그리고 「郡」의 地方稅收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62%(1978~1979년) 등인바, 農地稅는 地方自治團體(특히 郡)의 自體收入源의 대종으로서 地方財政上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편, 農地稅를 所得 중에서 부담하게 되는 支出의 일부로 보는 擔稅者인 농민의 입장에서는, 農地稅는 農家所得 對比 1.47~1.70%(1978, 1979년) 수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增加 傾向이며, 農家の 家計費와 비교하면 1.5%(1978, 1979년) 수준이고, 농가의 租稅公課金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63%(1978, 1979년) 등의 수준인바, 이와 같은 현실은

圖 3-1 農業部門에 관한 政黨別 * 選舉公約中 農地稅問題의 比重

	公約事項	政 黨 別					
		民 正	民 韓	國 民	社 會	民 社	民 權
1	營農資金 確保	○					
2	農民肥料代金 確保	○					
3	農藥基金 國庫積立	○					
4	農藥代金 貸出利子 免除	○					
5	農業用水開發 融資金利 引下	○					
6	農漁民後繼者 定着基金 確保	○					
7	機械化營農推進基金 確保	○					
8	高米價政策實施	○	○				
9	農地稅 減免	○	○	○			
10	農水產災害保險實施		○				
11	農村遊休勞動力 吸收對策(農閑期)		○				
12	小作制度廢止				○		
13	보리生産費 國庫補助					○	
14	輸入飼料原料 보리로 代替					○	
15	絶對農地 確保						○
非 農 業 部 門	免稅 및 稅制改善(非農業部門)		○	○	○		
	高速道路建設	○	○				
	地域開發	○	○				

* 當時(1981. 3 ~ 4 月) 存在했던 政黨.

農地稅가 농가의 所得과 支出面에서, 그리고 地方財政收入과 農民負擔支出이라는 양측면에서 모두 높은 비중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국 農地稅의 賦課와 徵收 및 관련 문제는 政策의 優先順位 내지 價值 比重을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收入 측면에 둘 것인가, 아니면 농가의 所得補填 내지 家計安定의 측면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歸着된다. 그러데 農地稅에 대한 농민의 여론을 포함하여 現行 農地稅制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地方政府는 그 財政收入源을 農地稅 이외의 手段, 예컨대 其他稅收, 稅外收入 및 中央政府로부터의 地方交付金 등의 비율을 증

대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農地稅에 대해서는 일단 그 부담의 不平衡性이나 稅率構造의 불합리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稅制 및 租稅行政 面의 妥當한 改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의 農地稅部門에서는 이와 같이 농민의 租稅負擔 合理化를 위한 稅制 운영면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전제 아래, 現行農地稅制가 지닌 문제 요인을 最少化하고, 그 制度的 改善 方向의 모색과 理論的 근거를 음미하는 데 비중을 두며, 현행 稅法上 農地稅는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로 구분되어 있으나, 농민의 절대 다수가 甲類農地稅 對象作物인 벼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農地稅 納付農家의 86% 이상이 甲類農地稅 納付者이고, 徵收稅額面에 있어서도 83~87%(1975~1978년)가 甲類農地稅인점을 감안하여 甲類農地稅 우선으로 분석 검토코자 한다.

2.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位置와 稅制上的 特徵

가. 租稅體系上 農地稅의 위치

韓國의 租稅體系上 農地稅의 위치는 稅制史的으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왔으나 現行 稅法上으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圖 3-2).

1) 農地稅는 課稅主體를 기준으로 하여 國稅와 對位概念인 地方稅法에 의거 地方自治團體가 부과하는 地方稅에 屬하고,¹⁾ 地方稅 중에서도 市郡이 부과하는 市郡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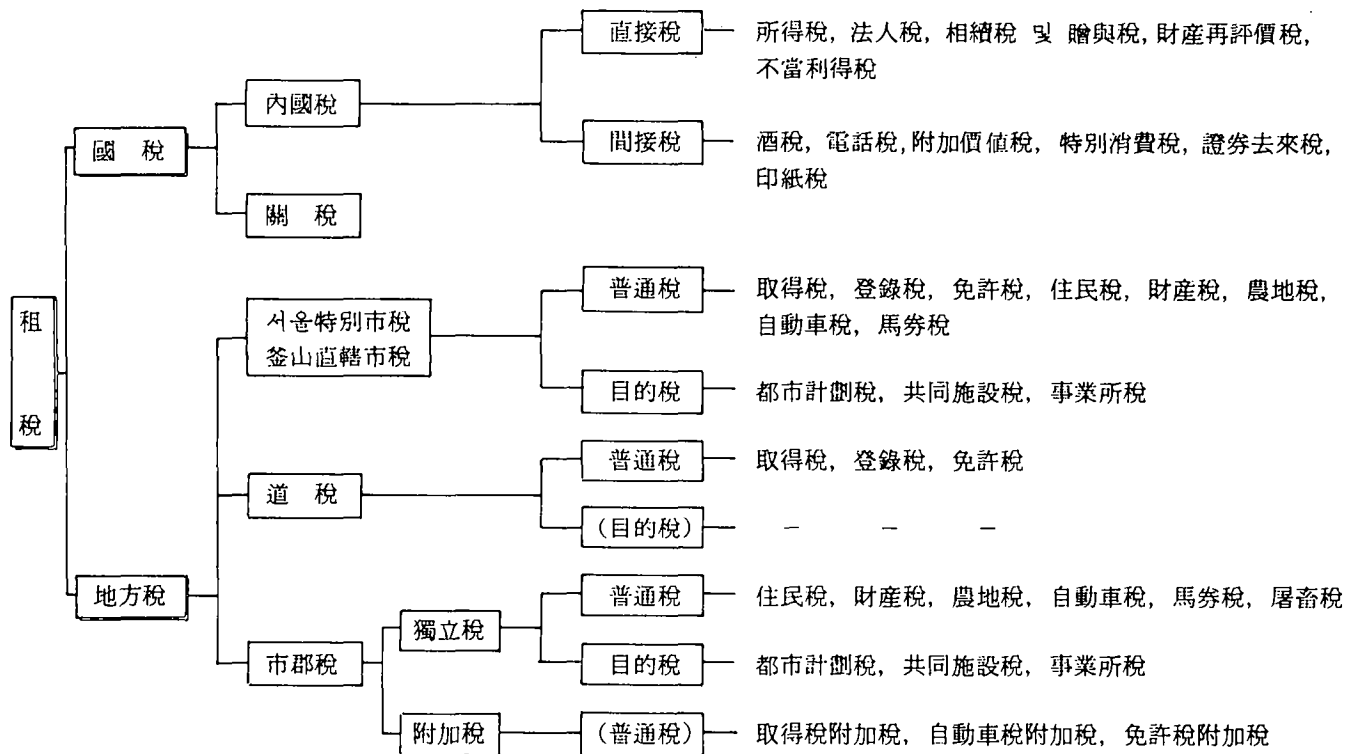
2) 農地稅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일부인 道稅 등에 부수되는 附加稅가 아니라 市郡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獨立稅이다.

3) 農地稅는 都市計劃이나 教育事業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農土에 농사를 짓는 경우 농민에게 부과되어 市郡의 一般財源이 되는 普通稅이다.

4) 農地稅는 納稅者와 擔稅者가 일치함으로써 間接稅의 對位概念인 直接稅에 屬한다.

5) 農地稅는 원칙상 地方稅 중 市郡稅에 속하기는 하나 서울特別市,

圖 3 - 2 租稅體系 (1981 年 6 月末 現在)



釜山直轄市, 大邱 및 仁川直轄市 市民(農民)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서울特別市稅 및 直轄市稅 中の 普通稅에 속하기도 한다.

나.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比重

地方自治團體의 總收入 豫算規模에 대한 農地稅의 비중은 전국 단위로 2.55%(1978년) 수준이며, 서울과 釜山을 제외한 各道(市郡) 단위로는 3.76%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地方財政의 개념을 狹義의 一般會計 豫算規模로 보면, 1978년의 경우 總收入 1,261,609 백만원 중 地方稅收入 額이 445,734 백만원이고, 그중 農地稅收入은 44,318 백만원(그중 甲類農地稅는 36,804 백만원 : 83%)으로서 一般會計豫算(地方財政)의 農地稅 依存率은 3.51%, 稅收 중 農地稅의 비중은 9.9%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서울과 釜山을 제외할 경우 각각 5.0%와 23.0%에 달하며, 전국 郡단위만으로는 稅收 중 農地稅의 비중이 61.8%(1979년은 53.2%)라는 높은 수준이다(表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年度 財政自立度는 서울이 96.2%, 釜山이 91.1%임에 비하여 道(市+郡) 단위의 財政自立度는 42.9%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地方財政上 農地稅의 비중이 1976년의 6.6%에서 1978년에 4.5%로 감소함으로써 道 단위 이하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의 脆弱性을 드러내고 있다(表 3-2). 한편 稅額規模의 伸張率은 1979년에 地方稅가 1970년 대비 1,803%였음에 비하여 農地稅는 1,718%에 달하였는바(圖 3-3), 1976년까지는 農地稅 伸張率은 地方稅 伸張率을 현저히 상회하였으되, 그 정도는 1977년 이후 점감되어 1979년에 이르러서는 地方稅 伸張率을 약간 하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地方財政의 自立度提高를 위해서는 농민으로부터의 農地稅 增徵에 의하는 것보다 稅外收入源의 개발에 더 노력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다. 稅制上 農地稅의 특징

1) 農地稅는 地方稅法에 의거 原則上 農地를 客體로 하고 그곳에서 얻는 收得을 稅源(課稅標準)으로 하여 收得者에게 부과하는 收益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表 3 - 1 地方財政의 農地稅 依存率¹⁾ (1978)

	全 國 計	서 울	釜 山 및 道			郡 計 ²⁾
			計	釜 山	道 (市+郡)	
總 財 政 規 模 (A)	1,736,090 百萬元	462,715	1,273,376	103,628	1,169,748	—
그 중 一般會計 (B)	1,261,690 百萬元	298,869	962,821	71,567	891,254	—
地 方 稅 收 入 (C)	445,734 百萬元	206,097	239,636	45,606	194,030	69,002
그 중 農 地 稅 ³⁾ (D)	44,317 百萬元	124	44,176	196	43,997	42,658
總財政중 農地稅比率 (D/A)	2.55 %	0.03	3.47	0.19	3.76	—
一般會計의 農地稅依存率 (D/B)	3.51 %	0.04	4.60	0.27	4.93	—
稅收중 農地稅比率 (D/C)	9.9 %	0.06	18.4	0.43	22.7	61.8 (53.2)
總財政중 一般會計 (B/A)	72.7 %	64.6	75.6	69.1	76.2	—
一般會計의 稅收依存率 (C/B)	35.3 %	68.9	24.9	63.7	21.8	—
財 政 自 立 度 ⁴⁾	58.2 %	96.2	46.4	91.1	42.9	—

註: 1) 決算額 基準. 2) () 內는 '79 數值.

3) 서울, 釜山을 제외한 市 農地稅 收入額은 1,363 百萬元, 全國의 郡 農地稅 收入額은 42,658 百萬元임 (徵收額基準).

4) 狹義의 自立度 概念인 $\frac{\text{地方稅} + \text{稅外收入}}{\text{一般會計規模}} \times 100$ 에 의한 自立度임.

資料: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9.

內務部, 「地方稅年鑑」, 1979.

表 3 - 2 地方財政, 地方稅收 및 農地稅의 推移(賦課額¹⁾ 基準)

區分 年度	地方財政 ²⁾ (A)	稅收 (B)	農地稅(C)	甲類農地稅 (D)	比 率		
					C/A	C/B	D/C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	%	%
1971	160,237	39,811	4,522	3,734	2.8	11.4	82.6
1975	348,876	169,042	21,025	17,525	6.0	12.4	83.4
1976	483,904	233,731	31,785	27,515	6.6	13.6	86.7
1977	662,265	349,448	36,096	30,352	5.5	10.3	84.1
1978	988,032	460,341	44,529	36,804	4.5	9.7	82.7
78/71(%)	616.6	1,156.3	984.7	985.6	—	—	—

註: 1) 農地稅 賦課額 중 徵收實績은 1965 ~ 78 年 사이에 98.4 ~ 99.6 %였음.

2) 一般會計歲入額 基準임.

資料: 內務部, 「地方財政年鑑」, 1979.

內務部, 「地方稅統計」, 1976, 77, 78,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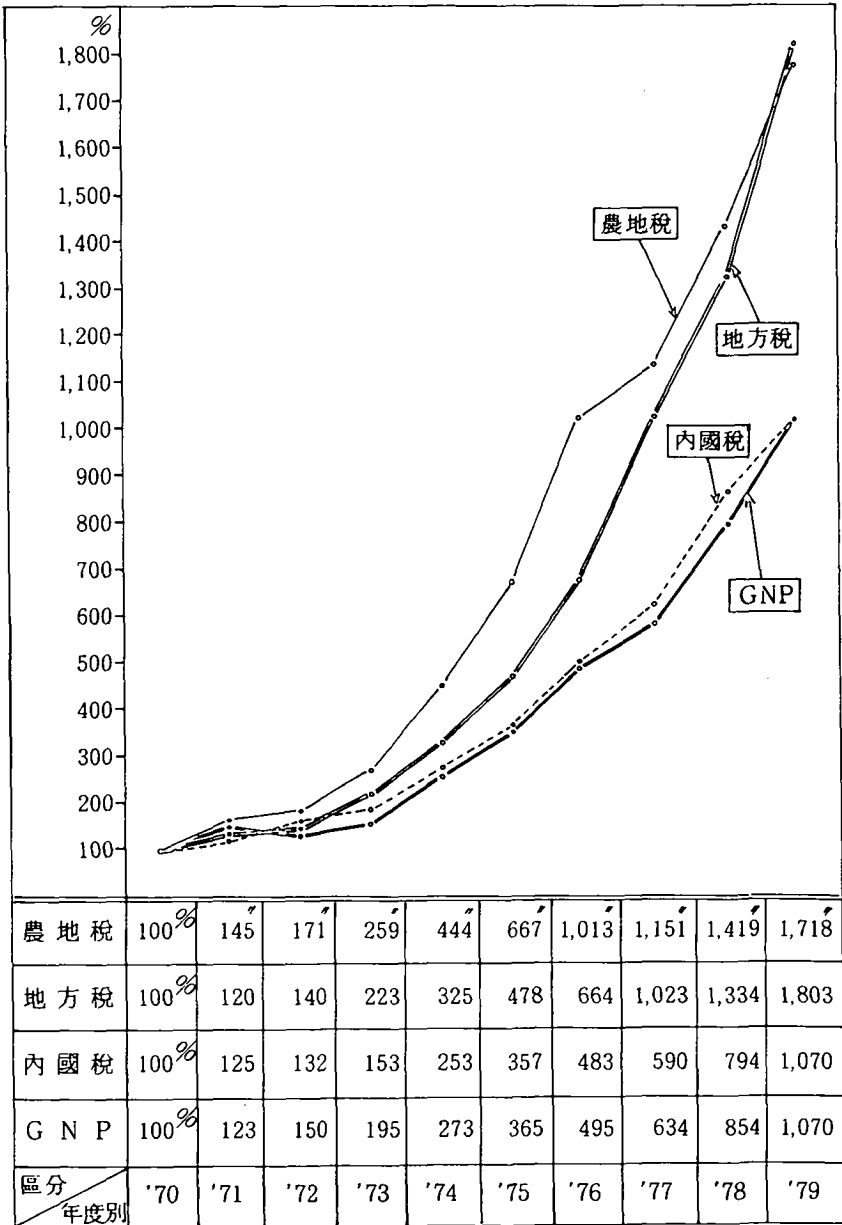
2) 農地稅의 課標를, 生産量에 價格(收買價格 또는 基準價格)을 곱하여, 다시 所要經費를 差減한 所得額으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所得稅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나(乙類農地稅), 한편으로는 畚을 課稅客體로 하고 租收入을 課標로 설정함으로써 生産에 투입된 資材비나 노임에 대해서까지 과세된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所得稅의 性格만이 아닌 物稅의 性格도 지니고 있는 것 같다¹⁴⁾(甲類農地稅). 그러나 쌀이라는 生必品을 生産하는 農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農地稅에 物稅의 性格을 부여함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지 않다.

3) 農地稅는 그 稅額算出에 적용되는 稅率이 누진적이며, 그 累進性은 課標額 계층별로 遞增的인 超過累進稅이다.

4) 農地稅는 農민이 부담하는 소득세로서 都市勤勞者가 부담하는 綜合所得稅와 對位關係에 있어, 일반적으로 都農間 稅負擔 比較의 基準尺의 性格을 띠고 있는바, 都市勤勞者의 綜合所得稅와의 직접 比較가 타당한가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이 있다(第 1 章 1 페이지 참조).

5) 農地稅는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로 구분되어, 후술되는 바와 같이 양자는 課標, 稅率, 基礎控除 및 納付方法 등에 있어서 현저히 다르며,

圖 3 - 3 地方財政中農地稅伸張趨勢



資料：內務部，「地方稅政年鑑」，1980.

따라서 課稅의 衡平性 문제가 甲乙類地稅間에도 제기되고 있다.

3. 農地稅制의 變遷過程과 租稅思想史의 意義

가. 農地稅制의 歷史的 變遷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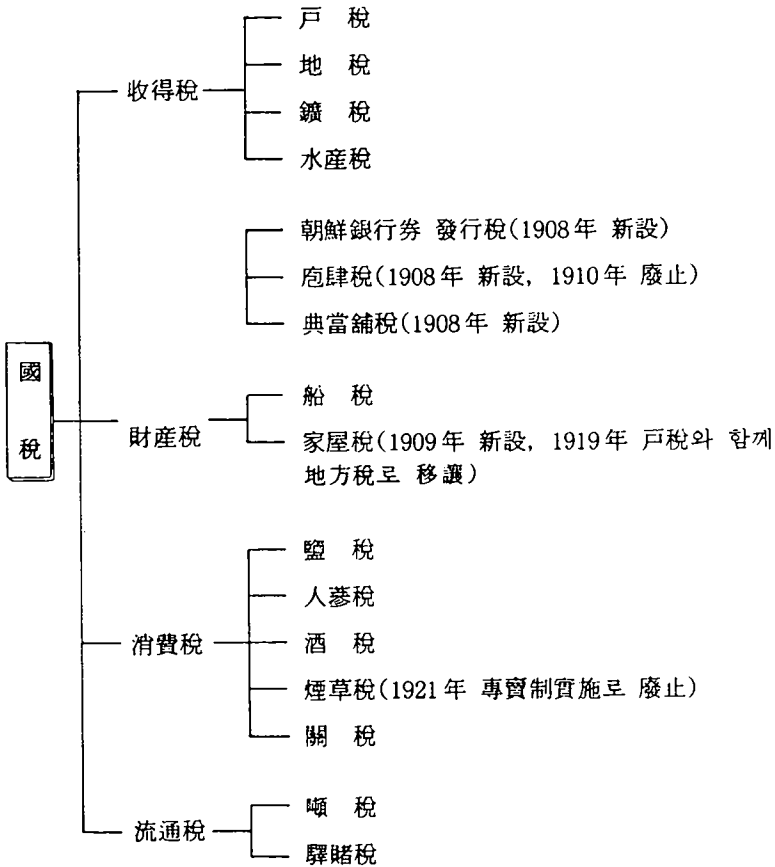
1) 朝鮮代 이전의 農地稅 始源

韓國의 稅制는 三國時代 이후 統一新羅, 高麗 및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租, 庸¹⁵⁾, 調¹⁶⁾라는 貢納形態를 취해 오다가 근대적인 租稅制度로 변모한 것은 舊韓來 이후로, 특히 농민이 종사하는 농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直接稅 성질의 것은 “租”였으며, 이는 土地를 대상으로 한 穀物의 부과(現物納)를 지칭했다. 田地가 國有인 경우에도 收租權의 귀속에 따라 公田과 私田으로 구분, 전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收租權者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를 “租”라 하였고, 후자(功臣田, 科田, 職田, 別賜田, 寺院田등)에 대하여는 土地를 분급받은 귀족, 공신, 승려 등이 收租權者로 되어 있으며, 國家가 國家財源의 일부를 충당키 위하여 이 私田에서 징수할 경우 이를 “稅”라 하였다. 이상의 史實로 미루어 朝鮮代 이전의 “租稅”는 주로 農民이 부담하는 오늘날의 農地稅의 성격이 농후하였으며, 그것을 租稅 또는 租貢 등으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아 국가가 징수하는 모든 租稅의, 그리고 농민이 부담하는 모든 租稅의 大宗이자 오늘날 農地稅의 효시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의 農地稅가 그동안 國稅에 속한 地稅로 취급되어 오기는 했으나 그것이 地方稅에 속한 한, 地方自治團體의 稅收源의 대종을 이루게 된 것은 당연한 歷史的 귀결이며, 그것이 국가(中央政府 또는 地方政府)의 財政收入에 미친 기여는 증차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2) 韓末 이후 日帝代의 農地稅制 형성

舊韓國 末期의 稅制는 主要稅入源이 地稅였으며(圖 3-4), 營利業體에 부과되는 收益稅, 戶稅 및 流通稅와 消費稅 등으로 租稅體系가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통일된 租稅體系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論議되는 租稅負擔의 公平性이나 國家財政을 위한 稅收 확보

圖 3 - 4 舊韓末의 國稅體系(1909 ~ 1910 년)



등은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韓日合併 직전인 1908년에는 人蔘稅가, 1909년에는 煙草稅가 각각 창설되어, 비록 消費稅의 일부로서이었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유지됨으로써 오늘날 乙類農地稅制의 始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日帝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른바 朝鮮總督府 主管下에 地籍圖와 土地台帳을 정비하고 脫稅農地를 조사하는 한편, 새로 작성된 土地台帳에 의거, 地稅의 課稅標準(課稅標準)을 「地價」로 바꾸고, 稅率을 인상하는 한편, 1916년에는 法人所

得稅制, 一般所得稅制가 도입되어, 비록 植民地 政策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단 체제상으로는 都農間의 所得稅系統이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日帝末에 들어서면서는 1940년에 地稅의 課標를 「地價」에서 「賃賃價格」으로 바꾸기 위한 土地調査를 실시하였고, 1944년에는 地稅의 稅率을 5%에서 6%로 인상하는 등의 增稅政策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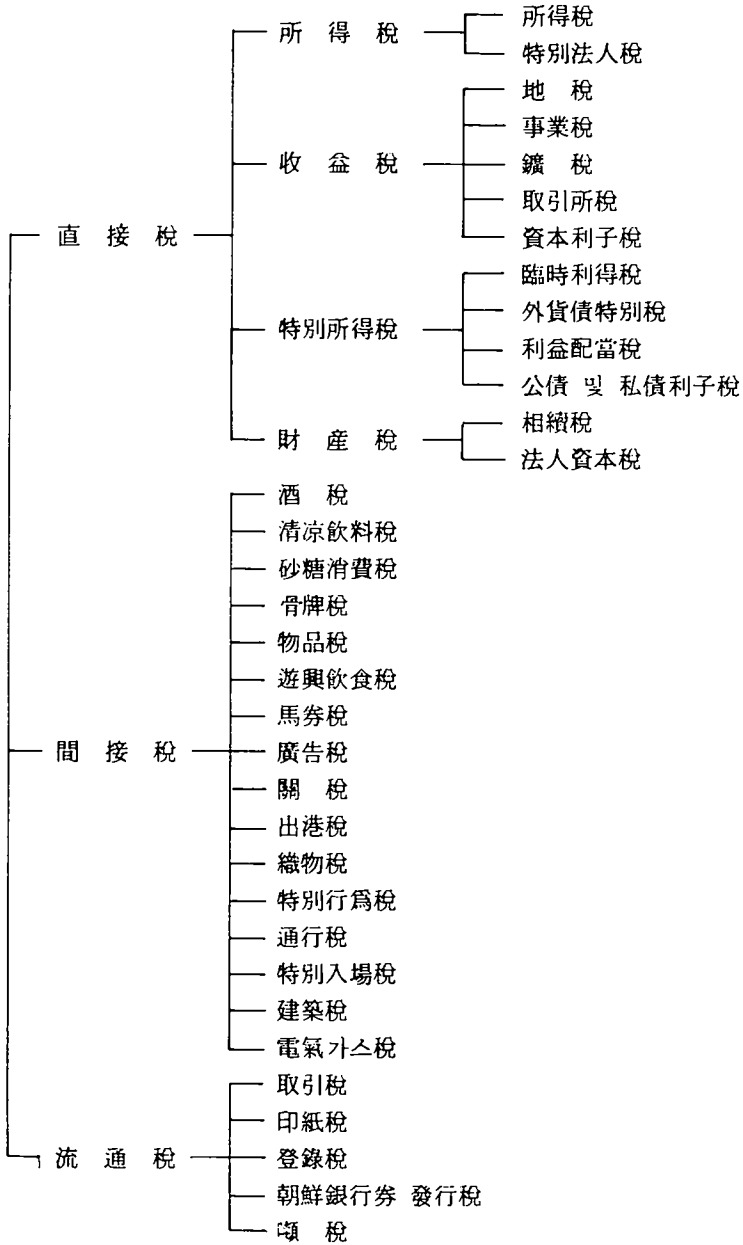
3) 8.15 이후 5.16 직전까지의 農地稅制

1945년 11월, 美軍政令으로 종전의 여러가지 法律들이 그대로 존속할 것을 공포함에 따라, 稅制도 일단 그대로 따르게 되었으나(圖 3-5), 1948년 8월, 大韓民國 政府의 수립과 더불어 租稅改革委員會를 설치하고, 1950년 3월에는 地稅令 등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새로이 諸稅法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그러나 6.25 動亂이 일어나자 그해 年末에 租稅臨時增徵法⁷⁾ 제정하여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物品稅 등 모든 租稅와 함께 地稅도 그 稅率이 인상되었고, 이른바 「戰爭被害가 적은 농촌에서 稅源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地稅法을 개정하여 과표를 종래의 「賃賃價格」에서 「土地收益」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戰勢가 더욱 악화되자 1951년 1월에는 租稅特例法을 제정하여 增稅體制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해 9월에는 臨時土地收得稅法을 제정하여 우리 나라 특유의 戰時稅種을 설정하였다. 그 후 動亂이 끝나자 租稅特例法, 租稅臨時增徵法 및 土地收得稅制度는 폐지하였다.

4) 1960년대 이후 經濟發展期の 農地稅制(5.16~현재)

5.16 직전부터 國家富強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租稅制度의 개선이 시도되었다. 즉 1962년에는 ①稅制의 간소화, ②公平賦課稅制, ③勤勞所得層의 부담 경감... 등의 방향으로 稅制上의 大改革⁸⁾이 이루어졌는바, 이때까지 國稅에 속해 있던 土地稅는 이를 계기로 地方稅에 이양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 租稅史上 國稅와 地方稅間의 조정을 위한 租稅體系 개편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후에도 租稅 전반에 걸쳐 누차의 稅制改善 등 변화가 있었는데, 農地稅 관련사항만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圖 3 - 5 光復直前의 國稅體系(1945)



〈 1960년대 이후의 農地稅制 變遷過程 〉

(1) 1961 년도의 稅制改革¹⁹⁾(1962. 1. 1 施行, 法律 第827號)

① 農地稅를 國稅에서 地方稅로 이양(圖 3-6)

② 國稅와 地方稅의 조정에 관한 法律制定(1962. 12. 2)

(2) 1962 년도의 地方稅法 改正(1963. 1. 1 施行, 法律 第1243號)

① 耕作者가 2 개 市郡에 걸쳐 경작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農地稅를 부과토록 함.

② 國家 등의 所有農地에 대하여는 農地稅를 耕作者에게 과세토록 함.

(3) 1963 년도의 地方稅法 改正(1964. 1. 1 施行, 法律 第1514號) : 農地稅 관련사항 없음.

(4) 1966 년(第1次) 地方稅法 改正(1966. 8. 3 施行, 法律 第1803號)

① 農地稅 第1期 중 收穫할수 없는 作物을 생산하는 田에 대하여는 第2期分에서 과세토록 함.

② 貸付農地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非課稅하고 農地稅만 과세토록 함.

(5) 1966 년(第2次) 地方稅法 改正(1967. 1. 1 施行, 法律 第1811號) : 農地稅 관련사항 없음.

(6) 1967 년도(第1次) 地方稅法 改正(1968. 1. 1 施行, 法律 第1958號)

① 甲類農地稅의 課稅 最低限을 「1ℓ(5石5斗4升)」에서 「2.5ℓ(13石8斗5升)」으로 인상(1967년 1期부터)

② 乙類農地稅의 課稅 最低限을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1967년 1期부터)

(7) 1967 년도(第2次) 地方稅法 改正(1968. 1. 1 施行, 法律 第1977號) : 農地稅 관련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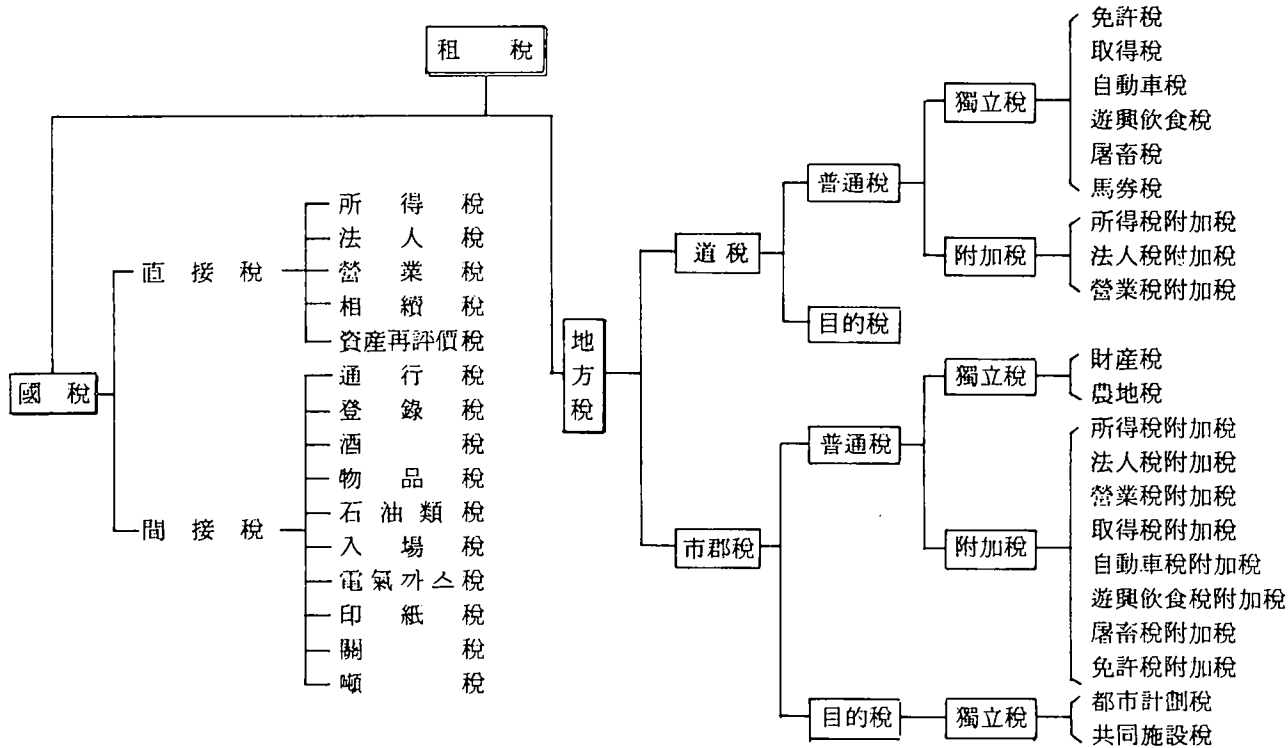
(8) 1969 년도 地方稅法 改正(1970. 1. 1 施行, 法律 第2149號)

① 農地稅의 免稅點制度를 基礎控除制度로 전환

② 乙類農地稅 基礎控除額을 6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

③ 農地稅의 納稅義務者를 「耕作者」로부터 「所有者」로 전환하고, 甲類農地稅의 納稅 開始日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圖 3-6 1961 년도 稅制改革으로 設定된 租稅體系



(9) 1973 년도의 地方稅法 개정(1973.4.1 施行, 法律 第2593號)

① 甲類農地稅 중 第1 期分(夏穀分)을 폐지하고, 農地의 所有者에게 과세하던 農地稅를 耕作者에게 과세토록 함.

② 輪作・並作時에는 작물별로 耕作面積에 따라 각각 과세하고, 300평 미만의 自家消費用 特用作物은 甲類에 量入課稅하던 것을 100 평 미만의 自家消費用은 非課稅토록 함.

③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免稅對象金額을 10 만원에서 18 만원으로 인상 및 農地審査委員會 解散

(10) 大統領緊急措置 第3 號(1.14 措置: 1974.1.14): 農地稅 관련사항 없음.

(11) 1974 년도 地方稅制 개정(1975.1.1 施行, 法律 第2743號)

① 農民의 稅負擔을 경감키 위해 農地稅 基礎控除額을 대폭 인상하고 (甲類稅는 2.5 畝에서 373,000 원으로, 乙類稅는 8,000 원에서 37,000 원으로)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를 종전의 「物量基準」에서 「金額基準」으로 전환 함.

② 甲類農地稅의 稅率을 單一稅率에서 超過累進稅率도 전환 (6 %單一稅率을 6 %, 8 %, 10 %의 3 階層化함).

③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의 稅率適用段階를 인상 조정함.

④ 農地稅 徵收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物納制로 되어 있는 甲類稅 納付方法을 大都市²⁰⁾에 있어서와 滯納分에 한하여는 金納制로 전환함.

⑤ 公簿上的 垆地에 대하여는 現況(즉 그것이 農地이라도)에 불구하고 非課稅토록 함.

⑥ 開墾, 埋立地의 年期 免稅期間을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함.

⑦ 고아원, 양로원, 수녀원, 사찰, 교회 등의 自家消費用 耕作에 대하여는 非課稅토록 함.

⑧ 감자와 고구마는 課稅 對象作物에서 제외키로 함.

⑨ 小額不徵收額을 50 원에서 100 원으로 인상

⑩ 乙類農地稅의 納期를 30 일에서 15 일로 단축함.

(12) 1976 년의 地方稅制 개정²¹⁾(1977.1.1 시행, 法律 第2945號)

① 農地稅 基礎控除額 인상(甲類는 373,000 원에서 443,000 원으로, 乙類

는 每期 37,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상).

② 農地稅 小額不徵收額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③ 農地稅의 納期調整(甲類稅는 「11월 1일~12월30일」을 「11월 1일~12월31일」로, 乙類稅는 1期를 「8월16일~8월30일」에서 「8월16일~8월31일」로, 2期를 「12월16일~12월30일」에서 「12월16일~12월31일」로 각각 조정).

④ 乙類農地稅의 再調査請求制 채택.

(13) 1978년도 地方稅法 개정(1979.1.1 施行, 法律 第3154號).

① 農地稅 再調査 請求期間 연장(15일→30일).

② 市郡稅에 대한 內務部長官 審査請求機會 부여).

(14) 1979년도 第1次 地方稅法 개정(1979.4.16 施行, 法律 第3160號).

① 農地稅 基礎控除額 인상(甲類稅는 53만원에서 74만원으로, 乙類稅는 78만원에서 11만원으로: 特別條例로 1979년 2기분부터 적용).

(15) 1979년도 第2次 地方稅法 개정(1980.1.1 施行, 法律 第3174號)

① 農地稅의 小額不徵收額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나. 租稅思想史에 비친 農地稅의 意義

近世 이후 우리 나라 租稅思想史에 나타난 農地稅(地租, 地稅등)의 입장을 음미하는 것은 현 農地稅制가 지닌 문제점, 특히 농민의 租稅不滿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有助할 것인바, 麗末 이후 朝鮮代末까지의 租稅思想의 주류는 ① 麗末鮮初의 鄭道傳의 租稅思想, ② 壬辰亂 후의 實學派의 租稅改革思想, ③ 李朝末 開化派와 獨立協會의 租稅思想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다.²²⁾

1) 麗末鮮初의 租稅思想과 地稅의 位置: 鄭道傳은 麗末의 社會經濟 혼란의 원인을 封建國家와 大土地 所有階層 및 農民階層 등 3자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찾고, 封建體制下 國家財政의 岌岌, 世家·貴族 등의 大土地 소유 및 도탄에 빠진 農民生活 사이의 모순을 해소키 위한 대원칙으로서 균형된 收取原則과 量入爲出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租稅思想 속에는 「國家가 財政的으로 破綻하고 農民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놀고 먹는 자들(安座不耕者)이 大土地를 소유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으며, 社會生

産 발전의 기초가 되는 富는 農業生産에 있다」는 의식이 충만해 있었으며, 이는 곧 그 당시 國家財政이 土地와 農業生産에 근거를 둔, 農民으로부터의 徵稅에 의하여 거의 전적으로 지배되었음을 시사한다.

2) 實學派의 租稅改革思想

가) 柳馨遠은 租稅制度 개선을 위하여,

① 定期經常稅制의 확립(「以經稅更無他賦」)을 강조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모든 經費가 經常收入인 租稅만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기타 일체의 雜稅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기타의 貢納, 進上, 賦役 등에 의한 農民收奪을 반대한 租稅單一化思想으로서, 農民은 오늘날의 農地稅와 같은 單一稅로서 納稅義務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② 王室財政에 의한 國家財政侵蝕을 最少化 할 것과 量入爲出의 租稅原則을 강조하여 財政의 無理없는 收入과 집행을 추구하였다.

③ 租稅의 金納化를 통하여 農民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④ 租稅의 課徵은 公평과 確실의 원칙에 의하고, 田稅賦課의 기준인 土地等級 설정이 불확실할 때는 그 審査制度를 확립코자 하였다.

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産業發展을 위하여 어느 産業에는 租稅를 부과치 않을 수도 있도록 하자는, 즉 오늘날과 같이 育成産業에 대하여는 租稅減免을 통한 保護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상 柳馨遠의 租稅思想 속에서는 상당 부분(예컨대, 金納制에 의한 農民 實質負擔 경감, 土地等級 및 課徵基準設定, 減免稅와 審査制度 등)이 오늘날의 農地稅制가 지닌 문제와 연결되는 近代化 指向性을 감지할 수 있다.

나) 丁若鏞은,

① 社會的 再生産 過程에 있어서의 地主・兩班層의 부정적 역할과 農商工業의 肯定性에 租稅思想의 근거를 두었으며,

② 租稅思想의 핵심은 「下不害民」 「上不損國」에 두고 租稅의 課徵過程에서의 中間挾雜²⁾을 배격하여 民生과 國家財政의 안정을 동시에 기하려 하였다.

③ 특히 일반 농민이 부담하는 私的地主에의 小作料와 封建國家에의 租

稅라는 이중적 封建地代를 중시하고, 地主的 土地所有와 그에 대한 小作料를 없애고, 國家에 대한 租稅만의 單一地代化 문제를 제기하였다.

④ 租稅의 원천은 所得에 두고, 課稅는 實質課稅이어야 할 것과 金納制를 주장한 것 등은 柳馨遠등과 같다.

이상 丁若鏞의 租稅思想에서는 地主・兩班에의 不當한 특혜를 否定하고, 地稅 즉 오늘날의 農地稅制의 현실과 직결되는 제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地稅의 役割과 비중이 컸음을 시사한다.

다) 大同法이 지닌 租稅思想

「大同」이란 中央과 地方의 모든 政府機關의 財政需要에 충당키 위하여 田畝에 일괄적으로 과세한다는 개념으로서, 이른바 「大同米」만을 징수하여 農民의 貢納負擔을 경감시키면서, 課稅의 公平과 均衡의 원칙을 강조하였는바, 다음 요지의 租稅思想을 含有하고 있었다.

① 稅源은 당시의 富의 원천이었던 土地收益에 집중시키고 富와 관련이 없는 貢物은 배제하고,

② 多元的 稅源을 一元化하고 均等負擔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③ 각 地方마다의 收米로 中央과 地方官廳의 財政需要에 충당케 함으로써 中央과 地方의 歲出豫算編成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宗전의 量入爲出 원칙에서 量出爲入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이상 大同法에 나타난 租稅思想 속에도 역시 당시 國家租稅의 대종은 田畝를 객체로 한 農民負擔의 地租였는바, 租稅課徵上的 稅단을 최소화하고 農民의 負擔을 경감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으며, 貢物의 배제, 量出爲入 원칙의 도입 등은 租稅制度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로 볼 수 있다.

3) 開化派의 租稅思想

實學派 租稅思想의 축적과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확립된 開化派의 租稅思想은 金允植, 金玉均, 俞吉潑 등에 의하여 시대별로 제시되고 있다.

가) 金允植은 軍布와 還穀制度를 폐지하고 그 稅를 田稅에 포함시켜 租稅 單一化할 것을 주장하였다. 稅의 부과는 多田者에게 重課, 無田者에게는 無課稅로 한 「公平課稅」 원칙을 내세워 어려운 農民經濟를 소생

시키고 封建支配層의 農民收奪을 防止코자 하였다.

나) 金玉均・朴泳孝 등은 「稅制改革」을 農業發展과 더불어 당시 農業近代化政策의 二大 主軸으로 삼았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이들이 甲申政變에 제시한 農業改革案의 골자는 우선 외국인의 土地買占을 금지한 다음, 地主 등 土地所有者에게 地券을 발행하여 所有關係를 분명히 하고, 農業에 대한 일체의 租稅는 地稅로 單一化하여 이를 土地에 부과하되 가볍고 균등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 俞吉潑은 面單位로 量田을 하여 土地台帳을 재작성하고, 土地의 소유관계는 所有者에 대한 地券發行으로 명백히 하여 面所在 地籍에 등재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低率의 地租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과세는 地籍簿上에 面積과 地價를 기재한 후 所有者와 市價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과세케 함으로써 地租를 地價變動에 따라 조정토록 하였다. 특히 生必需品(예: 米穀 등)에 대하여는 輕課하고, 사치품에 대하여는 重課하는 差別課稅制를 도입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農産物에 대한 課稅는 낮게 하되 貧者에게는 輕課稅, 富者에게는 重課稅라는 均賦理念을 강조하였다.

4) 獨立協會(萬民共同會)의 租稅思想

獨立協會의 租稅思想은 「實學에서 端緒를 얻고, 開化運動의 실천적 과정을 통해 自己蓄積을 이룩하여 對外的 接觸(주로 日本)으로 新文物을 받아들인 그들이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새로 형성된 市民階層, 農民階層, 賃金勞動者層, 해방된 賤人層, 新知識層 등(새로운 中間層)의 요구에서」²⁴⁾ 나타났는바,

① 封建制下 政治權力의 經濟外的 수탈로부터 시민의 財産權을 보호하여야 하며(實學思想),

② 課徵稅擔當官廳의 中間收奪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야 하며(예컨대 還穀制 폐지 등),

③ 課稅法律主義에 의거, 公正課稅로 국민의 財産權을 보호할 것과,

④ 租稅負擔衡平原則을 내세워 농민에게만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雜稅賦課의 폐지 및,

⑤ 財政의 公開主義(豫算・決算)에 의거 국민의 신뢰를 얻어 財政을 튼튼히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상 獨立協會 등의 租稅思想은 封建的 殘滓를 일소하고 近代의 租稅制度의 諸要求를 제시하는 思想基調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이 비교적 다양해짐에 따라서, 租稅 사상 속에 깔려 있는 그들의 의식은 아직 地租를 대종으로 하기는 하되, 農業 이외 部門에의 稅源開發可能性도 제기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租稅의 범위도 확대되어 오늘날 國民租稅 중에서 차지하는 農地稅의 위치(비중)로의 무한한 收斂을 통해서 그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4. 農地稅의 法規的 側面과 農民의 担稅行態

가. 法規上 農地稅의 概要

1) 農地稅의 定義, 課稅客體 및 納稅義務者

가) 農地稅란 국민이 農地에 法定課稅 對象農作物을 경작할 경우 그 農地로부터 창출되는 收入金額 또는 所得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농민에게 부과하는 租稅로서 甲類와 乙類로 구분된다. 이때 農地라 함은 원칙상 田畓, 果樹園 등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土地를 말하며(地方稅法 第197條), 실제로 農地稅를 부과하는 農地는 地籍公簿上的의 地目에 불구하고 農地稅 課稅對象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土地를 말한다(地方稅法施行令 第148條의 ①).

나) 農地稅의 課稅客體는 벼를 생산하는 農地(甲類農地稅 課稅客體)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作物을 생산하는 農地(乙類農地稅 課稅客體)이다(同第198條). 이때 乙類農地는 果樹園, 茶園, 蔘圃, 藥圃, 苗圃(觀賞樹 포함), 煙草, 花卉類, 蔬菜類(油菜類 포함)를 생산하는 土地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작물을 생산하는 土地를 말한다. 여기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마늘, 고추, 양파, 생강, 땅콩, 호프 및 孟宗竹 등을 말하며, 감자와 고구마는 令 第149條의 菜蔬類에 속

하지 않는다(同法施行規則 第85條). 단, 作物別 耕作面積이 330 m^2 (100 평) 미만으로서 그 생산물을 白家用에만供할 정도일 때는 課稅對象에서 제외된다(令 第149條).

다) 農地稅의 納稅義務者는 당해 農地稅의 納期開始日 현재의 農地稅台帳에 등재된 農地所有者로서, 市郡은 그들에게 農地稅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農地를 他人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경작자가 納稅義務를 진다(法 第199條 ②項).

2) 農地稅의 課標와 稅率

가) 課 標

① 甲類農地稅의 課標는 첫째, 해당 農地에 대한 基準收入金額 또는 收入金額 즉 「基準收穫量×벼 2등급 收買價」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基準收穫量이라 함은 벼를 경작하는 農地에서 平年作의 경우에 생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農地의 等級別 收穫量을 말한다(表 3-3).

表 3-3 農地의 基準收穫量 等級表 *

等 級	100坪 當 收 穫 量	等 級	100坪 當 收 穫 量	等 級	100坪 當 收 穫 量
1	5 kg	13	65 kg	25	150 kg
2	10 "	14	70 "	26	160 "
3	15 "	15	75 "	27	170 "
4	20 "	16	80 "	28	180 "
5	25 "	17	85 "	29	190 "
6	30 "	18	90 "	30	200 "
7	35 "	19	95 "	31	220 "
8	40 "	20	100 "	32	240 "
9	45 "	21	110 "	33	260 "
10	50 "	22	120 "	34	280 "
11	55 "	23	130 "	35	300 "
12	60 "	24	140 "	⋮	⋮

* 地方稅法施行規則 第83條 ①의 規定〈別表 2〉.

둘째, 甲類農地稅의 課標는 당해 農地의 基準收入金額에서 法 第 212 條 ①項에서 정한 基礎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지칭하기도 한다.²⁶⁾

② 乙類農地稅의 課標는 該當農地에 대한 所得金額으로 정하는바(法 第 211條 ②項), 이때 所得金額은 收入金額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必要經費²⁷⁾를 공제한 金額이다.

③ 農地稅의 課標概念은 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초공제 이전의 課標(A)와 기초공제 이후의 課標(B)로 구분되는바, 關聯事項을 考察할 때는 그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나) 基礎控除와 少額不徵收

1980년(6월말) 현재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은 每期 110천원(年 2期)으로서(法 第212條①, ②) 前記 法 第211條에서 정한 課標(A)에서 이들 금액을 공제한 후 해당 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산출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稅額을 산출해 본 결과, 그 稅額이 500원 미만(1981년 6월말 현재)일 때는 農地稅를 徵收치 않는다(法 第212條 ④).

다) 稅 率

農地稅의 稅率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①甲類農地稅는 基準收入金額 또는 收入金額(課標A)을 다음의 各級으로 구분하여 次로 稅率을 적용, 산출한 금액의 合計額을 稅額으로 한다(法 第213條)〈表 3-4〉.

3) 課徵過程 및 稅額算出

가) 甲類農地稅의 경우

① 基準收穫量 결정: 「벼 栽培面積(坪數)×農地等級別 基準收穫量」의 式으로 산출한다.

② 基準收入金額 결정: 「基準收穫量×벼收買價格²⁸⁾(2등급)」의 式에 의하여 市郡에서 결정한다(法 第220條).

③ 縱覽: 위의 農地收入金額을 災害減免 등을 거쳐서 결정할 때(法 第206條 ②項)는 農地所有者 또는 其他納稅義務者의 縱覽에 供한다(法 第221條).

④ 基礎控除: 基準收入金額에서 法定 基礎控除를 한다(課標B).

⑤ 稅額算出: 일단, 甲類農地稅의 課標가 산출 확정되면 다음 算式에 의

表 3 - 4 農地稅의 稅率構造¹⁾

課 標 ²⁾	稅 率	甲 類 農 地 稅	乙 類 農 地 稅
150 千원 以下		6 %	10 %
150 千원 超過 ~ 300 千원		8 %	15 %
300 千원 超過		10 %	20 %

註: 1) 이 稅率은 1979年 4月 16日 法律 第3160號에 의거 施行되기 始作한 것임.

2) 收入金額(=米穀粗收入) - 基礎控除額(課標B)의 概念임.

거 稅額을 計算한다(²⁹⁾例示參照).

〈 甲類農地稅 算式模型 〉

←... 課標(S) ...→

$$T = r(Y \cdot A \cdot P_c - S_b)$$

$$T_1 = S \times \frac{6}{100}$$

$$T_2 = T_1 + (S - 15 \text{ 萬圓}) \times \frac{8}{100}$$

$$T_3 = T_1 + T_2 + (S - 30 \text{ 萬圓}) \times \frac{10}{100}$$

여기서,

S : 課標

T : 稅額

T_1 : 課標가 15 萬圓 미만일 때의 稅額

T_2 : 課標가 15 萬圓 이상 30 萬圓 미만일 때의 稅額

T_3 : 課標가 30 萬圓을 超過할 때의 稅額

r : 稅率(課標額이 많고 적음에 따라 6/100, 8/100, 10/100의 3 계층이 있음)

Y : 土地等級別 收穫量

A : 栽培面積

P_c : 政府收買價格(벼 2 등품 價格基準)

S_b : 基礎控除額(74 萬圓 : 1979 ~ 1980 년도)

나) 乙類農地稅의 경우

① 所得金額申告: 乙類農地稅 納稅義務者는 每期別로 所得金額 등을 市長 郡守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어(法 第219條), 이 신고에 의하여 市郡에서 課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농민의 自進申告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市・郡이 必要한 節次와 방법을 통하여 課稅한다.

② 所得金額 결정: 前記 第219條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市・郡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대부분의 경우) 市長・郡守가 조사 결정한다(法 第220條 第③項).

③ 縦覧: 甲類農地稅의 경우에 준한다.

④ 基礎控除: 甲類農地稅의 경우에 준한다 (課標 B).

⑤ 稅額算出: 일단 乙類農地稅의 課標(B)가 결정되면 다음 算式에 의거 稅額을 계산한다(例示參照).

〈 乙類農地稅 算式模型(고추 農家の 예)〉

←…課標(S)→

$$T = r(Y \cdot A \cdot P \cdot I_R - S_b)$$

$$T_1 = S \times \frac{10}{100}$$

$$T_2 = T_1 + (S - 15 \text{ 만원}) \times \frac{15}{100}$$

$$T_3 = T_1 + T_2 + (S - 30 \text{ 만원}) \times \frac{20}{100}$$

여기서,

S : 課標

T : 稅額

T_1 : 課標가 15 만원 미만일 때의 稅額

T_2 : 課標가 15 만원 이상 30 만원 미만일 때의 稅額

T_3 : 課標가 30 만원을 초과할 때의 稅額

r : 稅率(課標額의 많고 적음에 따라 10/100, 15/100, 20/100의 3 계층이 있음)

Y : 坪當 收穫量(斤/坪)

A : 坪數

P : 斤當 價格(1980 년 慶北 義城의 경우 斤當 2,000 원이었음)

I_R : 所得率(45 ~ 46 % : 1980 년)

S_b : 基礎控除額(1 期 11 만원 : 1979 ~ 1980 년)

4) 農地稅의 減免

가) 農地稅는 國, 道, 市, 郡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이 소유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稅를 부과치 않으며(法 第200條),

나) 그밖에 ①開墾農地(法 第201條), ②公有水面 埋立 및 干拓農地(法 第202條)등은 10 년간 免稅, ③災害로 인한 荒地는 5 년간 免稅(法 第203條), ④災害減免(法 第206條), 資力喪失減免(法 第207條), ⑥學校用地 등(學校, 孤兒院, 養老院, 修女院, 寺刹, 教會農地 등)에 관한 免稅(法 第209條) 등이 있는바, 그중 災害減免條項만 詳察하면 다음과 같다. 災害로 인하여 그 農地에 대한 수확량이 基準收穫量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음 구분에 의거 그 年의 農地稅를 경감 또는 면제토록 되어 있다(法 第206條).

㉠ 7 割 이상 減收時는 全額 면제.

㉡ 5 割 이상 減收時는 收穫量의 50 % 分에 해당하는 稅額 면제.

㉢ 2 割 이상 減收時는 그 減收量을 제외한 수확량에 한하여만 과세한다.

5) 農地稅 納付에 의한 所得稅 등 納付 相殺

農地稅를 課稅한 農地로부터 생기는 所得(農地の 貸付所得 포함)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치 않는다(法 第233條). 그러나 田畠, 果樹園 및 牧場用地 등에 대한 財産稅는 그 價額의 $\frac{1}{1,000}$ 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다(地方稅法 第288條 1 의 ④).

6) 農地稅 課稅期間과 納期 및 異議申請

가) 農地稅 課稅期間은 甲類農地稅가 1 年間(1 월 1 일 ~ 12 월 31 일)인데 비하여 乙類農地稅는 第 1 期(1.1 ~ 7.31)와 第 2 期(8.1 ~ 8.31)로 나누인다. 이때 期의 구분은 對象作物의 栽培期間이 속해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만일 어느 한 期에 속하는 作物만 재배한 農家は 그 1 期에 해당하는

税金만을 納付한다.

나) 農地稅의 納期는 甲類가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乙類가 第1期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第2期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異議申請은 ① 甲類農地稅 納稅義務者가 法 第220條 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가 결정한 收入金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縦覧 期間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不服의 사유를 갖추어 市長・郡守에게 再調査請求를 할 수 있다(法 第225條의 1). ② 乙類農地稅 納付義務者가 法 第220條 3項에 規定된 所得金額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는 納付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再調査請求할 수 있다(法 第225條 2).

나. 農民의 農地稅 負擔行態

農民稅負擔에 관한 농민의 불만은 이미 산발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느 정도이라는 信賴性 있는 근거는 미흡했으며,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실시된 輿論調査結果에서 비교적 분명해졌다. 그것은 곧 農民의 農地稅負擔에 대한 反應과 行態를 집약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1) 輿論調査, 그 背景

서울과 釜山을 제외한 전국 農村에 걸쳐 前・現職의 里長, 새마을 지도자, 4-H 지도자, 開發委員, 興農契長, 總代 등 각 마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家口主의 教育 水準도 農村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農家 2,464호를 有意選定, 農地稅負擔에 관한 郵便輿論調査를 실시하였다. 標本農家의 有意選定으로 인하여 제기될지도 모르는 代表性의 脆弱性은 높은 應答率과 調査表記載上的 정확성 및 理解性 등으로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본다.

2) 農民의 農地稅不滿 및 擔稅行態

가) 標本調査結果의 概要

調査對象農家 2,464호 중 應答者總數는 2,078호로서 回收率은

84.3%였으며, 應答者 中 農地稅를 납부하는 農家は 1,802호로서 應答農家 전체의 86.7%였다. 또 農地稅 納付農家 中 甲類農地稅 納付農家は 86.1%(1551戶), 乙類農地稅 納付農家は 49.8%(898戶)였고, 甲乙類農地稅 둘 다 부담하는 農家は 647호로서 39.5%였다(表 3-5).

表 3-5 農地稅 納付農家現況(標本調査結果)

		調 査 者 數 (A)	應 答 者 數 (B)	農地稅納付者數					
				(C=D+ E+F)	甲類稅 (D)	乙類稅 (E)	甲乙類 (F)	甲類稅 計(G=D+F)	乙類稅 計(H=E+F)
農家數(戸)		2,464	2,078	1,802	904	251	647	1,551	898
比 率 (%)	B/A	100.0	84.3	—	—	—	—	—	—
	C/B	—	100.0	86.7	43.5	12.1	31.1	74.6	43.2
	D/C	—	—	100.0	50.2	13.9	35.9	86.1	49.8

資料：郵便調査結果(1980.9월~10月), KREI 農政輿論調査室.

表 3-6 農民의 二大農地稅 * 不滿(標本調査)

耕 地 規 模 要 因 別	耕 地 規 模				計
	0.5ha未滿	0.5～1.0ha	1.0～2.0ha	2.0 ha以上	
稅 負 擔 過 重					
不滿農家 (A)	23 戸 (4.8 %)	118 (24.4%)	233 (48.1%)	110 (22.7%)	484 (100.0%)
納稅農家 (B)	94 戸	632	782	294	1,802
不滿程度 (A/B)	24.4 %	18.7	29.8	37.4	26.9
課 稅 不 公 平					
不滿農家 (A)	55 戸 (4.8%)	392 (34.1)	503 (43.7)	200 (17.4)	1,150 (100.0%)
納稅農家 (B)	94 戸	632	782	294	1,802
不滿程度 (A/B)	58.5 %	62.0	64.3	68.0	63.8

* 甲乙類農地稅.

資料：郵便輿論調査結果.

나) 農地稅 負擔에 대한 農民의 不滿

① 農地稅를 납부하는 農家 1,802호 中 稅負擔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밝

한 農家가 26.9% (484 호)이고, ② 農地稅賦課가 不公平하다는 의견을 밝힌 農家は 1,150 호로서 63.8%이다 <表 3-6>. 이는 擔稅者인 農민의 심리상태가 租稅負擔의 絶對的 過多性보다 오히려 상대적 過重性에 더 민감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현대 租稅政策의 效率化를 위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擔稅不公平 불만을 耕地規模別로 보면, 0.5~1.0ha 農家가 34.1%, 1.0~2.0ha 農家가 43.7% 등으로서, 이 불만은 비교적 中農以下 農家間에 더 심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다) 其他 農民의 擔稅行態

(1) 農民 자신에게 부과된 農地稅負擔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는 자는 納稅農家(1,802 戶) 중 503 호로서 27.9%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어쩌다 확인하거나 (887 호: 49.2%) 전혀 확인치 않고 있다. 특히 確認方法을 몰라서 확인치 않는 農家도 204 호나 되어 未確認農家(377 戶)의 54.1%에 이른다 <表 3-7>. 만일 앞의 農地稅 불만 속에 이들의

表 3-7 農民의 農地稅 確認行態(標本調査)

耕地規模 行態別	0.5ha 未滿	0.5~1.0ha	1.0~2.0ha	2.0ha 以上	計
항상 確認함	27 (28.7)	173 (27.4)	205 (26.2)	98 (33.3)	503 (27.9)
가끔 "	35 (37.2)	297 (47.0)	405 (51.8)	150 (51.0)	887 (49.2)
確認法 모름	12 (12.8)	79 (12.5)	87 (11.1)	25 (8.5)	204 (11.3)
確 認 않 음	10 (10.6)	67 (10.6)	77 (9.8)	19 (6.5)	173 (9.6)
無 應 答	9 (9.6)	16 (2.5)	8 (1.1)	2 (0.7)	35 (1.9)
計	94 (100.0)	632 (100.0)	782 (100.0)	294 (100.0)	1,802 (100.0)

()內는 同一規模 農地所有 納稅者에 대한 100分比.

資料: 郵便輿論調査結果

의견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불만 자세의 일부는 無知와 沒理解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農地稅 不滿 解消策을 단지 稅制改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면으로는 그들에 대한 啓蒙과 指導 및 弘報 등에 의해서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2) 자신에게 부과된 農地稅가 過重, 不公平하다고 판단될 때 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전체 納稅農家數 중 10.4%(187戶)였으며, 過多負擔 不滿者數 對比 38.6%, 不公平負擔 不滿者數 對比 16.3%였다. 그리고 農地稅 賦課와 관련된 農民의 第一次의 相談役은 面職員(57.4%)과 里長(16.6%)이고, 이유 불구하고 異議申請없이 그냥 참는다는 農家도 7.9%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의 農地稅 二大不滿 중 過多負擔 不滿이 26.9%, 不公平課稅 不滿이 63.8%였는데, 異議申請者(件數)의 比率은 반대로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인바, 이는 過多負擔 불만이 物量的이고 구체적(可視的)인데 비하여 不公平課稅 不滿은 心理的이고 抽象的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초래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擔稅者인 農民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稅收效果를 높이려면 計量的이고 구체적인 側面 못지않게 社會心理的 측면을 감안한 상대적 衡平化 理念의 구현에도 政策比重이 주어져 할 것으로 본다.

(3) 甲類農地稅의 納付方法에 있어서 物納制와 金納制를 둘다 사용하는 의견이 69.1%(904戶중625戶)로 절대다수였으며, 現金만으로 納付하기를 원하는 農家は 9.4%였다(現物만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자는 19.9%). 農地 規模別로는 0.5ha 이하 農家は 68~73%가 現物納制 또는 現金納制를 併用(양자 택일)키를 원하고 있으며, 現物納을 원하는 農家 中에서는 0.5~1.0ha 農家が 37.8%로 가장 많았다(表 3-8).

1975년 1월 1일부터 일부(6대 都市: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仁川)만 金納制가 적용되고 있으나, (農地稅徵收 特別措置法 第1條 및 第2條 1)³¹⁾(1975년 0.58%, 1979년 0.85%: 金額 기준) 市郡所在 農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金納指向의 반응은 농촌의 經濟社會的與件變化(예: 勞動力의 부족, 人件費 상승, 所得機會 다변화, 肉體勞動을 요하는 物量取扱보다 편리한 現金去來 선호 등)에 따른 당연한

表 3 - 8 甲類農地稅 納付形態別選好性向(標本調査)

方法別 \ 規模別	0.5ha 未滿	0.5~1.0ha	1.0~2.0ha	2.0ha 以上	計
現 物 納	16 (42.1)	68 (20.4)	58 (15.0)	38 (26.0)	180 (19.9)
現 金 納	7 (18.4)	33 (9.5)	39 (10.1)	6 (4.1)	85 (9.4)
現物 또는 現金納	15 (39.5)	229 (68.6)	282 (73.1)	99 (67.8)	625 (69.1)
無 應 答	—	4 (1.2)	7 (1.8)	3 (2.1)	14 (1.5)
計	38 (100.0)	334 (100.0)	386 (100.0)	146 (100.0)	904 (100.0)

()內는 耕地規模別 百分比

資料：現地郵便輿論調査結果.

귀결이며 稅制面에의 반영을 요하는 사항이다.

(4) 위의 調査結果의 분석에서 밝혀진 農民의 農地稅不滿의 要因은 ① 農地稅賦課가 불공평하고 (納稅者의 63.8%), ② 農地稅 負擔이 과중하며 (納稅者의 26.9%), ③ 稅金計算方法이 복잡하여 확인이 어렵고 불편하며, ④ 절차가 복잡하고 里長이나 面職員의 否定的 반응 때문에 異議申請이 어렵고, ⑤ 甲類의 單一現物納制가 비경제적이며 불편하다는 것 등인바, 그 밖에 農民의 農地稅 不滿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의할 것은, 農地稅에 관한 그들의 無知와 沒理解에서 야기되는 不滿의 비율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의 調査結果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게 부과된 稅額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고 적음을 모르거나 無關心한 자가 전체 農地稅 納付農家의 9.8%(177호)나 되고, 부과된 稅額이 공평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거나 무관심한 자가 6.9%(125호)였으며, 稅金의 賦課가 공평·적정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가 11.3%(204호), 불공평한 줄 알면서도 그냥 참는다는 자가 7.9%(143호)나 되었다는 사실로서 正當化가 가능하다. 農民들의 無知와 沒理解에 의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들에게 農地稅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普及·促進할 입장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실시한 現地 面接調査에서, 面職員 중 農地稅

表 3-9 --線行政實務者の 農地稅理解率(現地調査)

地 域 區 分	忠北陰城 大所面	忠北陰城 金旺邑	全北任實 官村面	全北鎮安 馬靈面	慶北義城 丹村面	慶北禮泉 ³⁾ 감천면
農地稅課 ¹⁾ 徵業務하는 職員數 (A)	2 名	6	3	2	3	—
全職員數 ²⁾ (B)	21 名	35	24	22	21	—
A/B (%)	9.5 %	17.1	12.5	9.1	14.3	—

註：1) 前・現職 財務係職員+農地稅算出方法 아는者.

2) 面長 포함.

3) 調査不應으로 未確認.

資料：現地調査結果參照('81.5.4~16調査).

課徵業務를 알고 있는 자가 20~25명 기준으로 2~3名(9~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表 3-9).

農民의 農地稅 負擔에 관한 행태는 앞에서 자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農地稅 不滿의 形態로 집약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農地稅負擔에 관한 두 가지 커다란 不滿은 이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 稅制改善을 위하여 중요한 基準尺이다. 그러나 “不滿”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主觀性 때문에 不滿의 액면 그대로가 곧 是正對象이 될 수는 없으며, 그 客觀化를 위하여, 課稅者의 입장에 있는 일선 行政機關 農地稅 課徵實務擔當者의 의식과 견해를 조사 참고코자 하였던바, 그 결과 農地稅 負擔에 관한 전술한 農地稅 不滿과 기타 擔稅行態가 대체로 정당화 되었다. 우선 農地稅 過多負擔 不滿과 不公平課稅 不滿에 대한 面事務所 財務係 직원들의 의견으로서 「農地稅賦課에 있어서 귀하가 알고 있는 農民 不滿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應答內容이 그대로 農民의 二大不滿과 일치하고 있다(表 3-10). 그밖에 (表 3-10)의 기타 요인 중 ① 非主産地 非課稅가 農民의 不滿要因이 될 것이라는 面職員의 추측은 현실적으로 課稅不公平 不滿의 要因이 될 것이며, 실제로 新規稅源 개발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課標決定 不合理」가 不滿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특히 乙類農地稅의 基準收入金額 결정 과정에

表 3-10 一線行政機關實務者가 본 農民의 農地稅不滿要因¹⁾

地 域 別 ²⁾ 要 因 別	忠 北		全 北		慶 北	
	陰 城 大所面	陰 城 金旺邑	任 實 郡 官村面	鎭 安 馬靈面	義 城 丹村面	體 泉 甘천面 ³⁾
1. 稅金의 過多賦課	○		○	○		—
2. 課稅의 不公平	○	○	△		○	—
3. 其他要因						—
① 非主産地非課稅			○			—
② 課標決定不合理 (作況調査 등)	○	○	○		○	—

註：1) ○표는 肯定, △표는 一部 肯定을 나타냄.

2) 主로 乙類農地稅 對象作物(고추) 主産地임.

3) 調査不應으로 集計不能.

資料：現地面接調査結果 參照('81.5.4~16 調査).

서 作況調査, 基準時價 결정, 所得標準率 등의 결정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5. 農民의 農地稅 負擔現況과 問題点

현행 稅法(地方稅法 등)과 農民의 여론 및 一線行政機關 農地稅擔當 실무자의 의견과 인식 등에 비추어 본 農民의 農地稅 負擔現況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農民의 農地稅 負擔現況과 推移

1) 農業內部的 狀況

가) 農地稅 負擔額

1979년도 전국 農地稅 徵收總額은 53,644,024천원으로서 農家戶當 農地稅 負擔額이 總農家 기준으로 24,814원, 耕種農家 기준으로 26,009원이었는바, 1978년의 19,929원, 21,460원보다 21~24% 增加勢이다. 農家 家口員 1인당으로는 總農家 기준 4,933원, 耕種農家 기준 5,171원으로

서 역시 前年對比 名目上으로 24~28% 정도 증가된 부담이다.

1979년도의 甲類農地稅는 總徵收額 43,155,461천원으로서 農家戶當 甲類農地稅 負擔額은 總農家 기준 19,963원, 耕種農家 기준 20,924원, 畝作農家 기준으로는 26,013원이고 甲類農地稅 納付農家만을 기준으로 하면 50,414원 수준 등인바, 이는 全體 農地稅額中 80.4%를 占한다. 總農家 기준 1인당 甲類稅 負擔額은 3,969원이며 畝作農家 기준으로는 5,172원, 甲類稅 納付農家 家口員 1인당 負擔額은 10,023원 수준이다(表 3-11). 1979년도 乙類農地稅의 總規模는 10,447,380천원으로서 對 總農地稅 寄與率은 20% 정도였다.

한편, 1971년 農家戶當 農地稅 負擔額은 總農家 기준 1,822원, 耕種農家 기준 1,942원이며, 이때 家口員 1인당 擔稅額은 각각 307원, 327원씩이던 것이, 1979년에는 總農家戶當 24,814원, 耕種農家戶當 26,009원, 따라서 家口員 1인당으로는 각각 4,933원, 5,171원 등으로 1971~79년 사이에 農地稅 總徵收額이 11.9배로 신장하였음에 비하여 戶當 負擔額은 13.4~13.6배로, 家口員 1인당 負擔額은 15.8~16.1배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農地稅 總規模보다는 戶當 負擔額이, 또 그것보다는 家口員 1인당 負擔額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은 總農家戶數 및 耕種農家戶數의 감소와 더불어 農家戶當 인구도 감소(1971年比 87.7% 수준으로)하였기 때문이다(表 3-12).

甲類農地稅의 總賦課額은 1975~79년間に 247.5% 수준으로 신장하였고, 戶當 擔稅額은 동기간에 260~270%, 1인당 負擔額은 288~30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甲類農地稅 納付農家를 기준으로 한 戶當 및 1인당 擔稅額은 220.5~244.3% 수준의 증가로 비교적 적게 신장하였는데, 이는 甲類農地稅의 納付農家戶數가 1975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農地稅 중 甲類農地稅의 비중은 1973년(72.4%) 이후 2~3년 동안 증가해 오다가 1976년(86.6%)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減少傾向에 있는바(表 3-13), 이는 고추, 마늘, 감귤, 사과 등 乙類農地稅對象作物의 栽培擴大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甲類農地稅의 納付形態別 추이는, 賦課額 기준으로 1975년에 總

表 3 - 11 農民의 農地稅負擔現況¹⁾(1979)

	徵收總額 (全 國)	戶 當 担 稅 額				1 人 當 担 稅 額 ²⁾			
		總 農 家	耕種農家	畚作農家	甲類稅納 付 農 家	總 農 家	耕種農家	畚作農家	甲類稅納 付 農 家
農 地 稅 計(A)	千원	원	원			원	원		
	53,644,024 (44,317,512)	24,814 (19,929)	26,009 (21,460)	— —	— —	4,933 (3,847)	5,171 (4,143)	— —	— —
甲 類 農 地 稅 (B)	千원								
	43,155,461 (36,648,800)	19,963 (16,480)	20,924 (17,747)	26,013 (21,575)	50,414 34,734	3,969 (3,181)	4,160 (3,426)	5,172 (4,165)	10,023 (6,705)
B / A (%)	%								
	80.4 (82.7)	80.4 (82.7)	80.4 (82.7)	— —	— —	80.4 (82.7)	80.4 (82.7)	— —	— —

註 ; 1) () 內 1978年度數值. 2) 戶當 人口는 5.03 名('78 年은 5.18 名임) 基準임.

資料 :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 ”, 「농림통계연보」 1980.

表 3-12 農民의 農地稅 負擔 推移(1971 ~ 1979)

區 分 \ 年 度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比 較	
										79/71	79/75
農地稅徵收總額	千圓 4,522,039 (4,569,744)	5,336,310 (5,398,010)	8,086,684 (8,155,911)	13,866,309 (13,979,682)	20,840,899 (21,024,859)	31,636,876 (31,785,422)	35,945,398 (36,095,946)	44,317,512 (44,529,331)	53,644,024 (53,911,509)	119倍 (118倍)	257.4 % (256.4 %)
農家戶當農地稅	圓									倍	%
總農家基準	1,822	2,150	3,300	5,823	8,760	13,544	16,036	19,929	24,814	13.6	283.3
耕種農家 "	圓									倍	%
家口員1人當農地稅	1,942	2,176	3,497	6,183	9,236	14,373	16,871	21,460	26,009	13.4	281.6
總農家基準	圓									倍	%
耕種農家 "	307	359	552	1,031	1,573	2,476	3,003	3,847	4,933	16.1	313.6
	圓									倍	%
	327	363	585	1,094	1,658	2,628	3,159	4,143	5,171	15.8	311.9
總 農 家 戶 數	戶 2,481,525	2,451,844	2,450,277	2,381,200	2,379,058	2,335,856	2,303,930	2,223,807	2,161,821	% 87.1	% 90.9
耕 種 農 家 戶 數	戶 2,382,022	2,306,255	2,312,401	2,242,668	2,256,486	2,201,190	2,189,926	2,065,090	2,062,500	% 86.6	% 91.4
農 家 戶 當 人 口	人 5.93	5.99	5.98	5.65	5.57	5.47	5.34	5.18	5.03	% 87.7	% 93.4

() 內는 賦課額.

資料 ;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 , 「농림통계연보」, 1980

內 務 部, 「지방세정연감」, 1980.

表 3 - 13 甲類 農地稅 負擔 推移(1972 ~ 1979)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比 較	
									79/72	79/75
千圓										
甲類農地稅總額 ¹⁾	4,125,662	5,902,246	11,142,446	17,524,903	27,515,365	30,351,602	36,832,965	43,372,323	10.5 倍	247.5 %
農家戶當甲類稅負擔										
總農家 基準	1,683 圓	2,409	4,679	7,366	11,780	13,174	16,563	20,063	11.9 倍	272.4 %
耕種農家 "	1,789 圓	2,552	4,968	7,766	12,500	13,860	17,836	21,029	11.8 倍	270.8 %
畚作農家 "	2,328 圓	3,322	6,705	10,044	15,877	17,532	21,684	26,144	11.2 倍	260.3 %
甲類稅納付農家 "	6,000 圓	7,403	11,286	22,978	28,600	32,729	34,909	50,667	8.4 倍	220.5 %
1 入當甲類稅負擔額										
總農家 基準	281 圓	403	828	1,322	2,154	2,467	3,197	3,989	14.2 倍	301.7 %
耕種農家 "	299 圓	427	879	1,394	2,285	2,596	3,443	4,181	14.0 倍	300.0 %
畚作農家 "	389 圓	556	1,187	1,803	2,903	3,283	4,186	5,198	13.4 倍	288.3 %
甲類稅納付農家 "	1,002 圓	1,238	1,998	4,124	5,229	6,129	6,739	10,073	10.1 倍	244.3 %
農地稅中甲類稅比重 ²⁾	76.4 %	72.4	79.7	83.4	86.6	84.1	82.7	86.4	+4.1 % 포인트	△ 2.9 % 포인트
畚作農家戶數	1,770,970 戶	1,776,585	1,661,902	1,744,735	1,733,030	1,731,210	1,698,650	1,658,980	92.5 %	95.1 %
甲類稅納付農家戶數	687,605	797,281	987,300	762,669	962,060	927,427	1,055,127	856,029	1.2 倍	112.2 %

註； 1) 賦課額基準임 (但, 賦課額對 徵收額比는 1965 ~ 1979 年 사이에 98 ~ 99 % 였음).

2) 賦課額基準임.

資料；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 ,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 1980.

" , 「농림통계연보」, 1980.

17,524,903천원 중 物納分이 17,422,572천원으로 99.42%였고, 甲類稅 納付總農家 762,669戶 중 物納農家が 751,194호로 99.28%에 달하였다. 그후 金納分の 비중이 경미한 증가세를 보여 1979년에는 總賦課額 중 金納分이 366,626천원으로 0.85%, 金納農家は 0.91%로 늘었으나 아직도 전체의 1% 이내에 불과한 수준이다(表 3-14).

乙類農地稅는 1979년에 賦課額 기준으로 10,447,380천원 규모로서 總農家戶當 平均 4,833원, 乙類稅 納付農家 기준으로 26,276원씩 부담하였다. 1972년에 비하면 總農家 기준으로 9.6배, 乙類稅 納付農家 기준으로 5.6배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1975년 對比 伸長率은 각각 32.4%, 24.8%등이었다. 乙類農地稅 納付農家戶數는 1972년의 265,047호에서 점증하여 1974년에는 621,715호까지 늘었다가 그 이후 40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表 3-15).

農地稅 중 乙類稅의 비중은 1973년(27.5%)을 고비로 2~3년간 감소하다가 (1976년 13.8%) 다시 증가하여 1979년에는 19.4% 수준이었다.

나) 農地稅負擔率

農地稅의 擔稅率은 그 比較對象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對象基準의 설정에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주로 農業所得과 農家事業所得 등에 대한 農地稅의 비율로 보고 분석하였다.

우선 GNP가 290,721억원, 農地稅(賦課額 기준)가 539억원이었던 1979년에 GNP 對 農地稅 비는 0.18%로서 1971년의 0.14%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1976년의 0.24%를 정점으로 계속 微減勢이다(表 3-16). 1978, 1979년의 農家所得(事業所得+事業外所得=農業所得+農外所得)에 대한 農地稅 擔稅率은 總農家 기준 1.1%, 耕種農家 기준 1.2% 수준이고, 農家の事業所得에 대한 農地稅 擔稅率은 1.5~1.6% 수준, 農業所得에 대한 農地稅 擔稅率은 1.6~1.7% 수준이었다. 이것을 耕種農家 기준으로 하면, 農家所得 對比 1.2%, 事業所得對比 1.6% 및 農業所得 對比 1.7% 수준이다.

農地稅 擔稅率 趨勢는 지난 10년 동안 農家の 소득이 계속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한 農地稅 擔稅率은 여전히 증가하여, 總農

表 3 - 14 甲類農地稅 納付形態別 稅額推移(1975 ~ 1979)

年度別 形態別	1975	1976	1977	1978	1979	79/75
物 納 金 額 (A)	17,422,572 千원	27,375,029	30,186,665	36,559,591	43,005,697	246.8 %
農家數 (A)	751,194 戶	955,362	921,026	1,046,251	848,273	112.9 %
金 納 額 (B)	102,331 千원	140,336	164,937	273,444	366,626	358.3 %
農家數 (B)	5,475 戶	6,698	6,401	8,876	7,756	141.7 %
物 納 · 金 納 計 (C)	17,524,903	27,515,365	30,351,602	36,832,965	43,372,323	247.5 %
農家數 (C)	762,669	962,060	927,427	1,055,127	856,029	122.2 %
A / C	99.42 %	99.49	99.46	99.26	99.15	△0.27 %
A' / C'	99.28 %	99.30	99.30	99.12	99.09	포인트 △0.19 % 포인트

資料；內務部，「지방세정연감」，1980.

表 3 - 15 乙類農地稅 負擔推移(1972 ~ 1979)

區 分 \ 年 度 別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比 較	
									79/72	79/75
乙類農地稅總額 ¹⁾	千 원 1,236,926	2,244,953	2,716,766	3,458,260	4,401,000	5,529,168	7,619,379	10,447,380	8.4 倍	302.1 %
戶當乙類稅負擔額										
總農家基準	원 504	원 916	원 1,141	1,454	1,884	2,400	3,426	4,833	9.6 倍	332.4 %
乙類稅納付農家 ²⁾	원 4,667	4,256	4,370	8,090	10,151	14,352	18,663	26,276	5.6 倍	324.8 %
乙類稅納付農家戶數	戶 265,047	527,509	621,715	427,477	433,546	385,258	408,265	397,600	150.0 %	93.0 %
農地稅中乙類比重 ²⁾	22.9 %	27.5 %	19.4 %	16.4	13.8	15.3	17.1	19.4	△ 3.5 % 포인트	+3.0 % 포인트

註 ; 1) 賦課額基準.

2) 總農地稅賦課額 中 乙類稅賦課額比.

資料 ;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 , 「농림통계연보」, 1980.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表 3-16 國民總生產額 中 農地稅의 比重 推移(1971 ~ 1979)

56

年 度 區 分	1971	1975	1976	1977	1978	1979	變 化	
							79/71	79/75
農地稅總規模	(10億원)							
賦課稅(A)	4.6 "	21.0	31.8	36.1	44.5	53.9	11.7 倍	256.7 %
徵收額(B)	4.5 "	20.8	31.6	35.9	44.3	53.6	11.9 "	257.7 "
國民總生產(C) (GNP)	3,294.8 "	9,792.9	13,272.6	17,021.4	22,917.6	29,072.1	8.8 "	296.9 "
A/C (%)	0.139 %	0.214	0.240	0.212	0.194	0.185	+0.046 % 포인트	△0.029 % 포인트
B/C (%)	0.137 %	0.212	0.238	0.211	0.193	0.184	+0.047 % 포인트	△0.028 % 포인트

資料；經濟企劃院，農水產部。

家戶當農業所得對農地稅의 比는 1971년의 0.62%에서 1975년에는 1.23%, 1979년에는 1.84%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耕種農家戶當農業所得對農地稅 擔稅率도 1971년의 0.67%에서 1975년에는 1.29%, 1979년에는 1.70% 등으로 각각 증가하였다(表 3-17).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農地稅 擔稅率의 현황과 추세 등)은, 농민은 그들의 所得增加率보다 높은 農地稅 負擔 증가를 계속 감수하여 왔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農地稅에 대한 농민의 절대적 過負擔 의식이 싹트게 된 主要因이 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農民의 絶對的 過負擔意識과 관련되어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都市勤勞者(非農業者)의 綜合所得稅 등의 부담에 대한 상대적 被害意識(過負擔意識)이다.

2) 都農間 비교

지난 10년 동안 농민의 負稅率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減少勢를 보여온 都市勤勞者의 租稅公課金 負擔率이 최근에 농민의 租稅公課金 負擔率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이 추세가 계속 될 경우 앞으로는 농민이 더 높은 負擔率을 지속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第2章 9페이지 참조). 그러나 농민은 所得稅 負擔에 관한 한, 都市勤勞者에 비하여 무거운 負擔을 져 왔으며(農地稅와 綜合所得稅 비교에서) 현재도 그렇다(表 3-18).

서두에서 전제하였듯이 都農間 擔稅 비교에 있어서 이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직접 單純比較가 어느 정도나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정확히 분석된 바 없으나 현재로서는 최선의 對照稅目이라는 점에서, 위의 사실도 이 兩者比較에 의하여 그 입증이 가능하다. 가령 都農間에 稅額 1만원을 똑같이 부담하는 경우, 都市勤勞者의 綜合所得은 년 202.7만원(月收 168,900원)일 때 임에 비하여 농민은 水稻作(專業) 農家が 米穀所得 65.9만원일 때(農外所得을 합해서는 98.9만원일 때), 乙類作物(예: 고추, 마늘) 栽培 農家が 21.0만원(農外所得 포함하여 31.5만원)일 때이며, 같은 논리로서 都市勤勞者는 年所得 336.0만원(月收 280,000원)일 때 15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 비하여, 水稻作 農家は 米穀所得 162.9만원(農外所得加算

表 3 - 17 農地稅 担稅率 現況과 推移(戶當平均) (1971~1979)

85

	農 地 稅		所 得				担 稅 率 (%)					
	總農家(A)	耕種農家(A')	農家所得(B)	事 業 所 得			A/B	A'/C	A/D	A'/B	A'/C	A'/D
				(C)	農業所得(D)	兼業所得(E)						
1971	원 1,822	원 1,942	원 356,832	303,061	291,909	11,152	0.51	0.60	0.62	0.54	0.64	0.67
1975	8,760	9,236	872,933	736,701	714,838	21,863	1.00	1.19	1.23	0.11	1.25	1.29
1976	13,544	14,373	1,156,254	949,716	921,193	28,523	1.17	1.43	1.47	1.24	1.51	1.56
1977	16,036	16,871	1,432,809	1,075,407	1,036,136	39,371	1.11	1.49	1.55	1.18	1.57	1.63
1978	19,929	21,460	1,884,194	1,399,639	1,355,668	43,971	1.06	1.42	1.47	1.14	1.53	1.58
1979	24,814	26,009	2,227,483	1,575,452	1,531,275	44,177	1.11	1.58	1.84	1.17	1.65	1.70
1978~79 (平均)	22,372	23,735	2,055,839	1,487,546	1,443,472	44,074	1.09	1.50	1.55	1.15	1.60	1.64
79/71	倍 13.6	倍 13.4	倍 6.2	倍 5.2	倍 5.2	—	—	—	—	—	—	—
79/75	% 283.3	% 281.6	% 255.2	% 213.9	% 214.2	—	—	—	—	—	—	—

資料：農水産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80.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表 3 - 18 都農間 所得稅 負擔 現況 比較(1980)

担稅額 (A)	綜 合 所 得 稅			甲 類 農 地 稅					乙 類 農 地 稅					同額税金을 부담하는所得額比較			
	所得金額 (B)	適用 ¹⁾ 稅率	担稅率 ²⁾ (A/B)	米穀所得 ³⁾ (C)	C+農外所得 ⁴⁾ (D)	適用 ¹⁾ 稅率	担稅率		고추, 마늘 등 所得 ⁵⁾ (E)	E+農外所得 ⁶⁾ (F)	適用 ¹⁾ 稅率	担稅率		B/C	B/D	B/E	B/F
							A/C ⁴⁾	A/D ⁵⁾				A/E	A/F				
5,000 원	1,943,000 (月收 161,700)	6 100	0.3 %	598,300 (823,000)	897,500	6 100	0.8 (0.6)	0.6	160,000 원	240,000 원	10 100	3.1 %	2.1 %	3.2 倍	2.2 倍	12.1 倍	8.1 倍
10,000 원	2,027,000 (月 168,900)	6 100	0.5 %	659,400 (907,000)	989,100	6 100	1.5 (1.1)	1.0	210,000 원	315,000 원	10 100	4.8 %	3.2 %	3.1 倍	2.0 倍	9.7 倍	6.4 倍
60,000 원	2,860,000 (月 238,000)	6 100	2.1 %	974,100 (1,340,000)	1,461,200	10 100	6.2 (4.5)	4.1	410,000 원 (520,000)	615,000 원	15 100	14.6 (11.5)	9.8 %	2.9 倍	2.0 倍	7.0 倍	4.7 倍
100,000 원	3,110,000 (月 259,000)	8 100	3.2 %	1,265,000 (1,740,000)	1,897,500	10 100	7.9 (5.7)	5.3	610,000 원 (720,000)	915,000 원	20 100	16.4 (13.9)	10.9 %	2.5 倍	1.6 倍	5.1 倍	3.4 倍
150,000 원	3,360,000 (月 280,000)	8 100	4.5 %	1,628,500 (2,240,000)	2,442,800	10 100	9.2 (6.7)	6.1	860,000 원 (970,000)	1,290,000 원	20 100	17.4 (15.5)	11.6 %	2.1 倍	1.4 倍	3.9 倍	2.6 倍
200,000 원	3,860,000 (月 321,700)	10 100	5.2 %	1,992,000 (2,740,000)	2,988,000	10 100	7.3 (10.0)	6.7	1,110,000 원 (1,220,000)	1,665,000 원	20 100	18.0 (16.4)	12.0 %	1.9 倍	1.3 倍	3.5 倍	2.3 倍

註 1) 稅法上稅率. 2) 所得對比 担稅率.
 3) () 內는 米穀粗收入, 1979. 米穀所得率 72.7 %.
 4) 米穀所得對比 担稅率, () 內는 米穀粗收入 對比 担稅率.
 5) 水稻作農家の 事業所得對比 担稅率.
 6) 1 期作物所得, () 內는 고추+마늘 등과 같이 2 個期 收穫의 경우 所得額.
 根據法規: 所得稅法 및 地方稅法.

244.3만원), 마늘, 고추栽培農家は 마늘・고추 所得 86.0~97.0만원(農外所得 加算 129.0~144.5만원)일 때 등이다. 따라서 所得 對比 擔稅率은 稅額 1만원일 때 都市家口가 0.5%임에 비하여 水稻作農家は 1.1%(粗收入 대비 9.2%), 마늘・고추 栽培農家は 15.5~17.4% 수준으로서 農民의 稅負擔이 무겁다. 現行 稅法上 甲類農地稅는 課標 450.0만원 미만에서는 農民의 擔稅率이 도시근로자 擔稅率을 상회한다. 이는 그 課標 범위를 초과할 때는 農民의 擔稅率이 都市勤勞者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課標가 그 수준(甲類 240만원, 乙類 45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農民의 擔稅率 低位性은 다음의 이유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즉 1979년의 경우, 農地規模 1.0~1.5ha 農家の 戶當平均 米穀所得이 1,071,386원 수준이고, 고추 農家の 高추 栽培面積 6,000평(平均 이상) 규모에서의 고추所得이 441.6만원(坪當 收量 0.8升, 斤當 價格 2,000원, 所得率 46%의 경우) 수준이었음에 비추어 農地稅를 納付하는 대부분의 農가가 그 課標 수준에 미달하는 범위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農民은 都市民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所得稅를 負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農民多負擔의 都農間 所得稅負擔 隔差現象은 兩稅目間에 모두 現行의 稅制, 課徵行政 및 技術的 側面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農地稅 부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나. 農地稅制과 課徵行政 및 技術上의 주요 問題點

1) 農地稅制上의 問題點

가) 甲類農地稅의 課標를 「米穀의 粗收入」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① 累進率(稅)制 채택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課稅에서 累進率을 도입하는 취지는 우선 擔稅者의 純所得에 근거를 둔 應能의 原則, 衡平의 原則을 존중하여 高所得者일수록 遞次로 稅金을 더 많이 부담시킴으로써 所得 再分配效果를 기하고자 한 것인 데도, 生産條件의 優劣에 의한 所得差가 고려되지 않는 「粗收入課標制」의 채택은 전기 累進稅制 채택의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② 米穀增産의 制約要因이 될 수도 있다

米穀増産을 목적으로 増投되는 經營費(種苗費, 肥料費, 農藥費, 農機具費, 勞賃費, 賃借料 등)에 대하여도 課稅된다는 이유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増投躊躇→増産沮害」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3) 租稅思想史的으로 덜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1940년대 중반의 日帝末 이전에는 당시 「地稅」였던 甲類農地稅의 課標가 「農地の 賃賃價格」이었는데, 6.25 動亂으로 國家財政이 위기를 맞자 당시 “戰爭被害가 가장 적은 農村”으로부터의 稅收를 확보하고자 1950년 12월, 租稅臨時増徴法을 제정하여(1951년 1월 시행) 일시적인 國家財政確保策으로서의 명분과 이유에서 地稅의 課標를 「土地收益」으로 전환한 것이 무려 30년 동안이나 아무런 수정없이 農民 過負擔的「増徴」을 계속해 왔다는 史實에 비추어, 이제 産業化過程에서 국가로부터의 상대적 低受惠者인 농민으로부터의 「租稅増徴」의 상징인 粗收入 課標制는 농민의 福祉實現에 기여해야 할 租稅思想的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나)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金額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點

① 米價 上昇(政府收買價格 인상 등)에 의한 實質控除額 감소

稅法上 金額 기준으로 고정해 놓은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최근 수년 동안 米穀의 政府收買價格 인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物量 기준) 계속 감소하여 왔다. 1977년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 44.3만원은 그해 收買價格 기준으로, 物量으로는 벼 35.0 ㏎/54kg이었음에 비하여 1979년의 명목상 基礎控除 74.0만원은 1979년 收買價格 기준 벼 41.6 ㏎/54kg으로서 1977~79년 사이에 명목상 67%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18.5%에 불과하고, 1977~80년 사이에는 명목상 67% 인상이 실질적으로는 5.1% 감소를 초래하였다(表 3-19).

더구나 동기간의 米穀 收買價格 40.8% 인상에 따른 實質控除額 감소 효과와 農地の 平均課標 인상에 의한 農地稅 負擔 增加 요인 등을 감안하면 위의 〈表 3-19〉와 같은 명목적 基礎控除額 인상을 수준으로는 농민의 農地稅 負擔을 경감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米價 인상을 통해 농민이 얻을 수 있는 名目所得의 일부가 名目基礎控除制에 의하여 상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는 米

表 3-19 甲類農地稅의 基礎控除額 推移

	1977	1978	1979	1980	80/77
名目基礎控除額	443천원	543千원	740千원	740千원	167.0%
實質基礎控除額	35.0畝/54kg	37.2畝	41.5畝	33.2畝	94.9%
農地의 平均課標	벼 130kg/100坪	140kg	150kg	150kg	115.4%

* 地方稅法 施行規則 第83條 1〈別表 2〉.

資料: 農水產部, 內務部.

價와 連動될 수 있는 體制(實質基礎控除制)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甲類農地稅 納付形態를 物納制로 하고 있는 점

甲類農地稅는 극히 일부(1% 이내)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現行 稅法上(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第2條의 1 및 2) 物納(正租)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物納制가 요하는 政府收買過程에서 包裝費, 運搬費, 人件費 등 追加費用이 따르고³²⁾ 둘째, 앞의 輿論調查結果에서 指摘된 바와 같이(第3章 42 페이지 참조), 農村社會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과 農民의 意識構造變化 등에 의하여 농민은 점차 物納制에서 金納制로의 轉換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金納-物納 並用制 정도라도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 農地稅 基礎控除額이 絶對的·相對的으로 낮은 점

① 農地稅 基礎控除額의 絶對的 低位性

所得稅 基礎控除額의 근거는 일차적으로 家計費³³⁾(특히 그중 生計費)인바 現行 農地稅 基礎控除額 74.0만원은 농가의 平均家計費(1979년: 1,662,168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1977~79년간에 있어서 농가의 平均家計費 對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의 비는 41~45% 수준으로서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이 農家 이외의 다른 계층의 그것(都市勤勞者 平均家計費 對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 比는 90~107% 수준이었음)과 비교의 여지도 없이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表 3-20).

② 農地稅 基礎控除額의 相對的 低位性

表 3 - 20 家計費와 基礎控除의 都農間 比較

		1977	1978	1979	79 / 77
◦ 家計費와 基礎控除					
農 家	基礎控除 I ¹⁾ (A)	44.3 萬원	54.3 萬원	74.0 萬원	167 %
	基礎控除 II ²⁾ (B)	49.6 "	62.1 "	85.0 "	171 "
	基礎控除 III ³⁾ (C)	54.9 "	69.9 "	96.0 "	175 "
	平均家計費 (D)	967,407 원	1,662,508 원	1,662,168 원	172 "
	A / D	45.8 %	41.1 %	44.5 %	—
	B / D	51.3	47.0	51.1	—
	C / D	56.7	52.9	57.8	—
都 市 家 口	基礎控除 ⁴⁾ (E)	120.0 萬원	156.0 萬원	186.0 萬원	155 %
	平均家計費 (F)	1,118,760 원	1,488,600 원	2,021,316 원	181 %
	E / F	107.3 %	104.8 %	92.0 %	—
◦ 都農間 基礎控除比					
I (A / E)		36.9 %	34.8 %	39.8 %	—
II (B / E)		41.3	39.8	45.7	—
III (C / E)		45.8	44.8	51.6	—

註 ; 1) 甲類農地稅基礎控除.

2) 甲類農地稅 및 乙類農地稅 1 期分만 納付하는 경우.

3) 甲類農地稅와 乙類農地稅 第 1 期, 第 2 期分을 모두 負擔하는 경우.

4) () 內는 보너스 400 % (52 萬원以內)를 加算한 경우의 基礎控除額임.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을 全國 都市勤勞者家口의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과 비교하면,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은 1977, 1978, 1979 년에 각각 120 만 원, 156 만 원 및 186 만 원(賞與金 400% : 52 만 원 가산하면 238 만 원, 保險料控除 24 만 원, 醫療費控除 24 만 원을 가산하면 286 만 원임) 등으로서, 우선 都市勤勞者의 平均家計費 對 基礎控除額의 比 92~107%는 農家의 41~46%보다 2 배 이상 높으며, 基礎控除 絶對額도, 甲類農地稅는 綜合所得稅의 35~40%, 乙類農地稅는 6~12%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都市勤勞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表 3-20).

基礎控除額의 都農間 및 甲乙類農地稅間 추이를 비교해 보면, 1973~79 년 사이에 綜合所得稅의 基礎控除는 3.1 배로 증가하였음에 비하여, 甲地稅는 甲類가 5.2 배, 乙類가 13.8 배 등으로 增額되었음에도(表 3-21), 불구하고 1979 년(1980 년도 同額) 현재, 農地稅負擔이 綜合所得稅 負擔보다 높다는 사실은 그동안 農民은 稅率, 課標 등과 더불어 基礎控除面에서도 低受惠의 입장에 있어 왔음을 설명해 준다.

특히 甲類農地稅의 實質控除額은 1973 년의 벼 25.7 ㏃/54kg에서 1977 년에는 39.3 ㏃/54kg으로, 1979 년에는 41.5 ㏃/54kg 씩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增加率은 名目控除額이 1973~79 년 사이에 5.2 배, 1977~79 년 사이에 167% 수준이었음에 비하여 實質控除額의 增加率은 1.6 배(1973~79) 및 105.6%(1977~79)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農地稅 基礎控除額의 相對的 低位性을 보여준다.

마) 農地稅의 稅率構造가 不合理한 점

① 農地稅의 課標間隔이 불합리하다

이는 課標階層(段階) 수효의 過少性과 課標間隔의 過狹性 등으로 구분되며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㉔ 課標階層數 : 현행법상 農地稅의 課標階層數는 제 1 단계(15 만 원), 제 2 단계(15~30 만 원), 제 3 단계(무제한 : 30 만 원 초과) 등 3 단계뿐인바, 綜合所得稅 課標段階數 17段階制에 비하여 현저히 과소하다(表 3-22). 물론 都農間에는 所得規模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課標階層의 수효가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농가의 所得規模도 전보다(현행 3개 계층

表 3 - 21 農地稅 基礎控除額 推移

稅 目 \ 改定年度	1973 (73 産米穀)	1974 (74 産米穀)	1976 (77 産米穀)	1978 ⁷⁾ (78 産米穀)	1979 ⁸⁾ (79 産米穀)	倍 數	
						(79 / 73)	(79 / 77)
農 地 稅					41.5		
甲 類 (A)	14.2 萬원 ²⁾ (25.7 呔)	37.3 萬원 ³⁾ (48.7 呔)	44.3 萬원 ⁴⁾ (39.3 呔)	53.0 萬원 (36.3 呔)	74.0 萬원 (41.5 呔)	5.2 倍 (1.6 倍)	167.0 % (105.6 %)
乙 類 ¹⁾ (B)	1.6 萬원	7.4 원	13.0 萬원 ⁵⁾	15.6 萬원	22.0 萬원	13.8 倍	169.2 %
(%)	11.3 %	19.8	29.3	29.4	29.7	—	—
綜 合 所 得 稅	60.0 萬원 ⁶⁾	66.0 萬원	84.0 萬원 ⁶⁾	156.0 萬원	186.0 萬원	3.1 倍	221.4
벼 收 買 價 格 ⁹⁾	5,535 원	7,667	12,650 ¹⁰⁾	14,600	17,810	3.2 倍	157.8

註 ; 1) 第 1 期 및 第 2 期分合計.

2) 物量으로 벼 2.5 kl (=25.64 呔 / 54 kg), 1967 年 改定(改定前은 1 kl 었음).

3) 1974. 1. 14. (大統令緊急措置 第 3 號) 物量基準에서 金額基準으로 轉換.

4) 1973. 12. 20. 改定(改定前은 21.6 萬원이었음).

5) 1976. 1. 12. 改定('77 年 施行).

6) 1976. 1. 1. 改定(1976 年 施行).

7) 1980. 12 月 改定.

8) 1979. 12 月 改定.

9) 2 等品 1 呔 / 54 kg 當 價格

10) 77 年 價格.

資料 ; • 內務部, 「지방재정연감」, 1980.

• 農水産部, 「韓國糧政史(統計資料)」, 1980.

• 所得稅法 및 地方稅法.

表 3 - 22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 比較 (1981)

86

課標集團	農 地 稅 課 標 階 層	稅 率		課 標 間 隔	綜 合 所 得 稅			課標集團
		甲類	乙類		課 標 間 隔	稅 率	課 標 階 層	
I	① 150 千圓以下	6 %	10 %	150 千圓 *	1,200 千圓	6 %	① 1,200 千圓以下	I
	② 150 千圓超過 ~ 300 千圓未滿	8	15	150 千圓			② 1,200 千圓超過 ~ 1,800 千圓以下	
	③ 300 千圓超過	10	20				③ 1,800 " ~ 2,400 "	
II		"	"	— 無制限	600 千圓	8	④ 2,400 " ~ 3,000 "	II
		"	"			10	⑤ 3,000 " ~ 3,600 "	
		"	"			12	⑥ 3,600 " ~ 4,500 "	
III		"	"	↓	900 千圓	15	⑦ 4,500 " ~ 5,400 "	III
		"	"			18	⑧ 5,400 " ~ 6,900 "	
		"	"			21	⑨ 6,900 " ~ 8,400 "	
		"	"		1,500 千圓	24	⑩ 8,400 " ~ 10,800 "	
		"	"			28	⑪ 10,800 " ~ 13,200 "	
		"	"			32	⑫ 13,200 " ~ 18,000 "	
					2,400 千圓	36	⑬ 18,000 " ~ 24,000 "	
						40	⑭ 24,000 " ~ 33,000 "	
						44	⑮ 33,000 " ~ 45,000 "	
					4,800 千圓	48	⑯ 45,000 " ~ 60,000 "	
						52	⑰ 60,000 "	
						56		
					6,000 千圓	62		
					9,000 千圓			
					12,000 千圓			
					15,000 千圓			
					-			

註：遞次累進率을 適用하여 計算하는 稅額算出方式은 農地稅와 綜合所得稅가 同一함.

根據法規：地方稅法 第 211條의 1. 및 2. 同 212條, 213條.

所得稅法 第 70條 ①.

으로 定한 1974년 당시) 현저히 확대되었으므로³⁵⁾ 都農間 및 大小農間の 稅負擔 衡平化를 위하여 農地稅 課標의 階層數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㉔ 課標間隔: 現行 農地稅의 課標間隔은 제 1 단계(최하위) 15만원, 제 2 단계 15만원(15만원 초과 30만원 미만) 및 제 3 단계 무제한(課標 30만원 초과시) 등으로 정해 있는바, 제 1 단계를 120만원, 제 2 단계를 60만원(課標 120만원 초과~180만원 미만 범위) 등으로 하고 3 단계 이상 단계에서는 90만원 내지 150만원까지의 課標間隔을 정하고 있는 綜合所得稅의 課標間隔에 비하여 현저히 좁다.

農地稅의 이와 같은 課標間隔의 狹少性 내지 都農間不均等性은 所得階層間的 稅負擔 分布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都農間 및 大小農間の 負擔衡平化를 저해하고 있다. 우선 都農間 관계에 있어서는 稅率 6%의 적용을 받는 제 1 단계가, 綜合所得稅는 120만원임에 비하여 農地稅(甲類稅)는 15만원으로서 綜合所得稅 課標 對比 $\frac{1}{8}$ 의 수준이며, 稅率 8%의 적용을 받는 제 2 단계 課標는 전자가 60만원(120만원 초과~180만원 미만 범위에서)임에 비하여 甲類農地稅는 15만원(15만원 초과~30만원 미만에서)으로 $\frac{1}{4}$ 수준이다. 그러나 課標 제 3 단계에서는 전자가 60만원(180만원 초과~240만원 미만 범위에서)인데 비하여 후자는 無制限額이다.

따라서 課標의 제 3 단계 이후부터는 오히려 農地稅의 課標間隔이 현저히(무한히)넓다. 다음에 農地稅內에서도 課標 30만원 초과 범위에서의 課標間隔이 무제한적임에 반하여 30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課標間隔이 15만원의 좁은 폭이라는 점에서 課標 30만원 수준을 한계로 하여 稅負擔의 不衡平 結果를 초래한다.

현행 農地稅 課標間隔의 狹少性은 課標間隔 15만원이 그것을 처음 설정³⁶⁾한 1974년의 벼 收買價格基準, 物量으로 벼 19.6㏍/54kg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1979년에는 8.4㏍/54kg, 1980년에는 6.7㏍/54kg(1980년 현재 綜合所得稅課標 제 1 단계의 間隔 120만원은 벼 53.9㏍/54kg분임)로서 1974~80년 사이에 34% 수준으로 그 實質課標幅이 축소되었다는 사실로서 實證된다.

㉕ 農地稅의 稅率이 불합리하다

이는 都農間稅率隔差(綜合所得稅의 稅率과 農地稅의 稅率差)의 過大性과 甲乙類農地稅間의 稅率差 是非로 구분될 수 있다.

㉞ 都農間 稅率隔差 過大: 稅額을 결정하는 요인은 稅率 이외에 전술한 바와 같이 課標와 基礎控除 및 減免惠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더우기 稅負擔의 輕重 개념은 稅金의 絕對額보다도 所得, 生計費, 補助金 등 각각적인 변수에 의하여 규정되므로 稅率 하나만을 들어서 農地稅 負擔의 輕重을 논함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稅率의 비교 분석을 통한 都農間 稅負擔 실태의 음미는 農地稅負擔의 輕重을 가리는 데에 필요 불가결하다. 現行法上, 첫째, 課標 180만원 이하 범위에서는〈表 3-22의 課標集團 I〉농민이 甲乙類稅 모두 都市勤勞者보다 높은 稅率을 적용받으며, 둘째, 課標 180만원 초과~450만원 이하의 범위(課標集團 II)에서는 乙類作物 栽培農家만이 都市勤勞者보다 높은 稅率의 적용을 받는다. 세째, 課標 450만원을 초과하면서부터는(課標集團 III) 농가보다 都市勤勞者가 더 높은 稅率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農地稅의 稅率이 綜合所得稅의 稅率보다 더 높은 課標集團 I의 上限線 180만원은 米穀所得 1,308,600원(1979년 米穀所得率 72.7%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耕地規模 1.5ha 이하의 농가는 모두 이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課標集團 II의 上限線 450만원은 고추 6,000평 栽培農家の 所得(1979년: 4,416,000원)³⁷⁾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농가는 甲乙類 불구하고 都市勤勞者보다 높은 稅率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課標 450만원을 초과하는 課標集團 III에서는 農地稅의 稅率이 綜合所得稅의 稅率보다 낮더라도 농민의 상대적 減稅(負擔 輕減) 효과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만일 課標集團 III의 立法趣旨에 진실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신이 담겨지려면 적어도 課標集團 II에서부터 農地稅의 稅率이 綜合所得稅의 稅率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㉟ 甲乙類農地稅間의 稅率差 是非: 同一課標에 대한 稅率이 課標 階層마다 乙類農地稅가 甲類農地稅보다 4~10% 포인트씩 높은 것이 現行稅法規定인바, 基礎控除額의 격차와 더불어 甲乙類農地稅間 不均等 요인의 하

나가 되고 있다. 甲類農地稅 稅率이 6% 比例稅率이었던 1974년 이전부터 이미 乙類農地稅는 當時金額으로 課標 6만원 이하는 10%, 6만원 초과~30만원 이하는 15%, 30만원 초과는 20%식의 累進率이 적용되고 있었으며,³⁸⁾ 아울러 基礎控除額도 乙類는 1973년에 甲類의 11.3%, 1974년에는 19.8%였다가 1977년부터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稅率과 基礎控除額 모두 지난 10년 동안 甲類農地稅를 부담하는 水稻作 農家가 고추, 마늘 등 乙類作物栽培 農家보다 稅制上 유리하였음을 시사한다. 畚의 水稻의 作物栽培를 견제하고 主穀自給化 촉진의 취지에서 甲類農地稅의 負擔輕減措置가 일단 수급은 가나 現行 甲乙類農地稅間의 稅率 격차가 과연 적절한가의 여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다.

2) 農地稅 課徵에 관한 行政 및 技術上的 問題點

가) 甲類農地稅의 課標 決定

甲類農地稅의 課標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農地에 대한 基準收入金額(또는 收入金額)으로 정하고 있으며(地方稅法 第211條의 1), 이때의 基準收入金額(또는 收入金額)은 그 農地에서 생산되는 벼의 「基準收穫量(또는 收穫量)×農水産部長官이 고시한 당해 년도 米穀買入價格 중 租穀 2등급 가격」의 式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地方稅法 施行令 第162條). 이는 곧 일정 농지의 收穫量이 늘면 單位面積當 課標額도 늘고, 그것이 줄면 課標額도 준다는 課稅應能原則에 입각한 합리적인 自動調節 기능이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1977년 이후 甲類農地稅의 課標는 벼의 收穫量(段收)의 增減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즉 平均段收는 1977년의 쌀 494 kg (100 坪當 164.7kg, 벼 227.5kg)에서 1979년에는 453kg(100坪當 151kg : 벼 208.6kg)으로 1977~1979년 사이에 8.3%가 減少하였음에 반하여 農地의 平均課標는 1977년의 쌀 91kg/100坪에서 1979년에는 105kg/100坪으로 15.4%가 인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收穫量(平均段收)對 平均課標의 비는 1977년의 55.3%에서 1979년에는 69.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表 3-23). 이는 平均課標를 결정짓는 농지의 平均等級이 1977년 이후 매년 1등급씩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인바, 不足稅源을 增稅로서 충당하려한 뜻은 이해되

나, 동일 土地에 대하여, 그것도 매년 土地의 段收는 平均 4.5%씩 감소하였는데 도리어 農地等級을 1등급씩 인상하여 100坪當 10kg(=0.185 ㏍)의 課標를 올린 것은 課標決定過程上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表 3-23 甲類農地稅의 平均課標와 쌀 段收推移

	1977	78	79	79/77
平 均 課 標				
100坪當(벼)	130kg	140	150	
(農地平均等級)	(23等級)	(24等級)	(25等級)	
100坪當(쌀)	91kg	98	105	115.4%
10a 當쌀(A)	273kg	294	315	
쌀 平 均 收 量				
10a 當(B)	494kg	474	453	91.7%
100坪當	164.7kg	158	151	
A/B	55.3%	62.0%	69.5%	-

資料：農水産部，內務部.

나) 乙類農地稅의 課標 決定

乙類農地稅의 課標는 해당 작물을 재배한 農地로부터 얻은 所得金額인데(法 第211條의 ②), 이 所得金額은 納稅義務者가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每期別로 所要金額 등 必要事項을 신고하여(法 第219條), 市長 郡守로 하여금 決定케 하고 있으나(施行令 第166條의 ④), 대부분의 경우 申告가 없거나 申告內容이 부적당하여 市長·郡守가 조사 결정한다. 이때 所得金額 算出基礎資料로서의 所得標準率을 결정키 위하여 실시하는 諸調査와 결정(예컨대 收穫量, 基準時價 등)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① 收穫量調査：不正確・不公平이 문제이다. 수확량은 農地調査季員 및 당해 耕作者 등과 함께 面職員이 조사하고 있는데, 調査方法이 目測調査

이기 때문에 수확량의 評價가 정확치 못하고 客觀性을 결할 뿐 아니라 技術的으로 未洽하며, 특히 調査人力의 부족으로 인한 調査 自體의 不實性 등으로 課稅의 不正確・不公平의 요인이 되고 있다. 調査의 專門化와 調査人力의 量的 및 質的 增大方案이 요청된다.

② 基準時價 결정: 乙類農地稅의 課標는 요약해서 「收穫量×基準時價×所得標準率」의 算式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基準時價의 適正決定은 앞의 收穫量の 결정만큼 중요하며, 이의 適正性 여부는 課稅에 관한 納稅者의 가장 깊은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乙類稅 對象作物(예: 고추)은 그 價格이 市場事情에 따라 騰落의 폭이 커서 課稅에 適用하는 基準時價가 農家販賣價格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乙類農地稅의 過多賦課의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일정 기간중, 예컨대 收穫期를 전후한 2~3개월간 平均價格과의 連動化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밖에 基準時價의 地域間差로 인한 동일 所得 農家間 稅負擔 격차, 재해 등에 의한 品質低位性으로 인한 價格 하락 등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③ 所得標準率: 乙類稅 對象作物의 作目別, 品種間 및 地域間 所得率 隔差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課標가 결정되고 있는 점도 課稅 不正確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사과에 있어서 실제 所得差(單位面積當)가 있는 “국광”과 “후지”의 所得率을 동일하게(40%, 1979, 1980년, 全北 任實 지역의 예) 결정·적용한다거나, 고추의 경우처럼 單位面積當 所得差가 있는 “대하초”와 “불암”의 所得率을 차별없이 동일하게(46%, 1980년 慶北 義城 지역의 예) 적용하고 있음으로써 同一作物의 品種間 所得差가 도의시되어 乙類農地稅 課標決定의 불확실성과 나아가서 稅負擔의 不平衡을 초래한다. 반면에 地地間에는 같은 품목(예: 고추)에 있어서는 所得標準率 격차가 있어서(1980년, 忠北 陰城 45%, 全北 任實 42%, 全北 鎮安 38% 및 義城 46% 등으로) 課稅의 不公平 要因으로 지적되고 있다(表 3-24). 따라서 乙類農地稅 對象作物의 所得標準率은 品種間에는 差等化, 地域間에는 劃一化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農地稅 조정 등에 관한 行政 및 立法體制上的 問題

表 3 - 24 品種別・地域別 乙類稅 對象作物 所得標準率差(1980年)

地域別 作目・種別	忠北陰城 (大 所 面)	忠北陰城 (金 旺 邑)	全北任實 (官 村 面)	全北鎮安 (馬 靈 面)	慶北義城 (丹 村 面)
고 추					
대 하 초	45 %	45	42	38	46*
불 암	45 %	45	42	38	46
사 파					
국 광	—	—	40	40	—
후 지	—	—	40	40	—
인 삼	36 %	36	—	37	—

* 1980年 이 地域의 “대하초”는 坪當 0.85斤, 斤當 3,000 원
이었으며 “불암”은 坪當 1斤, 斤當 2,500 원 이었음.

資料 : 1981年 5月, 現地調査結果임.

앞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農民의 心理的 擔稅反應인 輿論調査 結果에서
나 農民 租稅負擔을 法規的으로 정해 놓은 관련 稅法 등의 분석 결과로 볼
때, 농민의 農地稅 부담에 관한 문제는 都市勤勞者를 意識한 상대적 개념
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農地稅와 綜合所得稅 등의 합리적인 調整을 위한
行政 및 立法體制가 확립될 것이 요청되고 있으나, 그동안은 이점이 미흡
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租稅行政體制上, 行政府의 입장에서는, 綜合所得稅는 財務部, 農地
稅는 內務部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農地稅와 綜合所得稅의 課徵에 있어서
의 합리적인 조화를 기하려면 兩部處間의 共同討議 調整을 요하며, 특히
農村, 農業, 農民과 관계가 깊고, 農村 및 農家經濟의 安定과 成長을 위
해 직접 關여하고 있는 農水産部側의 의견과도 조화를 갖추어야 할 것임
에도 그 3자間의 共同協議調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立法機關인 國會에 있어서도 綜合所得稅 關聯事項은 國會 財務委員會에
서, 農地稅 關聯事項은 國會 內務委員會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바, 위의 兩
稅目에 關한 法規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兩委員會의 共同討議 調整기
능이 결여되어 있으며, 농수산위원회의 의견이 함께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다. 예컨대 1978년에 勤勞所得稅의 人的控除額을 月 10만원에서 13만원

으로 인상하고 賞與金控除를 30% 인상하여 52만원으로 정한 것은, 당시 國會 財務委員會에서 추진 결정한 것이며, 같은 해에 農地稅 基礎控除額을 甲類 53만원, 乙類 15.6만원씩 20% 인상한 것은 國會 內務委員會에서 개정 통과된 것인데, 이때 所得稅 人的控除額 13만원은 1976년 대비 85.7%(1976년 현재 人的控除額은 7만원이었음) 인상으로서 同年 對比 農地稅 基礎控除額 引上率 19.6%(1976년 당시 農地稅 基礎控除額은 44.3만원)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과 農地稅 基礎控除額間의 不均衡의 폭을 더욱 확대시킨 바 있다. 따라서 稅法의 制定과 改定을 다루는 立法府와, 租稅의 課徵行政을 맡고 있는 行政府 모두, 財務・內務・農水産 등 3者 共同調整體制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第 4 章

其他 租稅 및 公課金

1. 住民稅・財産稅・防衛稅

가. 住 民 稅

1) 住民稅의 設置와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

가) 住民稅는 1962년 地方稅制 改革 이후 10 년 동안 급변해 온 社會 經濟的 情勢에 부응토록 租稅上의 調整을 위하여 1973 년 地方稅法 改正의 一環으로 地方稅 중 普通稅로 신설되었다 (法律 第 2593 號, 1973. 4. 1 施行).

나) 住民稅의 租稅體系上 位置는 地方稅→市郡稅→獨立稅→普通稅의 관계에 있으며, 農民이 부담하는 3대 直接稅(農地稅, 財産稅 등과 함께)의 하나로서 地方財政上으로는 前述한 바와 같이(第 2 章 11 페이지 참조) 전국 郡單位 기준 地方稅 總額의 13.5%(1979)수준이다 (서울 20.5%, 釜山 11.5%, 市는 23.7%).

2) 住民稅의 稅制上의 意義와 特徵

가) 住民稅는 地方自治團體에 住所를 둔 개인과 法人 및 地方自治團體內에서 所得을 얻은 개인과 法人(納稅義務者)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人稅로서, 그들이 소속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經費의 일부를 多數의 住民에게 부담시켜 負擔分任의 精神을 구현코자 하는데도 意義가 있다

나) 住民稅는 所屬住民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한 租稅의 行방을 통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活動과, 그로 인하여 地域開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團體運營에의 參與意識을 높이고자 하는 “會費”와 같은 性格을 지니고 있다.

다) 住民稅는 稅法上 地方稅法의 適用을 받으면서(地方稅法 第172~179條의 6) 均等割과 所得割로 兩分되어, 일부는 制限稅率(均等割에 한함)의, 나머지 일부(所得割에 한함)는 比例稅率의 적용을 받는다.

3) 稅法上 住民稅의 概要

가)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및 課稅標準

住民稅의 納稅義務者는 均等割의 경우, ① 市郡內에 住所를 둔 개인, ② 市郡內에 事務所 또는 事業場을 둔 法人 및 個人事業者 등이고(地方稅法 第 173 條의 1), 所得割의 경우는 市郡內에서 所得稅 法人稅 또는 農地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개인과 法人 등이다(法 第 173 條의 2), ③ 따라서 農民은 市郡內에 住所를 두고 있을 때 均等割 住民稅와 所得割(農地稅割) 住民稅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住民稅의 課稅對象은 均等割의 경우 개인 또는 法人의 事業場(事務所), 所得割의 경우, 所得稅, 法人稅 및 農地稅 자체 등이고, 住民稅의 課稅標準은 均等割의 경우는 課標額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納稅者가 市, 郡, 道, 特別市 등 어느 地方自治團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예 : 人口 500 萬 이상, 都市는 個人 4,000 원, 法人 40,000 원 등이고, 郡은 個人 800 원, 法人 8,000 원 등임), 所得割의 경우는 所得稅額 法人稅額 및 農地稅額 등이 課標인바, 郡住居 農民의 경우는, 所得割은 農地稅額이 住民稅의 課標이며, 均等割은 郡(또는 市)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課標의(地方稅法 第 172 條)根據가 된다.

나) 住民稅의 稅率

住民稅의 稅率은, 均等割은 다음〈表 4-1〉과 같이 標準稅率, 所得割은 각 課標의 7.5%(現行)이다〈表 4-2〉.

다) 住民稅의 減免과 非課稅 範圍

住民稅는 天災地變 기타 特殊事情 등으로 納稅義務者가 資力을

상실하여 納稅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減免하고(法 第 179 條 6), 均等割의 納稅義務를 지닌 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 또는 生活保護法の 規定에 의한 生計保護 對象者에 대하여는 均等割 住民稅를 부과치 않는다(地方稅法 第 174 條)(小額不徵收稅額은 所得割의 경우 500 원 미만임).

表 4-1 均等割 住民稅의 稅率(標準稅率)

區 分	個 人	法 人
1. 人口 500 萬 이상의 市	4,000 원 (2,000 원)	40,000 원 (20,000 원)
2. 人口 50 萬 이상의 市	2,500 원 (1,000 원)	25,000 원 (10,000 원)
3. 其 他 市	1,500 원 (500 원)	15,000 원 (5,000 원)
4. 郡	800 원 (300 원)	8,000 원 (3,000 원)

()內는 1976 년 新設當時의 稅率임.

表 4-2 所得割 住民稅의 稅率

區 分	現 行 (1979. 12 改)	新設當時(1976. 12 新)
所 得 稅 割	所 得 稅 額 $\times \frac{7.5}{100}$	所 得 稅 額 $\times \frac{5}{100}$
法 人 稅 割	法 人 稅 額 $\times \frac{7.5}{100}$	法 人 稅 額 $\times \frac{5}{100}$
農 地 稅 割	農 地 稅 額 $\times \frac{7.5}{100}$	農 地 稅 額 $\times \frac{5}{100}$

라) 住民稅의 納期

住民稅 普通徵收의 納期는 3 월 16 일~ 3 월 31 일까지로 하고 所得割은 수시 부과할 수 있다(第 179 條의 2). 特別徵收의 納期는 매 徵收 翌月 10 일까지 管轄 市郡에 납부한다(179 條의 3). 이때 特別徵收

란 예컨대 農地稅 隨時賦課의 경우 農民으로부터 農地稅割 住民稅를 징수하는 것 등이다.

4) 農民의 住民稅 負擔現況과 問題點

農民의 住民稅 負擔現況을 郡地域에 거주하는 1.5 ha 水稻作 專業農家(畝 2,700 평, 田 1,800 평) 5 인家族 基準으로 살펴보면, 1980 년의 경우 農地稅割 住民稅가 12,920 원, 均等割 住民稅가 800 원으로 계 13,720 원으로서 같은 해 米穀所得 1,659,900 원(1.5ha 중 60 % 水稻作農의 경우) 對比 0.8 % 수준이며, 그의 甲類農地稅 負擔額 172,230 원에 비하면 8.0 % 수준이다(表 4-3). 1977 ~ 80 년 사이에 米穀所得이 10.8 %減, 農地稅가 105.8 %增이었음에 비하여 農民의 住民稅는 97.7 % 증가 함으로써 水稻作農家は 所得增加에 비하여 農地稅 및 住民稅의 擔稅率이 현저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經費의 多數住民 負擔分任의 趣旨에 비추어 均等割 住民稅의 農民負擔에 관하여는 異論이 없겠으나, 所得割 住民稅 중 農地稅割 農民負擔稅率을 所得稅割 住民稅, 法人稅割 住民稅와 同一稅率로 7.5 %를 적용함은, 첫째, 農民의 農地稅 負擔問題에서 지적되었듯이 農地稅 그 自體의 負擔率도 높아서 都農間 不衡平의인데 그 稅額을 課標로 하여 부과하는 農地稅割 住民稅에 대해서도 都市勤勞者가 부담하는 所得割 住民稅의 稅率과 同一率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都農間 衡平 沮害要因이 될 것이며, 둘째, 農業內部에서도 비록 農地稅割 住民稅의 規模가 크지는 않지만 大小農間 所得隔差가 큼에 비추어, 住民稅의 課標(農地稅額)에 대한 單一比例稅率의 適用은 이론상 大小農間의 不衡平 要因이 될 것이다.

나. 財 產 稅

1) 財産稅의 設置와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

가) 沿革

財産稅는 1961 년 稅制改革 당시 國稅인 土地稅(1958 년 新設, 1961 년 개정된 臨時土地收得稅) 중 農地에 대한 부분은 地方稅로 옮겨 農地稅를 신설하고, 그 土地稅 중 垡地에 대한 부분은 鑛稅 중의 鑛區稅,

表 4 - 3 農民의 住民稅負擔現況¹⁾ (1977 ~ 1980)

單位: 원

	米穀所得 ²⁾ (A)	農地稅 ³⁾ (甲類)(B)	均等割住民稅			所得割住民稅				住民稅計 (E=C+D)
			個人(C)	法人等	小計	所得稅割	法人稅割	農地稅割 (D)	小計	
1977	1,860,600(75.0)	83,700	300	—	300	—	—	6,277	6,277	6,577
1978	1,954,900(71.2)	107,000	300	—	300	—	—	8,025	8,025	8,325
1979	2,327,000(72.7)	139,600	500	—	500	—	—	10,470	10,470	10,970
1980	1,659,900(65.0)	172,230 ⁴⁾	800	—	800	—	—	12,920	12,920	13,700
80/77	89.2 %	205.8 %	286.7 %	—	286.7 %	—	—	205.8 %	205.8 %	197.7 %

註: 1) 郡地域居住, 5인家族, 1.5ha 水稻單作 專業農家基準.

2) () 內는 米穀所得率, 米穀所得算出에 적용된 平均段收는 1977년 쌀 494 kg, 1978년 474 kg, 1979년 453 kg, 1980년 289 kg임.

3) 甲類農地稅 平均課標는 1977년 쌀 273 kg/10a 當(벼 390 kg), 1978년 294 kg(벼 420 kg), 1979년 315 kg(벼 450 kg), 1980년 315 kg(벼 450 kg) 등을 적용하고, 米價는 該當年度產 벼 2等品 收買價格을 基準으로 함.

4) 1980년도 平均段收는 쌀 285 kg(벼 413 kg), 收買價는 22,260 원/54 kg, 米穀所得率은 65.0 % 를 적용함.

資料: 農水産部, 「農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 1980.

地方稅法 第 176 條, 第 211 條, 第 212 條, 第 213 條 등.

및 당시에 이미 地方稅였던 家屋稅, 船稅 등과 統廢合하여 地方稅에 속하는 財産稅로 확대 신설되었다.

나)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

財産稅는 租稅體系上 地方稅 중 市郡稅→獨立稅→普通稅에 속하며, 農民이 부담하는 주요 直接稅의 하나로서, 地方財政 面에서는 郡單位 기준으로 地方稅 總額의 18.7%(1979) 水準이며, 서울 12%, 釜山 17.4% 및 市 23.7% 등으로서 擔稅者인 農民의 立場에서는 農地稅 다음으로 負擔이 큰 稅目이다.

2) 稅制上的 特徵

가) 따라서 財産稅는 財産所有者가 土地, 建築物, 鑛區, 船舶 등을 소유하고 使用 收益할 수 있는데 대한 收益稅的 性格의 엄격한 對物稅이다.

나) 財産稅는 前述한 바와 같이 本質이 동일한 土地稅, 家屋稅, 鑛區稅 및 船稅 등을 1961년에 통합한 것이기는 하나, 그 課標와 稅率에 있어서는 農地稅가 甲類와 乙類가 다르듯이 課稅物마다 달리 適用하고 있다.

3) 財産稅의 稅法上 概要

가)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및 課標

(1) 財産稅의 納稅義務者는 原則上 納稅期間 開始日 現在의 土地 등 課稅對象의 所有者인 바(地方稅法 第 181, 182 條), 土地의 경우는 ① 納稅開始日 현재 土地 課稅臺帳에 등재된 所有者, ② 國家, 道, 市, 郡 등으로부터의 買收 契約者, ③ 土地의 所有權의 歸屬이 불분명할 때는 그 土地를 사용한 자, ④ 土地課稅臺帳에 등록된 者가 權利의 讓渡, 都市計劃 등의 事由로 權利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실제 所有者나 換地交付 豫定者가 納付義務를 진다(地方稅法 第 182 條).

(2) 財産稅의 課稅標準은 그 課稅對象인 土地, 建物, 船舶 등의 課稅時價 標準額³⁹⁾ 表 4-4) 과 鑛口의 面積으로 한다(法 第 187 條).

나) 財産稅의 稅率

財産稅의 稅率은 前述한 바와 같이 그 課稅對象에 따라 상이한

바, 農民의 財産稅 負擔 범위 내에서 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地方稅法 第 188 條).

表 4 - 4 土地課稅時價 標準額表*

등급	가격(원/坪)	등급	가격(원/坪)	등급	가격(원/坪)	등급	가격(원/坪)
1	1	25	100	49	4,000	73	160,000
2	2	26	120	50	5,000	74	180,000
3	3	27	140	51	6,000	75	200,000
4	4	28	160	52	7,000	76	250,000
5	5	29	180	53	8,000	77	300,000
6	6	30	200	54	9,000	78	350,000
7	7	31	250	55	10,000	79	400,000
8	8	32	300	56	12,000	80	500,000
9	9	33	350	57	14,000	81	600,000
10	10	34	480	58	16,000	82	700,000
11	12	35	500	59	18,000	83	800,000
12	14	36	600	60	20,000	84	900,000
13	16	37	700	61	25,000	85	1,000,000
14	18	38	800	62	30,000	86	1,200,000
15	20	39	900	63	35,000	87	1,400,000
16	25	40	1,000	64	40,000	88	1,600,000
17	30	41	1,200	65	50,000	89	1,800,000
18	35	42	1,400	66	60,000	90	2,000,000
19	40	43	1,600	67	70,000	91	2,200,000
20	50	44	1,800	68	80,000	92	2,400,000
21	60	45	2,000	69	90,000	93	2,600,000
22	70	46	2,500	70	100,000	94	2,800,000
23	80	47	3,000	71	120,000	95	3,000,000
24	90	48	3,500	72	140,000	96	3,200,000

* 地方稅法 第 111 條 第 2 項 但書에 規定한 課稅時價 標準額임.

비고 : 가격 320 만원 이상은 200,000 원을 증가할 때마다 각 1 급씩 올라간다.

(1) 土地 중 「住居用 土地」는 原則上 100평 이하가 0.3%, 100평 초과~200평까지 0.5%, 200평 초과 300평까지 10%, 300평 초과 500평까지 20%, 500평 초과는 50% 등이나, 農家は 面積規模에 불문하고 0.3%의 적용을 받는다.

(2) 土地中 「田, 畓, 果樹園, 林野, 牧場用地」 등은 그 價額의 0.1%이다.

(3) 建築物 중 「住宅은 그 價額에 대하여 다음 區分에 의거 稅率을 적용한다. 즉 500萬원 이하는 0.3%, 500萬원 초과 1,000萬원은 0.5%, 1,000萬원 초과 2,000萬원은 1.0%, 2,000萬원 초과 3,000萬원은 3.0%, 3,000萬원 초과는 5.0% 등.

(4) 따라서 農民이 自家에 거주하면서 農土를 가지고 農業에 종사할 경우 부담하는 財産稅는 주로 위인 (1)(2) 및 (3)에 해당하는 稅率과 課標에 준하여 산출된 稅額이다.

다) 財産稅의 課徵・非課稅 및 減免

(1) 財産稅의 徵收方法은 納期마다 納付告知書를 발부하는 典型的인 普通徵收法에 의한다(地方稅法 第189, 190條).

(2) 納期는 條例에 의하면 建築物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土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3) 財産稅는 ① 國家 등, ② 國公用(用途區分) 등에 대하여 非課稅하며(地方稅法 第184條), ③ 天災地變 등에 의한 被害時 減면한다 (法 第195條), ④ 財産評價額 30萬원 이하(1979년까지는 12萬원 이하)에서 免稅된다.

(4) 農民의 財産稅負擔 現況과 推移

財産稅는 보통 賦課額對 徵收額의 비(徵稅率)가 97~99% 수준으로서 1979년의 경우, 全國 總括하여 97.4%, 郡單位 計로는 98.8%의 徵收率을 보였고, 1975년 이후 이 徵收率은 계속 증가 傾向이다.

1979년의 財産稅 負擔規模는 全國總計 83,729.1百萬元이었는데, 그 중 郡稅는 18,219.7百萬元으로서 農民의 財産稅 負擔額은 전체의 約 22% 水準으로 推算된다(表 4-5). 團體別(市道別) 財産稅 負擔規模는 徵收額

基準으로 1979 年に 全國計 81,592.8 百萬元 중 서울市를 제외한 小計가 51,409.9 百萬元으로 全體의 63.0 %水準이었으며, 市道 中에서는 慶南道가 最大負擔道(全國의 7.2 %)였는 바, 農地稅 最多負擔道가 京畿道(17.8 %)였던 점과 대조적이다.

表 4-5 財産稅의 徵收率 및 郡稅의 比重(1975~1979)

		1975	1977	1979	79 / 75
郡稅 (郡單位)	賦課額(A)	5,016,603 千원	12,003,977 千원	18,219,723 千원	3.6 倍
	徵收額(B)	4,905,466 千원	11,835,595 千원	17,993,406 千원	3.7 倍
	徵收率(B/A)	97.8 %	98.6 %	98.8 %	+1.0 % 포인트
總計 (道·市·郡計)	賦課額(C)	30,485,936 千원	46,666,700 千원	83,729,110 千원	2.7 倍
	徵收額(D)	28,436,022 千원	45,316,023 千원	81,592,822 千원	2.9 倍
	徵收率(D/C)	93.2 %	97.1 %	97.4 %	+4.2 % 포인트
郡稅 의 比重	A / C	16.5 %	26.1 %	21.8 %	+5.3 % 포인트
	B / D	17.3 %	25.7 %	22.1 %	+4.8 % 포인트

資料 :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이것을 農地稅 負擔額과 비교하면 全口 總規模는 1979 年 기준 農地稅 53,644.0 百萬元, 財産稅 81,592.8 百萬元 等으로서 財産稅는 農地稅의 152.1 % 수준이었으나, 서울과 釜山을 제외한 道는 33.3 %(全北)~157.8 %(慶南) 등이었고, 農地稅 對 財産稅額比는 1977 年 이후 계속 增加勢이다 (1977 年 126.1 %→1979 年 152.1 %)〈表 4-6〉.

財産稅의 課稅對象別 負擔現況을 보면, 1979 年에 財産稅總額의 61.4 %를 占한 土地分 財産稅가 51,432.7 百萬元이었고, 建築物分 財産稅는 31,900.7 百萬元으로 38.1 %, 기타가 395.7 百萬元 등이었다〈表 4-7〉.

土地分 財産稅 중 農民이 부담하는 田畓, 果樹園, 牧場用地 등에 부과된 金額은 1979 年에 총 9,184.4 百萬元으로서 財産稅總額의 11.0 %, 土地

表 4-6 市道別 農地稅와 財産稅 負擔額比較(徵收額基準)

	1977			1979		
	農地稅(A)	財産稅(B)	B / A	農地稅(A)	財産稅(B)	B / A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合 計 (I)	35,945.4	45,316.0	126.1 %	53,644.0	81,592.8	152.1 %
서 울 市	85.4	17,778.9	208.2 倍	131.9	30,182.9	228.8 倍
서울市除外計 (II)	35,860.0	27,537.1	130.2 %	53,512.1	51,409.9	96.1 %
	萬원	萬원		萬원		
釜 山	15.7	5,541.4	353.0 倍	213.2	11,618.9	54.5 倍
京 畿	6,278.6	4,754.1	75.7 %	9,560.2	9,429.1	98.6 %
江 原	1,117.4	1,102.9	98.7 %	1,780.7	2,120.1	119.1 %
忠 北	2,516.1	1,088.0	43.2 %	4,317.5	1,694.4	39.2 %
忠 南	5,625.9	2,407.9	42.8 %	8,270.7	3,947.7	47.7 %
全 北	6,123.1	1,731.0	28.3 %	8,529.9	2,842.8	33.3 %
全 南	4,598.8	2,842.1	61.8 %	7,988.7	4,972.5	62.2 %
慶 北	5,265.7	4,346.7	82.5 %	7,178.7	8,209.0	114.4 %
慶 南	3,461.0	3,314.9	95.8 %	3,717.1	5,858.7	157.6 %
濟 州	857.7	408.2	47.6 %	1,955.4	716.5	36.6 %
Ⅱ / Ⅰ %	99.8 %	60.8 %	-	99.8 %	63.0 %	-

表 4-7 課稅客體別 財産稅 賦課現況과 推移¹⁾(1975 ~ 1979)

	1975	1977	1979	79 / 75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財 産 稅 規 模(A)	31,345.1	47,379.4	83,729.1	37.4
土地分財産稅(B)	18,614.9	28,527.2	51,432.7	36.2
建物分財産稅(C)	12,581.4	18,630.0	31,900.7	39.4
其 他 ²⁾	148.8	222.2	395.7	37.6
B / A (%)	59.4 %	60.2 %	61.4 %	-
C / A (%)	40.1	39.3	38.1	-

註 : 1) 賦課額基準.

2) 鑛區 및 船舶等.

資料 : 內務部, 「지방재정연감」, 1976, 1978, 1980.

分 財産稅의 17.9 % 수준이었다 < 表 4 - 8 >.

表 4 - 8 土地中 田畓別 財産稅 賦課現況과 推移¹⁾(1975 ~ 1979)

	1975	1977	1979	79 / 75
	百萬元	百萬元	百萬元	
土地分財産稅(A)	18,614.9	28,527.2	51,432.7	55.5
田 畓 (B)	—	5,670.7	7,799.7	72.7
林 野 (C)	—	797.9	1,384.7	57.6
其 他 ²⁾	—	22,058.5	42,248.3	52.2
B / A	—	19.9 %	15.2 %	—
C / A	—	2.8 %	2.7 %	—

註 : 1) 課標額基準.

2) 垡地, 工場用地, 鑛泉地, 雜地 등 포함.

다. 防 衛 稅

1) 防衛稅의 沿革과 租稅體系 및 國家財政上 位置

防衛稅는 1975 년 7 월 16 일, 法律 第 2768 號로 公布, 시행되고 있는 바, 國土防衛用 財源調達을 위한, 國稅에 속하는 < 圖 4 - 1 > 目的稅로서 公布當時는 1980 년도 말까지의 時限國稅였으나 연장 실시 중이다.

國稅 중 防衛稅의 比重은 1979 년에 14.4 %로서 631,904 百萬元 규모이며, 이는 新設 當年인 1975 년 비하여 10.6 倍, 1976 년에 비하여는 235.1 % 수준으로 伸長되어, 國內 어느 稅目보다도 높은 伸長率을 보였다. 國民의 總租稅負擔額 중 防衛稅의 比重은 1979 년에 2.14 %로서 新設 翌年인 1976 년의 2.06 %에 비하여 0.8 % 포인트 증가되었으며, 國稅 중 防衛稅의 比重은 1979 년에 14.4 %로서 1976 년의 14.0 %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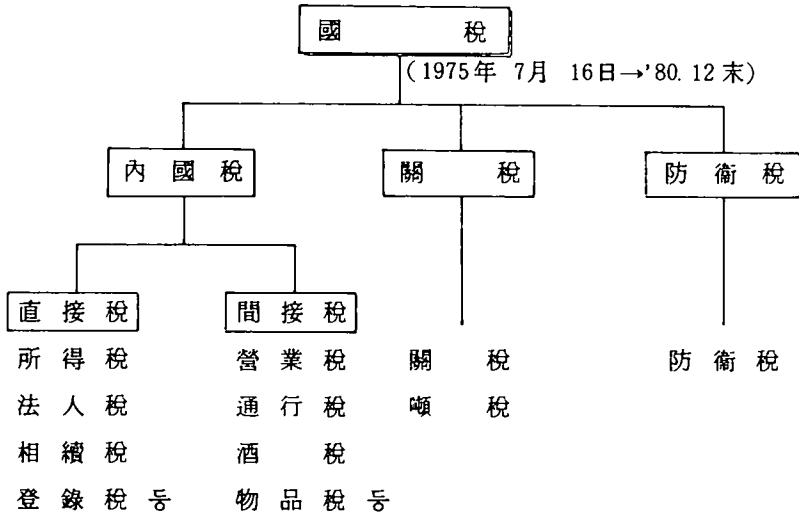
國民의 防衛稅 負擔額을 地方稅 總規模와 比較하면, 1976 년의 121.8 %에서 1979 년에는 137.3 %로 늘어, 防衛稅는 地方稅額 總規模를 增加하면서 계속 增加勢이다 < 表 4 - 9 >.

表 4-9 防衛稅의 國家財政上 位置와 比重 推移 (1973~1979)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79/73	79/75
1. 國民總生產 (A) (10億圓)	5,199	7,279	9,644	13,051	16,652	22,255	29,553	568%	306.4%
2. 總租稅負擔 (B) (百萬圓)	652,626	1,021,659	1,549,769	2,313,313	2,959,257	4,095,513	5,221,808	800	336.9
1) 國稅 (C) (百萬圓)	521,492	844,673	1,255,479	1,914,747	2,402,682	3,372,262	4,401,708	844	350.6
(1) 內國稅 (D) (百萬圓)	439,121	717,976	1,012,291	1,370,532	1,675,180	2,252,546	3,037,510	692	300.0
(2) 關稅 (百萬圓)	82,371	126,697	181,004	275,512	385,870	646,425	732,294	889	404.6
(3) 防衛稅 (E) (百萬圓)	—	—	62,184	268,703	341,632	473,291	631,904	—	1,016
2) 專賣入金 (百萬圓)	57,000	69,000	135,500	178,000	220,000	280,000	360,000	632	265.7
3) 地方稅 (F) (百萬圓)	74,135	107,986	158,790	220,566	336,575	443,251	460,100	621	289.8
3. 內國稅負擔率 (C/A)(%)	8.5	9.9	10.5	10.5	10.1	10.1	10.3	—	—
(E/F)	—	—	39.2	121.8	101.5	106.8	137.3	—	—
4. 防衛稅比重 (E/C)	—	—	0.64	2.06	2.05	2.12	2.14	—	—
(%) (E/B)	—	—	4.0	11.6	11.5	11.6	12.1	—	—
5. 地方稅負擔率 (F/B)(%)	11.4	10.6	10.2	9.5	11.4	10.8	8.8	—	—
(F/A)	1.4	1.5	1.6	1.7	2.0	2.0	1.6	—	—
6. 總租稅負擔率 (B/A)(%)	12.6	14.0	16.1	17.7	17.8	18.4	17.7	—	—

資料：國稅廳，「국세통계연보」，1980，p. 19.

圖 4-1 防衛稅 新設當時의 國稅體系



2) 防衛稅의 稅制上 特徵

가) 防衛稅는 民族의 平和와 安全의 영구적 確保를 위한 防衛誠金의 性格을 지님으로써 稅制上 특수한 意義를 가진다.

나) 國土防衛는 全國民의 總和와 團結을 요하는 汎國民的 참여가 요청되므로 國防費 自立化의 隊列에 모든 國民을 참여시킨다는 趣旨로서 國民皆稅原則에 입각한 租稅이다,

다) 稅負擔面에 差等稅率을 적용함으로써 租稅應能原則이 擴大適用될 수 있도록 高所得 및 奢侈性 消費行爲에 重課하고 있다.

라) 租稅抵抗의 완화와 稅收의 안정적 迅速 確保를 위하여 防衛稅를 國稅로 하고(防衛稅法 第 14 條), 國防上 必要에만 充당할 수 있는 時限的 目的稅이다.

마) 防衛稅는 國稅基本法 및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國稅이다(防衛稅法 第 14 條).

3) 稅法上 防衛稅의 概要(課標, 稅率 및 納稅義務者)

現行稅法上 防衛稅의 各 課標別 稅率 및 納稅義務者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다(防衛稅法 第 2 條① 및 第 4 條①)(1980. 1. 1 現在).

① 輸入物品의 價格(關稅法 第 9 條①, ② 項 適用)→2.5 %→關稅法 規定에 의한 關稅納稅義務者

② 所得稅法 規定에 의한 所得稅의 算出稅額에서 同法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한 所得稅額→ $\left\{ \begin{array}{l} \text{年所得 840 萬 원 이하는 10 \%} \\ \text{年所得 840 萬 원 이상은 20 \%} \end{array} \right\}$ →所得稅法 規定에 의한 所得稅 納稅義務者

③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 算出稅額→20 %, 단,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이 5 億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 %→法人稅法 規定에 의한 法人稅納稅義務者

④ 相續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相續稅額과 贈與稅額→20 %→相續稅法 規定에 의한 相續稅 또는 贈與稅의 納付義務者

⑤ 特別消費稅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特別消費稅額→20 %→特別消費稅法 規定에 의한 特別消費稅의 納稅義務者.

⑥ 酒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酒稅額→10 % 단, 酒稅의 稅率이 100 % 이상의 酒類는 20 %→酒稅法에 의한 酒稅 納稅義務者

⑦ 電話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電話稅額→10 %→電話稅納稅義務者

⑧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均等割住民稅額→10 %, 단, 人口 50 萬 이상 都市는 25 %→均等割住民稅 納稅義務者

⑨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財産稅額→20 %→財産稅 納稅義務者

⑩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自動車稅額→30 %→自動車稅 納稅義務者

⑪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登錄稅額→20 %→登錄稅 納稅義務者

⑫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馬券稅額→20 %→馬券稅 納稅義務者

이상 現行法上 防衛稅 課稅에 비추어 農民이 부담하는 부분은,

① 相續稅法 規定에 의한 相續稅와 贈與稅를 납부하는 경우(20 %)와,

②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均等割 住民稅 納付의 경우(10 %),

③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財産稅 納付의 경우(20 %),

④ 地方稅法 規定에 의한 登錄稅納付의 경우(20 %) 및,

⑤ 特別消費稅法에 의한 油類 등에 관한, 特別消費稅 納付의 경우 등인 바 그중에서도 住民稅와 財産稅 納付의 경우가 가장 代表的이다.

2. 取得稅와 登錄稅

가. 取得稅

1) 取得稅의 本質과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

가) 取得稅는 財産權의 移動을 契機로 하여 나타나는 擔稅能力을 捕捉, 과세하는 流通稅의 性格과, 財産權의 取得行爲者에게 부과하는 行爲稅의 性格을 지닌다.

나) 取得稅는 登錄稅 免許稅 등과 함께 地方稅 중의 道稅(그중 普通稅)에 속하며, 稅額規模는 徵收額 基準으로 1979년에 全國總額 135,036.9 百萬元(1,714,000 件, 1,448,900 名)으로서 地方財政에의 寄與度는, 地方稅 收額(599,199 百萬元) 對比 22.5 % 수준인바, 이는 1975년 對比 22.3 % (金額基準)伸長에, 地方稅收寄與度는 3.9 %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이를 다시 農地稅 規模와 비교하면 1975년에 약 2배, 1979년에는 약 2.5배의 水準이다 <表 4-10>.

2) 取得稅의 稅法上 概要

가) 取得稅의 課稅客體와 納稅義務者

(1) 取得稅의 課稅對象은 不動產, 車輛, 重機 및 立木 등에 대한 所有權의 取得行爲인바, 그중에서 農民의 負擔과 有關한 것은 (가) 不動產 중의 土地 중 田畠, 果樹園, 牧場用地, 林野 등과, (나) 立木(地上의 果樹와 林木 및 竹林) 등이며, 그밖에 土地의 地目變更으로 그 價額이 증가한 경우도 取得行爲로 간주된다.

(2) 取得稅의 納稅義務者는 (가) 不動產, 車輛, 重機 또는 立木을 取得한 者와, (나) 土地의 地目을 변경하거나 車輛, 重機, 船舶의 種類를 변경한 者 등인 바(地方稅法 第105條), 이때 「取得」의 意義는 1次的으로 賣

表 4 - 10 取得稅의 地方稅收 中 比重

		1975	1976	1977	1978	1979	79 / 75
取 得 稅	賦課額	百萬元 44,688.4	61,989.3	79,075.7	120,336.2	140,207.7	313.7 %
	徵收額(A)	41,820.0	58,399.1	75,462.8	114,554.9	135,036.9	322.9 %
	徵收率	% 93.5	92.6	95.4	95.2	96.3	+ 2.8 포인트 %
		百萬元					
農 地 稅	賦課額	21,024.9	31,785.4	36,095.9	44,529.3	53,911.5	—
	徵收額(B)	20,840.9	31,636.9	35,945.4	44,317.5	53,644.0	257.4 %
	徵收率	% 99.1	99.5	99.6	99.5	99.5	+ 0.4 포인트 %
		百萬元					
地方稅收計	徵課額	169,042.0	233,731.2	349,447.7	460,341.4	653,641.1	—
	徵收額(C)	158,789.7	220,566.3	336,574.6	443,251.4	599,198.7	377.4 %
	徵收率	% 93.9	94.4	96.3	96.3	91.6	△2.3 포인트 %
		%					
比 重	A / C	26.3	26.5	22.4	25.8	22.5	—
		%					
(徵收額)	A / B	200.6	184.6	209.9	258.5	251.7	—

資料 :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80.

買, 交換, 贈與, 寄附,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 建築(新, 增, 改築 등) 共有水面埋立, 干拓에 의한 土地造成 등 原始取得, 承繼取得, 有償 및 無償取得 등을 불문한 일체의 取得이며, 法規에 의한 登記, 登錄의 有無에 불문하고 사실상의 取得을 取得으로 본다.

나) 取得稅의 課標와 稅率

(1) 取得稅의 課稅標準 : 取得當時의 價額을 신고한 경우는 申告價額을 課稅標準額으로 하며, 年賦取得時는 年賦金을 課標로 한다. 만일 申告가 없거나 申告額이 부적당할 때는 예외가 있는데 그중 農民과 有關部分만 지적하면,

(가) 土地 및 建物の 경우 매년 1월 1일 현재 內務長官이 결정, 고시하는 課稅時價標準額⁴⁰⁾(土地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表 4-4〉(地方稅法 第 111 條),

(나) 土地의 地目變更의 경우는 土地의 地目이 事實上으로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前後의 課稅時價를 基準으로 결정한 課稅時價標準額이다.

(2) 取得稅의 稅率 : (가) 一般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frac{20}{1,000}$, (나) 奢侈性財産은 그 價額의 $\frac{150}{1,000}$, (다) 大都市內 新設工場은 그 價額의 $\frac{100}{1,000}$ 등인바, 農民은 주로 (가)의 稅率適用을 받는다 (地方稅法 第 112 條).

다) 取得稅의 課徵과 非課稅 및 減免

(1) 取得稅의 納稅地는 取得物件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이며, 納期는 申告納의 경우 取得日로부터 20일 이내이고 普通徵收의 경우는, 위의 20일 이내 自進申告納을 불이행하였을 때 課稅權者(市道)가 納付告知書를 발급하는데, 告知書는 納期開始 5일 전까지 발부하고 納期는 15일이다

(2) 取得稅는 取得物件의 價額이 30萬원 이하일 때 면세하며(法 第113條),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資力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해 道議會의 決議로 감면할 수 있다(法 第 123 條).

(3) 取得稅는 國, 道, 市, 郡, 地方自治團體組合 등과 外國政府의 取得 등(法 第 106 條) 여러 非課稅 關聯條項의 適用을 받으나, 農民과 有關事項만을 요약하면, (가)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107條), (나) 土地改革法

의 施行으로 인한 取得에 대한 非課稅(法 第 108 條), (다) 土地改良事業에 따른 換地 등의 取得에 대한 非課稅(第 109 條), (라) 相續으로 인한 取得, (마) 기타 ① 지붕 改良을 위하여 草家建物을 기와집 등으로 변경키 위한 改築, ② 公有水面埋立으로 인한 農地의 取得(2 年內 他用途 使用 불가) 등의 경우에도 非課稅된다.

나. 登 録 稅

1) 登錄稅의 本質과 租稅體系 및 地方財政上 位置

가) 登錄稅는 權利의 創設, 移轉, 變更, 消滅 등에 관하여 法律上의 일정한 資格에 관한 事項을 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課하는 租稅로서 國稅인 印紙稅와 더불어 流通去來에 수반하는 擔稅力을 간접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流通稅의 性格의 租稅이다.

나) 1977 년도부터 地方稅法에 의거 賦課徵收되고 있는 登錄稅는 地方稅 중 道稅에 속하는 直接稅로서, 農民의 경우는 주로 田畠, 林野 및 家屋 등의 權利變化에 수반하여 부담케 된다.

다) 登錄稅의 年間 全國總規模는 92,449.9 百萬元으로서 地方稅 중 占有率은 15.4 % 수준이나(1979), 創設 1 차 年度인 1977 년에 비하면 139 % 증가하였다(表 4 - 11). 같은 道稅인 取得稅와 대비하면 登錄稅는 1977 년에 取得稅額의 88.4 %에서 1979 년에는 68.5 %로 감소하였고, 農地稅와 비교하면 1977 년에 186 %에서 1979 년에는 172 %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郡地域의 登錄稅規模는 1979 년에 8,262.8 百萬元으로서 그중 不動產 登記에 의한 登錄稅가 7,107.8 百萬元으로 86.2 %에 달하였는데, 이는 1977 年의 96.2 %(6,278.4 百萬元 중 5,039.8 百萬元)에 비하여 각각 31.6 %, 17.7 %씩의 增加이다.

2) 登錄稅의 稅法上 概要

가) 登錄稅의 課稅客體는 私的 去來上의 證據能力(第 3 者 對抗能力), 기타 일정한 效果를 가지고 法律關係의 안전을 확보코자 不動產 등을 등기하거나 無體財産權을 등록하는 事實(行爲)이며,

나) 그 納稅義務者는 財産權 등의 公簿上 登記, 登錄을 받은 자이다

表 4-11 登録稅의 地方稅收中 比重*

	1977	1978	1979	79 / 77
	百萬元			
地方稅收計(A)	336,574.6	443,251.4	599,198.7	178 %
登 錄 稅 (B)	66,732.7 百萬	91,764.3	92,449.9	139 %
取 得 稅 (C)	75,462.8 百萬	114,554.9	135,036.9	179 %
農 地 稅 (D)	35,945.4 百萬	44,317.5	53,644.0	149 %
B / A	19.8 %	20.7	15.4	—
B / C	88.4 %	80.1	68.5	—
B / D	185.6 %	207.1	172.3	—

* 徵收額基準

資料 : 內務部, 「지방세정연감」, 1978. 1980.

다) 登録稅의 課稅標準은, 不動產과 船舶은 登記 申請人의 申請價額이고,

라) 登録稅의 稅率은 (1) 不動產의 경우, ㉠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은 農地가 不動產價額의 $\frac{3}{1,000}$, 其他는 不動產價額의 $\frac{8}{1,000}$ 이며, ㉡ 相續 이외의 無償所有權 取得은 不動產價額의 $\frac{15}{1,000}$ 이다. ㉢, ㉣와 ㉤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은 農地는 不動產價額의 $\frac{10}{1,000}$, 기타는 $\frac{30}{1,000}$ 이다.

마) 登録稅의 減免은, 農民이 負擔하는 登録稅 중 면제되는 경우는 (1) 農地改良事業에 의한 登記, (2) 農村近代化 促進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인하여 취득한 農地 및 農家住宅의 登記, (3) 農地擴大開發 促進法에 의하여 개간된 農地의 登記 등이다.

3. 所得稅(山林·畜産·讓渡·事業所得稅)와 相續稅 및 贈與稅

農民이 부담하는 典型的인 所得稅 性格의 租稅는 農業所得 내지 農家所得概念의 所得에 대하여 부과되는 農地稅가 있으나, 農民은 農地稅 이외에도 그들이 주로 종사하는 農業 이외에 他事業으로부터 얻는 所得에 대

해서도 稅金을 부담하고 있다. 즉, 앞에서 (第 3 章) 分析 考察한 農地稅 이외에 兼業所得으로서의 山林所得 및 農家副業所得으로서의 範圍를 넘는 畜產所得 등에 부과하는 所得稅(所得稅法 第 4 條, 24 條)와 田畝의 讓渡, 相續 및 贈與 등에 根據를 둔 流通·移轉的 所得稅도 부담하고 있다 (所得稅法 第 23 條, 相續稅法 第 1, 4, 9, 11, 14 條 등). 全國 內國稅徵收 및 賦課面에서 본 이들 稅目의 比重은, 1979 년의 경우 直接稅인 所得稅가 20.3%인데 그중 山林所得稅가 0.005%, 讓渡所得稅가 9.4%이고, 相續稅는 內國稅額의 0.2% 수준이다. <表 4-12>, <表 4-16>.

가. 山林所得稅

山林所得稅는 所得稅法 第 4 條, 및 第 24 條의 規定에 의하여 「造林期間 5 年 이상의 林地의 立木伐採 또는 讓渡 등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부과되는 所得稅(國稅)인바 (所得稅法 第 24 條①), 이를 農民이 부담하는 경우(納稅義務者인 경우)에는 農民의 農業 이외의 事業所

表 4-12 稅目別 內國稅徵收 狀況 (1975, 1979)

	1975		1979		79/75
	徵收額	構成比	徵收額	構成比	
	百萬元	%	百萬元	%	%
內國稅計(A)	1,012,291	100.0	3,037,510	100.0	300
直接稅計(B)	380,096	37.6	1,124,965	37.0	296
所得稅(C)	198,619	19.6	614,679	20.3	309
相續稅(D)	10,796	1.1	6,583	0.2	61
(贈與稅)(d)	(6,562)	(0.7)	(2,340)	0.1	36
間接稅計(E)	568,652	56.2	1,873,439	61.7	329
印紙稅(F)	12,772	1.3	1,789	0.1	14
過年度收入(G)	49,961	4.9	37,317	1.2	75
C/B	52.3%	—	54.6%	—	—
D/B	2.8	—	0.6	—	—
d/D	60.8	—	35.5	—	—

資料 :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1978, 1980.

得 즉 山林業으로부터 발생하는 所得稅이라는 점에서 農民의 兼業所得稅로서의 意味를 지닌다. 山林所得에 대한 稅收總額規模는 1979 년에 9,258 千원 수준으로서 < 表 4-1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課標額 6,000 千원 이상의 納稅者가 없고 課稅人員數도 적어서 財政稅收 寄與率도 낮다. 그러나

表 4-13 山林所得의 所得階層別 算出稅額(1979)

所得階層 (課稅標準額基準)	稅率	課標額	算出稅額	課稅人員
	%	千원	千원	名
600 千원이하	8	3,459	277 (3.0)	14
600 千원초과~1,200 千원	10	3,866	326 (3.5)	3
1,200 ~ 1,800	12	8,921	854 (9.2)	6
1,800 ~ 2,400	15	2,060	219 (2.4)	1
2,400 ~ 3,000	18	7,852	927 (10.0)	2
3,000 ~ 3,600	21	6,613	885 (9.6)	1
3,600 ~ 4,200	24	15,215	2,212 (23.9)	4
4,200 ~ 4,800	27	9,340	1,550 (16.7)	2
4,800 ~ 6,000	30	10,892	2,008 (21.7)	2
6,000 ~ 8,400	35	—	—	—
8,400 ~ 10,800	40	—	—	—
合 計		68,218	9,258(100.0)	35

()內는 構成比.

資料 : 國세청, 「國세통계연보」, 1980.

우리 나라 木材需給上의 不均衡性 내지 높은 輸入依存度 등을 감안할 때 國內供給能力 向上을 도모하는 趣旨에서 山林所得에 대한 적극적인 減免稅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山林所得稅의 課稅所得金額은 「當該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金額, 거기에서 다시 山林所得特別控除(현행 50 萬원)

를 한 金額이며, (所得稅法 第 24 條 ②) 이때 必要經費는 居住者의 山林의 取得에 필요한 費用과 植木費, 管理費, 伐採費, 기타 山林의 育成 또는 立木의 讓渡에 소요된 費用의 合計額이다 (所得稅法 第 46 條 ① 및 同施行令 60 條의 ①의 3).

表 4-14 綜合所得稅率*

所得課稅標準	稅 率
120 萬원 이하	課稅標準의 100 分の 6 72,000 원 + 120 萬
120 萬원 초과 } 180 萬원 이하 }	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8
180 萬원 초과 } 240 萬원 이하 }	120,000 원 + 18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10
240 萬원 초과 } 300 萬원 이하 }	180,000 원 + 24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12
300 萬원 초과 } 360 萬원 이하 }	252,000 원 + 30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15
360 萬원 초과 } 450 萬원 이하 }	342,000 원 + 36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18
450 萬원 초과 } 540 萬원 이하 }	504,000 원 + 45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21
540 萬원 초과 } 690 萬원 이하 }	693,000 원 + 54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24
690 萬원 초과 } 840 萬원 이하 }	1,053,000 원 + 69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28
840 萬원 초과 } 1,080 萬원 이하 }	1,473,000 원 + 84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의 100 分の 32
⋮	⋮
6,000 萬원 초과	26,625,000 원 + 6,000 萬원을 초과하는 金額 의 100 分の 62

* 山林所得包含

山林所得稅의 算出은 위의 課稅所得金額에서 法定所得 控除을⁴⁴⁾하고, (表 4-14)의 綜合所得稅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다(所得稅法 第 70 條 ①).

나.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税金

農家副業所得이란 「農漁民이 副業으로 영위하는 畜産, 養漁, 農工品 기타의 所得」을 말하는바, 이 副業所得의 合計額이 186 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所得稅를 納付한다(所得稅法 第 5 條 및 同法施行令 第 6 條의 2). 이때 「…副業所得의 合計額 186 萬원」上限線은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및 山林所得 등과 同一水準의 基礎控除을 인정함이며, 그 稅率도 綜合所得稅 등의 稅率에 준하는 바, 이는 곧 農地稅 이외의 農民의 兼業所得에 부과하는 税金은 모두 原則上 綜合所得稅와 유사한 負擔임을 시사한다. 단, 畜産業의 경우는 일정 所得水準을 초과하는 범위(所得稅法 施行令 第 6 條 2. 但書에 定하는 範圍: 別表 3)에 限하여서만 所得稅를 부과하며, 그 範圍에서도 租稅減免規制法상의 關聯條項에 의한 減免對象 이외의 것에 한하여 所得稅가 부과된다. 이때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家副業의인 畜産의 範圍는〈表 4-15〉와 같다.

한편, 이 所得稅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農家副業의인 畜産은 후술하는 附加價值稅法上에서도 「獨立된 事業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서 非課稅對象이며, (附加價值稅法 施行規則 第 1 條 第 2 項), 地方稅法 第 245 條 第 6 號 同施行令 第 209 條 第 1 號에 정한 事業所稅도(畜産業者는)非課稅對象이다

다. 田畝 등의 收益所得稅

1) 讓渡所得稅의 租稅體系上 位置와 財政稅收 寄與度

讓渡所得稅는 所得稅法上 規定의 適用을 받는 國稅로서(直接稅) 國家財政에의 寄與度는 1979 년의 경우, 國稅總收入額 4,401,708 百萬元 중 19,542 百萬元으로 0.44 %이며 內國稅總額(3,307,510 百萬元)對比는 0.64 %, 所得稅 總額(賦課額 基準) 543,672 百萬元 對比는 3.6 % 수준으로서 1976 년의 3.5 %와 비슷한 水準이다〈表 4-16〉.

表 4-15 農家副業의인 畜産의 範圍¹⁾

家畜別	規 模 ²⁾		備 考
	舊	新(改正) ³⁾	
젖 소	7 마리	10 마리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育成牛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소	10 "	20 "	"
돼 지	50 "	100 "	成畜을 基準으로 한다.
산 양	100 "	改正前과 同一	"
면 양	100 "	改正과 同一	"
토 끼	1,000 "	"	"
닭	1,000 "	"	"
오 리	1,000 "	"	"

註 : 1) 所得稅法施行令 第 6 條 2 의 但書에 定한 「別表 3」에서 引用

2) 사육 두수는 每月末 現況에 의한 平均頭數에 의한다(所得稅法施行規則 2 의 2).

3) 1979. 12. 31 改正.

表 4-16 所得種類別 所得稅 賦課額規模*(1975~1979)

	1975	1976	1977	1978	1979	79/76
綜合所得(A)	—	291,028	354,331	444,382	百萬元 524,108	180.1%
退職所得(B)	—	1,180	14	13	12	1.0%
讓渡所得(C)	—	10,577	11,047	18,416	19,543	184.8%
山林所得(D)	—	5	2	8	9	180.0%
合 計 (E)		302,790	365,375	462,819	543,672	179.6%
C/E		5.7 %	4.2 %	8.0 %	9.4 %	-
A/E		94.2	95.7	92.0	90.6	-
D/E		0.007	0.002	0.04	0.005	-

* 서울, 中部, 大田, 光州, 大邱, 釜山 地方國稅廳計.

資料 : 國稅廳, 「국세통계연감」, 1976 ~ 1980.

課稅對象物別로 본 讓渡所得稅는 1979 년의 경우 總徵收額 20,647.3百萬元 중 土地分이 19,106.9 百萬元으로서 92.5 %를 占하였으며, 課稅人員은 8,990 명으로 全體의 87 %를 차지하였다 < 表 4 - 17 >.

表 4 - 17 讓渡所得稅 對象別 算出稅額(1979)

	課 標 額	稅 率	算 出 稅 額	人 員
	千 원	%	千 원	名
土 地 (A)	38,214,305	50	19,106,897	8,990
建物・其他(B)	5,134,697	30	1,540,409	1,339
計 (C)	43,349,002	-	20,647,306	10,329
A / C	88.2 %	-	92.5 %	87.0 %

資料 :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1980.

2) 農民과 讓渡所得稅

讓渡所得稅는 綜合所得, 山林所得 등과 더불어 所得稅法上 課稅所得의 範圍에 속하며, 이때 讓渡所得이란 「資產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所得稅法 第 4 條 ①의 3), 農民의 立場에서는 주로 田畝 등 農地와 住宅의 讓渡에 따른 所得에 對하여 부과된다. 農民의 林野 등의 讓渡에 의한 所得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山林所得稅를 賦課하기 때문에 田畝 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稅와는 區分된다.

3) 讓渡所得稅의 稅法上 概要

가) 課稅對象

① 土地와 建物の 讓渡, ② 不動産에 대한 權利的 讓渡(㉞ 地上權、專賃權, 등기된 賃借權의 讓渡, ㉟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權利的 讓渡 등) ③ 기타 資產의 讓渡(㉞ 特定株式의 讓渡 ㉟ 店鋪賃借權利金의 讓渡 ㊱ 營業權의 讓渡) 등이다.

나) 讓渡價格과 讓渡所得金額

資產의 讓渡價格(田畝 등의 賣買價格)은 실제 去來價格에 의하되, 그것이 불분명한 때는 그 資產讓渡 당시의 時價標準額에 준하고 讓渡

所得金額은 讓渡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한 讓渡價格(총수입 금액)에서 取得價格을 공제한 후(讓渡差益) 讓渡所得特別控除(物價上昇率控除)⁴³⁾〈表 4-18〉와 讓渡所得控除(90 萬원)를 하여 산출한다.

表 4-18 讓渡所得 特別控除稅率 推移

單位：%

年 度	都 賣 物 價 上 昇 率	特 別 控 除 稅 率
1968	8.1	8.1
1969	6.8	6.8
1970	9.2	9.2
1971	8.6	8.6
1972	14.0	10.0
1973	6.9	6.9
1974	42.1	10.0
1975	26.5	10.0
1976	11.2	10.0
1977	9.0	9.0
1978	11.7	10.0
1979	18.8	10.0
1980	39.9	10.0

다) 讓渡所得稅의 稅率

原則上 法定稅率의 適用을 받으나 1980. 12. 13~1981. 9. 30 까지는 彈力稅率(實行稅率)을 併行適用토록 되어 있다〈表 4-19〉(1980. 12. 13 改正).

라) 稅額算出方法

① 「課標額×讓渡所得控除稅率」, 「課標額×綜合所得稅率」의 경우는 「課標額×綜合所得稅率」을 算出稅額으로 하고 ② 「課標額×讓渡所得控除稅率」, 「課標額×綜合所得稅率」의 경우는 「課標額×實行稅率」을 讓

表 4-19 讓渡所得稅率

單位：%

資 產 區 分		從 前	現 行	
			法 定 稅 率	實 行 稅 率
土地, 建物 不動產에 관 한 權利	2 年以上(일반)	50	40	25
	" (庶民住宅)	50	30	15
	2 年未滿	70	50	35
	未登記	80	75	75
其 他 資 產		50	40	25

* 서민주택은 전평이 25.7 평 대지는 건물평수의 2 배이내인 51.4 평 이
내를 말함.

*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세율
인 40 %가 적용되는 것임.

* 2 년이내의 단기매매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음.

渡所得稅의 算出稅額으로 한다.

마)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讓渡所得稅非課稅對象 중 農民과 관련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換地處分 됨으
로써 地籍, 地番 등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所得, ② 8 년 이상
自耕한 農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
는 所得, ③土地收用法 및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世帶 1 住宅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安着된 面積이 10 배를 넘지 아니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
하는 所得 등(所得稅法 第5條 6의 가, 나, 다, 라, 마, 바).

但, ②의 8 년 이상 自耕事實與否는 稅務署長이 직접 확인조사한다⁴⁹⁾
(1981. 1. 1 改正).

4) 農民의 讓渡所得稅負擔에 관한 問題點

가) 讓渡所得稅 設置의 주요 目的이, 不動產의 경우는 不動產 投機

行爲를 規制하는 데도 있으므로, 農民이 직접 소유하여 경작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지나친 規制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都市大資本, 非農民의 不在地主 등이 소유하는 農地는 土地投機의 可能性을 지니므로 高率의 讓渡所得稅 부과를 통하여 강력한 投機規制效果를 기할 수 있으나, 自耕農民의 農地讓渡에 까지 높은 課稅를 하면 本意 아니게 農民의 不衡平의 過負擔을 초래할 뿐 아니라 農地의 流動性을 硬化化시킴으로써 農地의 거래활동을 둔화시키고 營農規模의 擴大 및 機械化推進의 障礙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나) 그러한 理由에서 農地의 讓渡에 관한 非課稅條件으로서의 「...8년 이상의 계속적 自耕...」 限定은 오늘날 農村社會 및 土地經濟의 與件에 비추어 너무 長期束縛이란 감이 있다.

라. 田畝 등의 相續稅 및 贈與稅

1) 相續稅와 贈與稅도 租稅體系上 內國稅로서, 國家財政上 稅收寄與度는 1979년의 경우, 內國稅의 0.2%, 內國稅 중 直接稅額 대비 0.6% 수준이며, 相續稅와 贈與稅의 合計額 중 贈與稅의 比重은 1975년의 61%에서 1979년에는 36% 수준이다. 相續稅의 絶對額規模는 1979/75년 比가 61%로 줄었고 直接稅 중 相續稅의 比重은 1975년의 2.8%에서 1979년에는 0.6%로 격감되었다(表 4-12).

2) 現行稅法上 相續稅의 概要

가) 課稅對象 : ①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때는 相續財産의 전부에 대하여 相續稅를 부과하며, ②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않은 때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産에 한해서만 相續稅를 부과한다(相續稅法 第2條).

이때, 相續財産 속에는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하며, 動産, 不動産, 鑛業權, 預金, 社債, 株式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農民과 주로 관계 있는 것은 農地와 林野 등에 관한 相續稅 부과이다.

나) 相續稅의 課稅價額 : 相續稅를 부과 할 相續財産價額에 相續개시전 전 3년 이내에 被相續人에게 증여한 財産의 價額과 상속개시전 1년 이

내에 被相續人이 상속인 이외의 者에게 증여한 재산의 價額을 가산한 金額에서 다음 각 號의 金額을 공제한 金額을 相續稅課稅價額으로 한다 (第 2 條 第 ① 項의 規定에 該當하는 경우). 즉, ① 公課金 ② 被相續人의 葬禮費用 ③ 債務(상속 개시전 3 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상속인에게 진 贈與債務과 1 年 이내에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을 제외함).

다) 相續稅의 基礎控除와 相續財産控除 : ①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800 萬원을 기초공제한다(相續稅法 第 5 條). 단, 相續開始 당시(國內居住者의 경우) 被相續人의 配偶者, 同居家族, 相續人 中 未成年者, 60 才(여자는 55 세)이상 老令者, 不具廢疾者가 있을 때는 課稅價額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相續財産控除: 第 11 條). 즉 ① 배우자 1,600 萬원 ② 未成年者는 24 萬원 $\times$ 20 세에 달하기 까지의 年數 ③ 年老者는 100 萬원 ④ 不具廢疾者는 180 萬원 등이다.

한편, 위의 相續財産價額 속에 農地稅課稅 對象이 되는 農地(非課稅, 免稅, 小額不徵收의 경우도 포함)의 價額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農地相續控除額(「120 萬원 + 120 萬원 $\times$ 相續人¹⁵⁾이 21 세가 되는 해부터 상속이 開始되는 해까지 農耕에 종사한 年數」의 金額)을 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이때 “農耕에 종사한 年數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農地相續 控除額이 相續財産인 農地의 價額을 초과 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相續稅法 第 11 條의 2, ① ③, ④ 및 同施行令 第 8 條의 2).

라) 相續稅의 納稅義務者 : 相續者 또는 受遺者는 自己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의 占有比率에 따라 相續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바, 이때 상속인의 持分率은 다음과 같다(表 4-20)(相續稅法 第 18 條 및 民法 第 1009 條의 ①).

마) 相續稅의 非課稅 : 상속세는 課稅價額에서 上記 基礎控除 등을 한 나머지가 20 萬원 미만일 때는 非課稅 對象이다(法 第 12 條).

바) 相續稅의 稅率 : 相續稅는 課稅價額에서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다음의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다(表 4-21).

사) 農民의 贈與稅負擔 : ① 農民의 경우도 他人의 贈與(증여자의 死亡에 의한 증여는 제외 : 相續稅課稅對象임)에 의하여 田, 畓, 林野 등

表 4-20 現行法定 相續分 및 計算例*

相續人別	法定相續分	持分率	相續額
妻	1.5 (0.5)	$\frac{6}{21}(\frac{2}{15})$	$1,000 \times \frac{6}{21} = 286 \text{ 千원}$
長男(戶主相續)	1.5 (1.5)	$\frac{6}{21}(\frac{6}{15})$	$1,000 \times \frac{6}{21} = 286 \text{ "}$
次男	1.0 (1.0)	$\frac{4}{21}(\frac{4}{15})$	$1,000 \times \frac{4}{21} = 190 \text{ "}$
長女(出嫁)	0.25 (0.25)	$\frac{1}{21}(\frac{1}{15})$	$1,000 \times \frac{1}{21} = 48 \text{ "}$
次女	1.0 (0.5)	$\frac{4}{21}(\frac{2}{15})$	$1,000 \times \frac{4}{21} = 190 \text{ "}$
計	5.25 (3.75)	$\frac{21}{21}(\frac{15}{15})$	合計 1,000 萬원

* 相續人은 妻, 長男, 次男, 長女, 次女 등 5 人인 경우, (1979. 12. 月 改定). () 內數値는 改正前의 것.

表 4-21 相續稅의 稅率

課 標 額*	稅率(%)	累進控除額(원)
100 萬원 以上	7	
300 "	10	30,000
500 "	13	120,000
700 "	17	320,000
1,000 "	21	600,000
1,300 "	25	1,000,000
1,900 "	29	1,520,000
2,500 "	33	2,280,000
3,500 "	37	3,280,000
5,000 "	42	5,030,000
7,000 "	47	7,530,000
1 億원 以下	52	11,030,000
3 "	57	16,030,000
5 "	62	31,030,000
5 億원 超過	67	56,030,000

* 課稅價額-(基礎控除+相續財産控除+...農地相續控除)

을 증여받은 때에 贈與稅를 부담한다(相續稅法 第 29 條의 2). ② 贈與稅의 課稅價額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29 條의 4). ③ 배우자나 直系尊卑屬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50萬원, 親族으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00 萬원의 공제를 받아(第 31 條의 ①), ④ 다음 稅率에 의한 稅金을 부담한다(第 31 條의 ②), 〈表 4-22〉.

3) 農地相續稅 賦課의 再考點

가) 原則上 財産의 相續은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일 때, 그 相續分은 均分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때는 相續分은 그 고유의 相續分의 5 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民法 第 1009 條) 農地相續의 경우도 대체로 長男優位(=妻)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表 4-22 贈與稅의 稅率

課 標 額	稅 率 (%)	累 進 控 除 額 (원)
50 萬원 이하	7	
100 "	11	20,000
300 "	15	60,000
500 "	19	180,000
700 "	23	380,000
1,000 "	27	660,000
1,300 "	32	1,160,000
1,900 "	37	1,810,000
2,500 "	42	2,760,000
3,500 "	47	4,010,000
5,000 "	52	5,760,000
1 億원 이하	57	8,260,000
2 "	62	13,260,000
2 億원 초과	67	23,260,000

나) 그러나 상속세법이 확립되던 1950년대 당시와는 달리 社會, 經濟的 諸條件이 바뀌어 오는 동안⁴⁶⁾ 農家の 長男 都市進出傾向이 짙어짐에 따라 호주 상속인예의 農地相續優待條項은 그 意味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營農後繼者예의 優待相續 내지 相續稅 減免 借置 등이 바람직하다.

다) 現行法上, 數人의 상속인이 農地를 상속할 경우 원칙상 均分相續을 하고 相續開始 당시 직접 그 農地의 耕作에 종사한 상속인에게는 農地相續控除惠澤을 인정하고 있는 바, (民法 第 1009 條, 相續稅法 第 11條의 2 및 同法施行令 第 8 條의 2) 이에 따라 農地의 소유규모는 지나치게 細分化되어 營農機械化 저해요인 등 農地制度上的 問題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 라) 相續農地의 相續人間 賣買行爲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讓渡所得稅, 取得稅 및 登錄稅 등을 相續人間 農地賣買(非農業從事者→農業從事者)를 통한 農地再統合(所有規模의 擴大)을 저해한다.

4. 附加價值稅와 特別消費稅

가. 附加價值稅

1) 附加價值稅制 導入의 趣旨

附加價值稅制은 「1974 年 綜合所得稅制을 採擇, 直接稅制을 近代化한 것에 때를 맞추어 間接稅制을 개편함으로써 企業의 대형화와 國際化趨勢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1次的 目的과 趣旨가 있다」⁴⁷⁾.

1976 年 12 月 22 日 法律 第 2934 號로 제정, 공포하여 동년 7 月 1 日 부터 시행된 이 制度는 1977 年 7 月 1 日 이전의 營業稅, 物品稅, 織物類稅, 石油類稅, 電氣가스稅, 通行稅, 入場稅, 遊興飲食稅 등을 통합, 정리하여 稅率의 單一化, 納稅節次의 간소화 등으로서 間接稅制을 확립, 발전시켰으며, 그밖에 수출품예의 免稅로 수출촉진, 投資材輸入品 免稅로 투자촉진 등의 效果를 기하려 한 것이다.

2) 附加價值稅의 租稅體系上 位置와 特性

가) 부가가치세는 財貨 또는 用役의 공급과 財貨의 수입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間接稅로서 조세체계상 內國稅에 속하는 租稅이다.

나)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모든 去來段階에서 課稅하는 多段階 去來稅의 성격을 지닌다.

다) 모든 거래 단계에서 거래되지만 거래 단계마다의 賣出金額에 대한 課稅가 아니고, 企業이 가산하는 附加價值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한번 과세된 금액은 다시 과세되지 않음으로써 租稅의 累積效果가 없는 單一段階 賣上稅와 同一效果를 가진다.

3) 附加價值稅의 財政稅收 寄與度

부가가치세는 1979 년에 총규모 1,088,675 百萬元으로서 國家總收入(5,507,334 百萬元)의 19.8 %, 內國稅總額(3,037,510 百萬元)의 35.8 %를 점하였는바, 1977 년 創設 當年 實績(後半期) 241,573 百萬元 比 451 %의 伸長率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년 間接稅規模 대비 58.1 %의 높은 比率이며, 1977 년의 23.5 % 수준에 比하여 배 이상 증가하였다 < 表 4 - 23 >.

4) 附加價值稅의 稅制上 概要

가) 課稅對象은 ①財産 또는 用役의 供給 ②財貨의 輸入 등인바, (附加價值稅法 第1條①項), 이때 財貨의 범위는 商品, 製品, 原料, 機械, 建物과 기타 모든 有形的 物件을 포함하며(同施行規則 第1條①,) 用役의 범위는 建設業, 飲食 및 宿泊業, 運輸, 倉庫, 通信, 金融, 保險, 不動產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등으로 되어 있다(同施行規則 第1條②). 따라서 農民도 農業生産資財(肥料, 農藥, 農機械, 飼料 등)등의 購入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의 減免條項에는 「1. 가공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産物, 畜産物, 水産物과 林産物 포함)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食用에 공하지 아니하는 農林畜水産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2. 土地, …」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하였고(租稅減免規制法 第12條①), 「…所得稅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農家副業所得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附加價值稅法 施行令 第1條의 2), 대부분

表 4 - 23 附加價值稅의 國家稅收寄與率

稅 額 ¹⁾	1977	1978	1979	79/77
國家稅收總額(A)	百萬元 2,990,844	4,040,546	5,507,334	184.1 %
內國稅額計 ¹⁾ (B)	百萬元 1,675,180	2,252,546	3,037,510	181.4 %
直接稅(C)	百萬元 606,710	842,036	1,124,965	185.4 %
所得稅(D)	百萬元 352,715	467,579	614,679	174.3 %
間接稅(E)	百萬元 1,028,015	1,382,837	1,873,439	182.2 %
附加價值稅 ²⁾ (F)	百萬元 241,573	838,907	1,088,675	450.7 %
F / A	8.1 %	20.8	19.8	—
F / B	14.4 %	37.2	35.8	—
F / E	23.5 %	60.7	58.1	—
F / D	68.5 %	179.3	177.1	—

註 1) 決算額基準.

2) 1977 年이 創設年度임(77. 7. 1 施行)

資料;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1980.

의 農林畜水産物이 부가가치세의 免稅對象이 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의 納稅義務者는 「營利目的의 有無에 불문하고 사실상 獨立的으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個人 法人 또는 기타 團體 等이며(附加價值稅法 第2條), 農民이 農資財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稅額도 그들이 農民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그러나 農民이 販賣供給하는 農産物에 대해서는 進술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農民은 그 徵收와 納付의 義務는 없고 다만 擔稅義務만 있는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의 課稅期間은 第1期(1.1 ~ 6.30)와 第2期(7.1 ~

12.31)로 되어 있고(法 第 3 條), 課稅標準은 ① 금전으로 그 對價를 받는 경우는 그 對價 ②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는 공급한 財貨와 用役의 時價 동인바(法 第 13 條①), 그 稅率은 원칙상 $\frac{13}{100}$ 이고, 그 稅率에 $\frac{3}{100}$ 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法 第 14 條 ①, ②).

5) 農民의 附加價值稅 負擔의 問題點

앞의 가)와 나)에 비추어 볼 때, 農民이 생산하여 非農民이 구입하는 農林畜 水産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치 않음에 반하여 農民이 일상생활을 營爲키 위하여 구입하는 일반 工產品은 물론, 農林畜水産物을 생산키 위하여 구입하는 農林畜水産資材(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에 관하여는 都農間 또는 農工間 擔稅의 不公平要因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異論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 特別消費稅

1) 特別消費稅 法制定의 趣旨와 主要內容

前記 부가가치세의 채택으로 間接稅體系를 개편하였는바, 이 부가가치세의 單一稅率에서提起되는 租稅負擔의 逆進性을 보완하고 奢侈性物品 등의 消費를 억제 함으로써, 稅制面에서 실질적인 租稅負擔의 衡平을 기하고 부가가치세의 長點을 강화하기 위하여 特別消費稅制를 도입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와 同日附). 그러나 例컨대 농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特別消費稅 賦課의 경우와 같이 農業機械化 등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기 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檢討와 調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特別消費稅法의 主要內容은 ① 消費稅法 中 物品稅法, 織物類稅法, 石油 및 入場稅法 등을 통합하고 課稅對象品目도 29 個 品目으로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補完稅로 설정하였으며, ② 그 稅率은 부가가치세의 單一稅率에 대한 補完의 目的으로 高所得層 消費對象品目에 대하여 重課토록 하였다.

2) 特別消費稅의 租稅體系上 位置와 財政寄與度

特別消費稅는 內國稅 中 間接稅로서 創設翌年인 1978 년에 327021 百萬元 규모로서 內國稅收에의 寄與率은 14.5%였는데 1979 년에는 48%나 増加한 484,627 百萬元으로 內國稅收 寄與率은 16%로 늘어났다. 이것

을 間接稅 總額規模에 비하면 25.9 % (1979), 附加價值稅額과 비교하면 44.5 % 수준이다 (1979) 〈 表 4 - 24 〉.

表 4 - 24 特別消費稅의 內國稅收 寄與率¹⁾

	1977	1978	1979	79 / 78
	百萬元			%
內 國 稅 合 計 (A)	1,675,180	2,256,546	3,037,510	135
間 接 稅 計 (B)	1,028,015	1,382,837	1,873,439	135
特別消費稅 (C) ²⁾	99,865	327,021	484,627	148
附加價值稅 (D) ²⁾	241,573	838,907	1,088,675	130
C / A	6.0 %	14.5 %	16.0 %	-
C / B	9.7	23.6	25.9	-
C / D	41.3	39.0	44.5	-

註 : 1) 決算額基準, 2) 1977 年 7. 1 施行.

資料 : 國稅廳, 「國稅 통계 연보」, 1980.

3) 特別消費稅의 稅法上 概要

가) 特別消費稅의 課稅對象은 특정한 物品과 특정한 場所에의 入場 行爲로서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特別消費稅法 第 1 條의 ①). 이때 特別消費稅를 부과할 品目은 第 1 種이 2 個類 7 개 品目(보석, 진주 등), 第 2 種이 12 개 品目(공기조절기와 냉장기 등), 第 3 種이 6 개 品目(코오피, 설탕 등), 第 4 種이 2 個類 4 개 品目(毛絲, 揮發油, 石油 등)이 있는데 그 중 農民과 관련있는 것은 第 4 種 第 2 類의 휘발유와 輕油 등이며 이에 대한 稅率은 휘발유가 物品價格의 $\frac{160}{100}$, 輕油가 物品價格의 $\frac{10}{100}$ 등이다.

入場行爲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부과할 장소는 경마장, 터키食堂, 投錢 機設置場, 골프장, 카지노 등이며, 輸出 및 軍納의 경우와 駐韓外國軍에 게 납품하는 것, 外國人 專用販賣場 등에 대한 免稅와 기타 조건부 면세 규정⁴⁾등이 있으나, 農民이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農機械用 油類에 대하여는 減免條項이 없다(特別消費稅法 第 18 條의 ① 및 租稅減免規制法 第 11

條의 13號 参照).

5. 農地改良組合會費

가. 小 序

全國 農地改良組合 數는 123 개 組合(1,464 地區)이며 (1979 末), 이들 조합에 會員으로 가입하여 組合費를 부담하는 農家는 788,799 戶(1979 年)(蒙利面積 : 413,763ha)로서 그들이 1 年에 부담하는 總組合費 규모는 39,938.2 百萬원에 達한다. 한편, 農組會員農家は 全體農家(1979 年 2,161,821 戶)의 36.5 %이며, 純農家(1979:1,986,875)의 39.7 %, 專業農家(1,776,060 戶)의 44.4 % 수준이다.

이들 會員農家は 灌溉面積 10a 當, 벼 40 ~ 45 kg(貯水地區 : 1981. 4. 1 現在), 또는 40 ~ 50 kg(揚水地區)씩을 組合費條로 부담하고 있는데,⁵⁰⁾ 이는 耕作面積(畝基準) 1.5ha 의 水稻作 專業農家 기준으로 戶當 벼 11.1 噸 ~ 13.0 噸 / 54 kg 또는 15.0 噸 ~ 20.8 噸 / 54 kg의 부담으로서 同一面積 水稻作 專業農家の 甲類農地稅 부담額(벼 7.7 噸 / 54 kg)에 비하여 1.4 ~ 2.7 배 수준이다(1980 年 벼 平均段收는 413 kg, 쌀로는 289 kg).

이 研究에서는 이같은 農民負擔 農組會費가 農組의 對農民 寄與度나 農組運營上 必要 등에 비추어 適正한가의 與否는 논의로 하고, 다만 農組會費 負擔이 農地稅 등 第 4章에 열거한 諸租稅負擔에 가산됨으로써 農民의 종합적인 租稅公課金 負擔率 增加의 主要因이라는 側面에 만 착안, 고찰한다.

나. 農民・農組의 關係와 農組會費의 法的根拠

農地改良組合은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설립되어 “當該區域內的 農地改良 施設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農事改良事業 등을 遂行함으로써 組合員의 農業生産力 增大에 기여하는” 法人體로서, 組合會員의 資格은 “農村近代化促進法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改良 事業

에 참여할 수 있는 者”이며, 각 組合의 定款上에는 위의 “資格있는 者는 組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加入을 義務化하고 있다.

한편 組合은 그 組合員에게 다음의 等級別 賦課率 범위 내에서 組合의 經費를 부과한다(表 4-25).

表 4-25 農地改良組合會費 賦課¹⁾ 基準

貯水・揚水 地 域 別	地 域 等級別	10a 當 會 費		
		一 般 會 費 (A)	特 別 會 費 (B) ²⁾	A + B
貯 水 地 區	1等地	벼 45 kg 以內	20 kg 以內	65 kg 以內
	2等地	40	14	54
揚 水 地 區 ³⁾	1等地	벼 50 (45)	25	75
	2等地	40 (34)	20	60
農地平均段收 (쌀 10a 當)	—	벼 413 kg (쌀 289kg)	—	—

註 ; 1) 1981. 1. 1 施行, 서울・京畿○○組合의 例.

2) 「特別會費를 負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年度」에 限함.

3) () 內는 1980 年度 會費.

資料 ; 上記 ○○組合의 定款

다. 農民의 組合會費 負擔의 再考項目

1) 물 값

農組의 對農民 第1次的 寄與는 農業用水供給인바, 만일 農組의 對農民 寄與의 50%만이 農用水供給機能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金額으로 換算하면 灌溉面積 1 평당 물값은 약 35 원이며, 벼 1 畝 / 54 kg 生産에는 1,382 원(6.2 升 : 1980 年 政府收買價 기준)의 물 使用料(狀水稅)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는 家庭用 食水 33 ㎡(5 인家族 家口)의 2 개월 使用料(1981. 4. 1 현재 1,250 원)와 비슷한 水準이다.

2) 農組會費 引上率

農地의 平均段收 對 農組會費(物量, 揚水地區)의 비는 8.2% ~ 10.9%(1980 年) 수준이며, 현행 農組會費는 지난해(1980) 對比 11.1% ~ 17.6% 증가된 것인바, 지난 수년 동안 米穀의 平均段收의 계속적인 減

少傾向에도 불구하고 農地改良組合會費는 계속 증가되어 왔다〈表 4-25〉

3) 農組經費

대체로 전체 農組會費의 輕重은 農組事業遂行經費의 多寡에 따라 좌우되는바, 이때 所要經費의 節減을 위해서는 아직도 一部 未備地域의 揚水施設 電動化가 요청되며,⁵¹⁾ 그 過渡段階에서提起되는 在來式 原動機用 石油類에의 特別消費稅 減免도 懸案問題로 남아 있다.

第 5 章

農民이 負擔하는 租稅의 減免

앞의 第 3 章과 第 4 章에서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는데, 農民 租稅負擔의 減免事項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租稅와 減免은 대체로 非課稅, 減稅 및 免稅와 少額不徵收 등의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바,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農民이 負擔하는 각종 租稅의 課徵面의 不合理, 不衡平의 要因이 이들 減免稅 規定에 의하여 어느정도로 완화, 조정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1. 農 地 稅	
1-1. 國 등에 대한 農地稅非課稅	① 國, 道, 市, 郡, 地方自治團體組合이 소유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農地稅를 부과치 않는다. 단, 그 農地를 他人이 경작할 때는 그 耕作者에게 부과한다 (地方稅法 第200條의 ①)
1-2. 開墾年期 免除	① 農地擴大開發促進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未開墾地를 개간하여 農地가 된 경우는 農地가 된 해로부터 10 년 이내 期間 免稅한다 (同 201條 ①)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1-3. 埋立干拓年期免稅	① 公有水面埋立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有水面을 埋立 또는 干拓하여 農地가 된 경우에는 農地가 된 해로부터 10 년 이내 기간 農地稅를 免除할 수 있다 (同 202 條)
1-4. 荒地年期 免除	① 災害로 인하여 地形이 변경되었거나 作土가 손상되어 荒地가 된 土地에 대하여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의거 5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農地稅를 免除할 수 있다 ② 재차 荒地가 되어 免稅期間을 정하였을 때는 전에 정한 免稅期間이 소멸된다 (同 203 條 및 204 條)
1-5. 災害減免	① 災害로 인하여 그 農地에 대한 收穫量이 基準收穫量에 比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農地稅를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同 第 206 條) ㉞ 收穫量이 7 割 以上 減少되었거나 全無한 때는 農地稅 全額 免除 ㉟ 收穫量이 5 割 以上 감소하였을 때는 그 收穫量의 $\frac{5}{10}$ 를 輕減하여 收入金額을 결정한다 ㊱ 2 割 以上 減收時는 減收量을 제외한 收穫量에 의하여 收入金額을 계산한다.
1-6. 資力喪失減免 등	① 納稅義務者가 災害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納稅가 곤란할 때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稅를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 納稅義務者가 戰爭이나 事變으로 인하여 從軍하였을 때 또는 戰時勤勞勞動法에 의하여 徵用되었을 때는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하여 農地稅를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地方稅法 第 207 條의 ①, ②)
1-7. 公用, 公共用地 免稅	① 國, 道, 市, 郡, 地方自治團體組合이 公用 또는 公共用に 供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에 의하여 農地稅를 免除한다 (同 第 208 條)
1-8. 學校用地 등 免稅	① 學校, 孤兒院, 養老院, 修女院, 寺刹, 教會 등의 農地로서 學術 또는 自家消費用에 供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위의 申請에 의하여 免稅한다 (同 第 209 條)
1-9. 山林苗圃地 免稅	① 農地稅 納付對象者라도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山林契,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經營하는 山林苗圃地에 대하여 農地稅를 면제한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14 條의 2)
2. 財 産 稅	農民과 관계있는 財産稅 免稅는 다음과 같다. ① 畜産業者가 畜産業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免除한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9 條의 4.) ② 일반적으로 住居用土地는 원칙상 100 坪 이하 0.3 %의 稅率에서 비롯하여 0.5 %, 1.0 %, 2.0 %, 5.0 % 등의 稅率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農家는 面積規模에 불문하고 0.3 %의 稅率만을 적용하며 ③ 일반 土地에 대한 財産稅率이 골프장용 土地가 그 價額의 5 %, 法人의 非業務用 토지가 5 ~ 10 % 등의 稅率을 적용시키고 있음에 비하여, 農民所有의 田, 畓, 果樹園, 牧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場用地 등은 그 價額의 0.1 %로 규정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輕減시켜 주고 있다 (地方稅法 第 188 條의 ①) ④ 기타 市長, 郡守는 天災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財産稅 減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市, 郡議會의 議決로 財産稅를 減免할 수 있다 (地方稅法 第 195 條)
3. 取 得 稅	農民과 관련있는 取得稅 免稅는 다음과 같다. ① 農地改革法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農地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2) ②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開墾한 農地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3) 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因하여 取得한 農地 및 農家住宅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8) ④ 畜産業을 영위키 위하여 취득하는 목장용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9) ⑤ 養蠶業 및 양송이 栽培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것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10) ⑥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정착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경지와 주택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19) ⑦ 觀光園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園地開發産業施行者가 취득하는 土地, 농경지 등 (租稅減免規制法 第 10 條 ②의 20)

減免對象稅目	減免內容要旨
4. 登 錄 稅	農民과 관련있는 登錄稅 免稅는 다음과 같다. ① 農地改革法에 의한 登記(租稅減免規制法 第 5 條 ②의 2) ②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시행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인하여 취득한 農地 및 農家住宅의 登記와,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개간된 農地의 등기(第 5 條 ②의 3) ③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移住者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경지와 住宅 등의 등기(第 5 條 ②의 16) ④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그 事業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第 5 條 ②의 17) ⑤ 公共用地的 취득 및 損失補償法에 의한 移住者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第 5 條 ②의 18) ⑥ 山林開發法の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開發地域內에서 山林의 開發을 목적으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山林의 등기(第 5 條의 ③)
5. 印 紙 稅	農民과 관련있는 印紙稅 免稅는 다음과 같다. ①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農協, 畜協 및 水協 등으로부터 農, 畜, 漁民이 融資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同一人 融資金計額 500 萬원 이내 (租稅減免規制法 第 6 條의 6)) ② 農村近代化促進法の 規定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改良事業으로 인한 財産權의 設定,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移轉, 變更 또는 消滅을 證明하는 證書 및 書類(租稅減免規制法 第 6 條의 8) ③ 農業協同組合으로부터 農村住宅改良資金을 融資받거나 住宅建築用 資材를 外상으로 購入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書類(租稅減免規制法 第 6 條의 10) ④ 農民, 養畜家, 漁民 등이 農, 畜, 水協으로부터 物품을 外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서류(租稅減免規制法 第 6 條의 11) ⑤ 農地擴大開發促進法 또는 公有水面埋立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造成事業에 關連하여 作成하는 서류(租稅減免規制法 第 6 條의 12)
6. 所 得 稅	• 所得稅의 免稅事項 중 農民과 관련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3 條 ②)
6-1.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 免除	•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거나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을 한 山林으로부터 생긴 所得에 대하여는 造林을 한 날로부터 20 年間 所得稅를 免除한다
6-2. 畜産業에 대한 所得稅 免除	① 內國인이 所得稅法 第 4 條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를 免除한다 (法 第 4 條의 6, 施行令 第 3 條, 4 條, 5 條등) 이때 “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畜産業”이란 ‘소말, 양, 돼지, 토끼, 친칠라, 사슴, 멍크, 가금 또는 꿀벌의 飼育, 増殖, 採卵, 採毛, 搾油 등을 하는 사업을 포함하는(施行令 條18條의2)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表 5 - 1 의 施設과 規模의 것으로서, 그 免除 所得稅額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施行令 第 6 條의 ①)

㉓ 內國인이 畜産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T_1 = T_i \times \frac{I_1}{t_i} \dots\dots\dots \text{免除할 所得稅額}$$

㉔ 內國인이 畜産法人에 出資하는 경우 ;

$$T_2 = T_i \times \frac{I_2}{t_i} \dots\dots\dots \text{免除할 所得稅額}$$

[단, T_i 는 所得稅法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決定稅額 $\times \frac{50}{100}$

I_1 은 畜産業投資計劃書에 計上된 自己資金으로 투자할 金額

I_2 는 出資者의 納入金額

t_i 는 所得稅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 - 所得稅法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決定稅額 $\times \frac{50}{100}$]

表 5 - 1 所得稅免除對象 畜産施設 및 規模
가.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분 사업종별	가 축 (두 수)	축 사 (㎡)	초지또는사료포	
			초 지 (ha)	사료포 (ha)
한우목장사업	1,000	4,250	500	250
육우목장사업	1,000	4,250	500	250
유우목장사업	1,000	8,250	500	250
산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면양목장사업	10,000	8,250	500	250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6-3. 畜産業에 대한 租稅特例	나.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				
	구분 사업종별	가 축 (두 수)	축 사 (㎡)	초지또는사료포	
				초 지 (ha)	사료포 (ha)
	한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육우목장사업	200	990	100	50
註 1) 租稅減免規制法 第 4 條의 6 施行令 6 條의 1, 別表 1. 大統領令이 定하는 畜産業의 規模. ① 畜産業에 대한 租稅特例로서의 畜産所得稅 減免條項이 있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4 條의 8. ①. 1. 및 同法施行令 第 8 條 ①의 5) 즉 租稅減免規制法 第 4 條의 8 에는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特例'라하여 內國人으로서 이 重要産業을 영위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한 減免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畜産業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畜産業"(1977 년 新設)에 限하여 이 規定의 적용을 받는다. 則, 이 畜産業의 경우 '大統領令이 定하는 所得發生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와 그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로부터 3 년내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그 畜産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또는 法人稅)의 全額을, 그 다음 2 년 이내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거기서 發生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또는 法人稅)의 $\frac{50}{100}$ 에 相當하는 세액을 減免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發生日이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計上한 當해 畜産業의 各 事業年度의 소득이 최초로 發生한 날이 속하					

減免對象稅目	減免內容要旨
6-4.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 除	는 事業年度의 開始日을 말한다 農民과 관련있는 讓渡所得稅 免稅 관련조항 은 다음과 같다(租稅減免規制法 第3條의 3①) ① 公共用地的 취득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의 적용을 받는 公共事業 또는 道路建設事業 에 필요한 土地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및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6-5. 農漁民貯蓄 特別 預金利子和 預託 金配當所得의 所 得稅 免除	① 農漁民 貯蓄을 증대시키기 위한 特別預金(信 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包含)의 利子和 配當金所得(農漁民 묵돈 貯蓄預金은 世帶當 300 만원 이하인 것;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單位農協 등의 預託金 500 만원, 出資金 200 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등에 대하여는 所 得稅를 부과하지 않는다(租稅減免規制法 第 3條의 ④의 2)
6-6. 其他 所得稅法의 규정에 의한 非 課稅의 例 ;	① 田畓을 이용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에 대하여는 非課稅하고(所得稅法 第5條 2) ②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農家副業所得(6-2 에 정한 畜産所得稅 免除 이외에도 養漁所得, 藥 工品所得 등)에 대하여도 合計額이 186 만원 이내에 한하여 非課稅한다(同 5條 3, 및 同施 行令 第6條의 2) ③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 에 의하여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贈與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同法 第5條의 6)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④ 讓渡할 때까지 8年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同法 第 5條의 6) 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同法 第 5條의 6) ⑥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도 非課稅對象이다 (同法 第 5條의 6)
7. 相續稅, 贈與稅	農民과 관련있는 相續稅, 贈與稅 免除는 다음과 같다. ① 山林開發法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을 한 山林 相續 또는 贈與에 있어서는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免除한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3條의 2. ①) ② 相續稅法의 規定에 의한 相 財産 또는 贈與 財産 중에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에 따라 조림한 山林(保安林과 採種林포함)이 있는 경우는 당해 山林價額의 $\frac{50}{100}$에 해당하는 金額을 課稅價額에서 控除한다 (同法 第 3條의 2. ②)
8. 關 稅	① 농민과 관련있는 關稅減免事項은 農業機械化 促進을 위하여 農業機械製造業者가 導入하는 農業機械製造用 部分品에 대한 減免이다 (同法 第 12條 ①의 3)
9. 附加價值稅	農民이 직접 혜택을 받는 附加價值稅의 減免 條項 및 類似條項은 다음과 같다 (附加價值稅

減免對象稅目	減 免 內 容 要 旨
	法 第 1 條 ②, 施行令 第 2 條의 ①, 施行規則 第 1 條의 ③) ① 田, 畓, 果樹園, 牧場用地 및 林野 등의 賃貸 (料)에 대한 免稅 ② 所得稅法 第 5 條 3 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는 農家副業所得은 獨立된 事業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附加價值稅가 免除된다 (施行令 第 1 條의 ③ 2) ③ 沿近海漁業用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協中央會에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11 條의 2 ②項 2) . ④ 가공되지 아니한 食料品과 土地는 免稅한다 (附加價值稅法 第 12 條의 ①)
10. 特別消費稅	特別消費稅免稅 事項 중 農民과 有關한 類似條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農漁村開發公社가 직접 사용하거나 資本金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租稅減免規制法 第 11 條의 ②) ② 沿近海漁業用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에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同 第 11 條의 ⑬ 및 特別消費稅法 第 18 條의 ①)
11. 防 衛 稅	所得稅法上 非課稅, 減免稅, 대상 중에서 防衛稅가 非課稅, 減免稅되는 것으로 농민과 有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防衛稅法 第 3 條,

減免對象稅目	減免內容要旨
	所得稅法 第 5 條의 2, 6 의 가, 라, 마, 사등 및 所得稅法 第 6 條의 ②의 3) ① 田畝의 이용으로 인한 不動產所得 ② 8 년 이상 自耕農地의 讓渡所得 ③ 農地交換으로 인한 讓渡所得 ④ 土地收用으로 인한 讓渡所得 ⑤ 1 世帶 1 住宅者의 讓渡所得 등과 ⑥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 년이상 계속하여 經營한 牧場을 이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內의 土地와 建物の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第 6 章

結論 및 提案

1. 지금까지 農民의 租稅(주로 直接稅) 負擔에 관하여 關係法規와 課徵行政體制등을 중심으로 都農間 및 大小農間の 衡平性 吟味의 관점에서 歷史的, 租稅 思想的 背景으로부터 현재의 實際問題에 이르는 綜合的 考察을 하였다.

이 研究는 進行過程에서 理論과 實際間의 乖離에 직면할 때 現實問題 優先의 立場을 취하였기 때문에 理論의 發展이나 模型開發보다는 現實的이고 구체적인 統計와 法規에 根據를 둔 推定 및 실제 輿論調査 등에 의한 當面問題의 導出과 그 改善方案을 찾는 데에 比重을 두었다.

예컨대, 이론적으로는 “租稅公課가 農村所得分配의 不均等性을 완화시키는 作用을 하고 있다.”⁵²⁾는 것이 지니集中度係數의 適用分析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있는데도, 現實的으로는 현행 稅法規定이나 現地輿論을 통해서 볼 때(第3章과 第4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에는 改善을 요하는 근본적인 不平衡 要因이 적지 않다. 또 農民의 租稅負擔과 相反關係에 있는 農業補助金(그중 특히 麥類補助金の 경우)도 理論的으로는 所得再分配에 긍정적 效果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⁵³⁾ 현실적으로 農民은 麥類補助에 불구하고 보리 栽培를 강경히 기피하는 傾向이다. 그러므로 農民의 租稅構造를 통해서 본 社會的 不平等의 不滿表示度가 經濟的 分析에서 본 不平等度보다 현저히 높음을 감지할 수 있다.

<表 6-1>은 現行의 각종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民의 租稅 및 公課金 負擔을 耕地所有規模別, 經營모델別로 推算한 試算表이며, <表 6-2>는 米穀所得, 農業所得 및 農家所得과 대비한 각종 擔稅率 및 公課金 負擔率을 耕地規模別, 經營모델別로 提示한 것이다.

現實診斷의 接近에 의하면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은 <表 6-1>, <表 6-2>가 말해주듯이 앞에서(第 2 章) 全國規模로 본(巨視分析的 觀點에서) 負擔率보다 현저히 높고, 따라서 이미 問題點으로 지적된 事項의 問題性도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즉 現行 國稅 및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는 기술한 바와 같이 주로 直接稅인 農地稅, 住民稅, 財産稅 및 防衛稅 등이며, 公課金은 農地改良組合會費(農組水利施設利用地域의 경우)를 비롯하여 赤十字會費, 道路賦役費 및 里長·班長租 등이다.

0.5 ha 농가의 경우, 水稻單作일 때는 農地稅가 32.8%, 住民稅가 7.3%, 財産稅가 49.3%, 防衛稅가 10.6% 등의 比率로 부담하고 있으며, 만일 水稻와 고추를 병작할 때는 農地稅 70.1%, 住民稅 7.8%, 財産稅 17.2%, 防衛稅 5%의 比率로 부담하고, 公課金은 水稻單作, 農組會員 農家の 경우, 公課金中 農組會費는 85.3%의 比率로 부담한다. 같은 算法으로 1.0 ha 농가는 農地稅 79~86%, 住民稅 7%, 財産稅 5~11%, 防衛稅 2~3%의 比率로, 1.5 ha 농가는 農地稅 82~86%, 住民稅 7%, 財産稅 5~9%, 防衛稅 2~3%의 比率로 부담하며, 3.0 ha 농가는 農地稅가 86~89%, 住民稅가 7%, 財産稅 3~5%, 防衛稅 1~2%의 比率이다.

대체로 耕地規模가 클수록 農地稅의 상대적 比重이 커지는 반면에 財産稅와 防衛稅의 비중은 줄고, 住民稅의 比率는 불변이며, 公課金 중 農組會費의 상대적 比率도 耕地規模에 正比例하고 있다.

이로써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額의 大宗은 租稅 중 農地稅, 公課金 중 農組會費이며, 이 두 項目은 모두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調整을 위한 주요 戰略項目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農民은 第 4 章에서 검토한 取得稅, 登錄稅, 山林所得稅, 畜產所得稅, 讓渡所得稅, 相續稅 및 贈與稅 중 일부 稅目도 다소 問題點을 지

表 6 - 1 農民의 租稅公課金負擔額試算表

(耕地規模 및 農業經營模型別, 稅目別)

單位 : 원, %

耕地規模 ¹⁾	經營 ²⁾ 모 델	農地稅 A)	住 民 稅			財 產 稅			
			均等割	所得割	小 計	田 分	畜 分	家屋· 宅地分	小 計
0.5 ha (畜 900 坪 田 600 坪)	I - 1	3,600 (32.8)	800	0	800 (7.3)	1,200	2,700	1,500	5,400 (43.3)
	I - 2	3,600	800	0	800	1,200	2,700	1,500	5,400
	II - 1	22,040 (70.1)	800	1,653	2,453 (7.8)	1,200	2,700	1,500	5,400 (17.2)
	II - 2	22,040	800	1,653	2,453	1,200	2,700	1,500	5,400
1.0 ha (畜 1800 坪)	I - 1	77,300 (79.3)	800	5,797	6,597 (6.8)	2,400	5,400	3,000	10,800 (11.1)
	I - 2	77,300	800	5,797	6,597	2,400	5,400	3,000	10,800
	II - 1	180,040 (86.3)	800	13,503	14,303 (6.9)	2,400	5,400	3,000	10,800 (5.2)
	II - 2	180,040	800	13,503	14,303	2,400	5,400	3,000	10,800
1.5 ha (畜 2700 坪)	I - 1	157,070 (81.7)	800	11,780	12,580 (6.5)	3,600	8,100	6,000	17,700 (9.2)
	I - 2	157,070	800	11,780	12,580	3,600	8,100	6,000	17,700
	II - 1	289,210 (86.3)	800	21,690	22,490 (6.7)	3,600	8,100	6,000	17,700 (5.3)
	II - 2	289,210	800	21,690	22,490	3,600	8,100	6,000	17,700
2.0 ha (畜 3600 坪)	I - 1	237,100 (83.7)	800	17,782	18,582 (6.6)	4,800	10,800	6,000	21,600 (7.6)
	I - 2	237,100	800	17,782	18,582	4,800	10,800	6,000	21,600
	II - 1	428,120 (87.3)	800	32,110	32,910 (6.7)	4,800	10,800	6,000	21,600 (4.4)
	II - 2	428,120	800	32,110	32,910	4,800	10,800	6,000	21,600
3.0 ha (畜 5400 坪)	I - 1	397,150 (86.5)	800	29,783	30,586 (6.7)	7,200	16,200	6,000	23,400 (5.1)
	I - 2	397,150	800	29,783	30,586	7,200	16,200	6,000	23,400
	II - 1	705,930 (89.0)	800	52,944	53,744 (6.8)	7,200	16,200	6,000	23,400 (3.0)
	II - 2	705,930	800	52,944	53,744	7,200	16,200	6,000	23,400

註 ; 1) 田畜別 構成比는 40:60 으로함 (1979 年 기준).

2) I - 1 은 水稻作 專業農으로 農組 會員農家.

I - 2 는 水稻作 專業農으로 農組 非會員農家.

II - 1 는 水稻作 (畜全面積)과 乙類作物 兼業農 (田面積의 $\frac{2}{3}$)으로 農組 會員農家.

II - 2 는 II - 1 과 같으며 農組非會員農家.

<表 6-1 계속>

耕地規模 ¹⁾	經營 ²⁾ 모델	防 衛 稅			租稅計(B) (直接稅)	公 課 金		
		住 民 稅 分	財 產 稅 分	小 計		農 組 會 費(C)	其 他 公 課 金	公 課 合 計(D)
0.5 ha (畓 900 坪 田 600 坪)	I - 1	80	1,080	1,160 (10.6)	10,960 (100.0)	54,413 (85.3)	9,350	63,763 (100.0)
	I - 2	80	1,080	1,160	10,960	-	9,350	9,350
	II - 1	245	1,325	1,570 (5.0)	31,463 (100.0)	54,413 (85.3)	9,350	63,763 (100.0)
	II - 2	245	1,325	1,570	31,463	-	9,350	9,350
1.0 ha (畓 1800 坪)	I - 1	660	2,160	2,820 (2.9)	97,517 (100.0)	109,074 (91.3)	10,350	119,424 (100.0)
	I - 2	660	2,160	2,820	97,517	-	10,350	10,350
	II - 1	1,430	2,160	3,590 (1.7)	208,733 (100.0)	109,074 (91.3)	10,350	119,424 (100.0)
	II - 2	1,430	2,160	3,590	208,733	-	10,350	10,350
1.5 ha (畓 2700 坪)	I - 1	1,258	3,540	4,798 (2.5)	192,148 (100.0)	163,611 (93.8)	10,850	174,461 (100.0)
	I - 2	1,258	3,540	4,798	192,148	-	10,850	10,850
	II - 1	2,249	3,540	5,789 (1.7)	335,189 (100.0)	163,611 (93.8)	10,850	174,461 (100.0)
	II - 2	2,249	3,540	5,789	335,189	-	10,850	10,850
2.0 ha (畓 3600 坪)	I - 1	1,858	4,320	6,178 (2.2)	283,460 (100.0)	218,148 (95.3)	10,850	228,998 (100.0)
	I - 2	1,858	4,320	6,178	283,460	-	10,850	10,850
	II - 1	3,291	4,320	7,611 (1.6)	490,241 (100.0)	218,148 (95.3)	10,850	228,998 (100.0)
	II - 2	3,291	4,320	7,611	490,241	-	10,850	10,850
3.0 ha (畓 5400 坪)	I - 1	3,058	4,680	7,738 (1.7)	458,874 (100.0)	327,222 (96.8)	10,850	338,072 (100.0)
	I - 2	3,058	4,680	7,738	458,874	-	10,850	10,850
	II - 1	5,374	4,680	10,054 (1.3)	793,128 (100.0)	327,222 (96.8)	10,850	338,072 (100.0)
	II - 2	5,374	4,680	10,054	793,128	-	10,850	10,850

<表 6-1 계속>

耕地規模 ¹⁾	經營 ²⁾ 모델	租稅公課金計 (E)	比 率				
			A/E	A/B	C/D	C/E	B/D
0.5 ha (畓 900 坪 田 600 坪)	I-1	74,723	4.8	32.8	85.3	72.8	10.3
	I-2	20,310	17.7	32.8	-	-	44.1
	II-1	95,226	23.1	63.0	85.3	57.1	31.5
	II-2	40,813	54.0	63.0	-	-	75.8
1.0 ha (畓 1800 坪)	I-1	216,941	35.6	79.3	91.3	50.3	45.0
	I-2	107,867	71.7	79.3	-	-	90.4
	II-1	328,157	32.9	51.8	91.3	33.2	63.6
	II-2	219,083	49.3	51.8	-	-	95.3
1.5 ha (畓 2700 坪)	I-1	366,609	42.8	81.7	93.7	44.6	52.4
	I-2	202,998	77.4	81.7	-	-	94.7
	II-1	509,650	56.7	86.3	93.7	32.1	65.8
	II-2	346,039	83.6	86.3	-	-	96.9
2.0 ha (畓 3600 坪)	I-1	512,458	46.3	83.6	95.3	42.6	55.2
	I-2	294,310	80.6	83.6	-	-	96.3
	II-1	719,239	59.5	87.3	95.3	30.3	68.2
	II-2	501,091	85.4	87.3	-	-	97.8
3.0 ha (畓 5400 坪)	I-1	796,946	49.8	86.5	96.8	41.1	57.6
	I-2	469,724	84.5	86.5	-	-	97.2
	II-1	1,131,200	62.4	89.0	96.8	28.9	70.1
	II-2	803,978	87.8	89.0	-	-	98.7

表 6-2 農民의 租稅公課金

耕地規模	經營모델	米穀所得또 는農業所得	農家所得	租 稅 公 課		
				農地稅	其他租稅	租 稅 計
		(A)	(B)	(C)	(D)	(E)
0.5 ha (畓 900 坪 田 600 坪)	I - 1	581,600	846,600	3,600	7,360	10,960
	I - 2	581,600	846,600	3,600	7,360	10,960
	II - 1	876,000	1,275,100	22,040	9,423	31,463
	II - 2	876,000	1,275,100	22,040	9,423	31,463
1.0 ha (畓 1,800 坪)	I - 1	1,165,400	1,696,400	77,300	20,217	97,517
	I - 2	1,165,400	1,696,400	77,300	20,217	97,517
	II - 1	1,901,400	2,767,700	180,040	28,693	208,733
	II - 2	1,901,400	2,767,700	180,040	28,693	208,733
1.5 ha (畓 2,700 坪)	I - 1	1,745,300	2,540,500	157,070	35,078	192,148
	I - 2	1,745,300	2,540,500	157,070	35,078	192,148
	II - 1	2,628,500	3,826,100	289,210	45,979	335,189
	II - 2	2,628,500	3,826,100	289,210	45,979	335,189
2.0 ha (畓 3,600 坪)	I - 1	2,327,100	3,387,300	237,100	46,360	283,460
	I - 2	2,327,100	3,387,300	237,100	46,360	283,460
	II - 1	3,504,700	5,101,500	428,120	62,121	490,241
	II - 2	3,504,700	5,101,500	428,120	62,121	490,241
3.0 ha (畓 5,400 坪)	I - 1	3,490,700	5,081,100	397,150	61,724	458,874
	I - 2	3,490,700	5,081,100	397,150	61,724	458,874
	II - 1	5,257,100	7,652,300	705,930	87,198	793,128
	II - 2	5,257,100	7,652,300	705,930	87,198	793,128

° 經營모델 I - 1, I - 2, II - 1, II - 2 등은 <表 6-1> 과 같음.

負擔率推定表（耕地規模別，經營模型別）

單位：원，%

金 負 擔 額		負 擔 率				
公 課 金	租稅公課金計	C / A	E / B	G / B	C / G	E / G
(F)	(G)					
63,763	74,723	0.62	1.29	8.83	4.8	14.7
9,350	20,310	0.62	1.29	2.40	17.7	54.0
63,763	95,226	2.52	2.47	7.47	23.1	33.0
9,350	40,813	2.52	2.47	3.20	54.0	77.1
119,424	216,941	6.63	5.75	12.79	35.6	45.0
10,350	107,867	6.63	5.75	6.36	71.7	90.4
119,424	328,157	9.47	7.54	11.86	32.9	63.6
10,350	219,083	9.47	7.54	7.92	82.2	95.3
174,461	366,609	9.00	7.56	14.43	42.8	52.4
10,850	202,998	9.00	7.56	7.99	77.4	94.7
174,461	509,650	11.00	8.76	13.32	56.7	65.8
10,850	346,039	11.00	8.76	9.04	83.6	96.9
228,998	512,458	10.19	8.37	15.13	46.3	55.3
10,850	294,310	10.19	8.37	8.69	80.6	96.3
228,998	719,239	12.22	9.61	14.10	59.5	68.2
10,850	501,091	12.22	9.61	9.82	85.4	97.8
338,072	796,946	11.38	9.03	15.68	49.8	57.6
10,850	469,724	11.38	9.03	9.21	84.6	97.7
338,072	1,131,200	13.43	10.36	14.78	62.4	70.1
10,850	803,978	13.43	10.36	10.52	87.8	98.7

년 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間接稅인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등의 賦課와 減免稅面에서도 問題點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研究에서는 미처 분석치 못한 部門으로서 他人의 農地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賃借農의 賃借料 負擔과 山村農家の 林野 등 所有에 대한 財産稅 負擔額 등이 가산되는 경우, 農民의 租稅 및 公課金 등 諸負擔은 더 무거울 것이다.

2. 이상 分析 檢討된 諸事項과 問題點들을 고루 감안, 農民의 租稅負擔에 관한 現行 法規體制의 改善方向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한다.

가. 農地稅制

1) 甲類農地稅의 課課

現行의 「單純米穀粗收入課課制」를 米穀所得率이 감안된 「米穀所得課課制」로 전환하고, 農地 平均等級의 非科學的 上向調整 方式을 弛양한다. 즉 課課算式을 종래의 「土地等級別 基準收斂量×坪數×收買價格」에서 「土地等級別 基準收斂量×坪數×收買價格×所得標準率」로 바꾸어, 基準收斂量 下向調整 便直性에서 오는 課課決定의 非合理性을 보완한다.

2) 農地稅의 基礎控除

가) 甲類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現行 「金額基準 基礎控除制」에서 「物量基準 基礎控除制」로 전환하여, 政府의 米價引上에 의한 農地稅 負擔의 自動增加現象을 방지한다. 이는 農民의 所得保障을 위하여 米價를 인상하고, 租稅로 再還收하는 政策과 制度上의 矛盾을 排除함에도 目的이 있다.

나) 農地稅의 基礎控除는 다음의 原則에 의하여 재조정한다.

(1) 農家平均 家計費에서 農外所得 相當額을 차감한 金額水準은 유지하여야 한다.

(2) 農家所得 중 都市勤勞者 家計所得 對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 比率 相當水準 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

(3) 農家購入價格 또는 米價變動率이 반영되어야 한다.

<表 6-3>은 이 原則에 의하여 작성한 農地稅 基礎控除額 調整試案이다.

모델 I 의 1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 124 萬원은 1979 년도 農家 平均家計費에서 農外所得相當額을 공제한 金額에 1979 ~ 1980 년의 農家購入價格指數를 감안하여 산출한 것이며 [$1,662,168 \text{ 원} - (2,227,483 \text{ 원} \times 30\%) \times 1.25^* = 1,243,000 \text{ 원} \approx 124 \text{ 萬원}$],

모델 II 의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 105 萬원 ~ 140 萬원은 1975 ~ 1979 년 평균 農業所得 중 米穀所得의 比率을 현행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에 適用(乘)하여 산출한 것이다 [$186 \text{ 萬원} \times 56.3\% = 1,047,180 \text{ 원} \approx 105 \text{ 萬원}$, 또는 $248 \text{ 萬원} \times 56.3\% = 1,396,000 \text{ 원} \approx 140 \text{ 萬원}$ (賞與金 400% 勘案)].

또 모델 I 의 3, 甲類와 乙類의 基礎控除合計 (158 萬원)은 1979 년도 都市勤勞者戶當所得 對 綜合所得稅基礎控除額 比率을 農家 所得額에 適用(乘)하여 산출한 것이며 [$2,227,483 \text{ 원} \times \frac{1,860,000}{2,629,600} = 1,575,570 \approx 158 \text{ 萬원}$]

모델 I 의 2, 乙類農地稅 基礎控除額 (34 萬원)은 I 의 3, 즉 水稻와 乙類稅 對 農作物을 모두 경작하는 農家が 1 년중 공제받는 金額 (158 萬원)에서 I 의 1 甲類農地稅 基礎控除額 (124 萬원)을 차감한 金額이고 [$158 \text{ 萬원} - 124 \text{ 萬원} = 34 \text{ 萬원}$],

모델 II 의 乙類農地稅 基礎控除額 (30 萬원 ~ 40 萬원)은 1975 ~ 1979 년 평균 農業收入 對 乙類稅對象作物의 收入의 比率 (15.8%)을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에 適用(乘)하여 산출한 것이다 [$186 \text{ 萬원} \times 15.8\% = 293,900 \text{ 원} \approx 30 \text{ 萬원}$, $248 \text{ 萬원} \times 15.8\% = 391,800 \text{ 원} \approx 40 \text{ 萬원}$].

그러므로 1981 년 後半期부터 적용할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甲類農地稅가 105 萬원 ~ 124 萬원 (賞與金 400% 勘案時는 140 萬원), 乙類農地稅가 1 期에 30 萬원 ~ 34 萬원 (賞與金 400% 勘案時는 40 萬원) 수준으로, 甲類와 乙類稅 對象作物을 병작하는 農家の 경우는 최소한 158 萬원 수준에는 달해야 한다 <表 6-3>.

* 農家購入價格指 變化倍數 ($\frac{1978}{1979} = \frac{269.5}{216.2} = 1.25$. 但, 1975 = 100).

3) 農地稅의 課標 및 稅率構造

가) 課標間隔(幅)과 段階數는 現행의 「15 萬圓 - 15 萬圓 - 無制限」式 15 萬圓間隔 3 段階制에서 「30 萬圓 - 30 萬圓 - 3 萬圓 - 無制限」式 30 萬圓間隔 4 段階制로 전환한다.

나) 稅率은 甲類를 現행의 「 $\frac{6}{100}$, $\frac{8}{100}$, $\frac{10}{100}$ 」에서 「 $\frac{4}{100}$, $\frac{6}{100}$, $\frac{8}{100}$, $\frac{10}{100}$ 」로, 乙類를 現행의 「 $\frac{10}{100}$, $\frac{15}{100}$, $\frac{20}{100}$ 」에서 「 $\frac{8}{100}$, $\frac{10}{100}$, $\frac{12}{100}$, $\frac{15}{100}$ 」로 각각 下向調整한다.

表 6-3 農地稅 基礎控除額 再調整試案

單位: 원, %

代案	單 複 作 別	農地稅基礎控除額			綜合所得稅 基礎控除額	比 較		
		甲類(A)	乙類(B)	計(C)		A/D	B/D	C/D
Ⅰ	1. 水稻作農家	1,240,000	-	1,240,000	1,860,000 (2,480,000)	67 (50)	-	67 (50)
	2. 乙類作物農家	-	680,000 (340,000×2期)	680,000	1,860,000 (2,480,000)	-	37 (27)	37 (27)
	3. 甲 乙 類 作物併作農	1,240,000	340,000	1,580,000	1,860,000 (2,480,000)	67 (50)	37 (27)	85 (64)
Ⅱ	-	1,050,000	300,000	1,350,000	1,860,000	57-75	16-22	73-78
		~1,400,000	~400,000	~1,450,000	(2,480,000)	(42-56)	(12-16)	(5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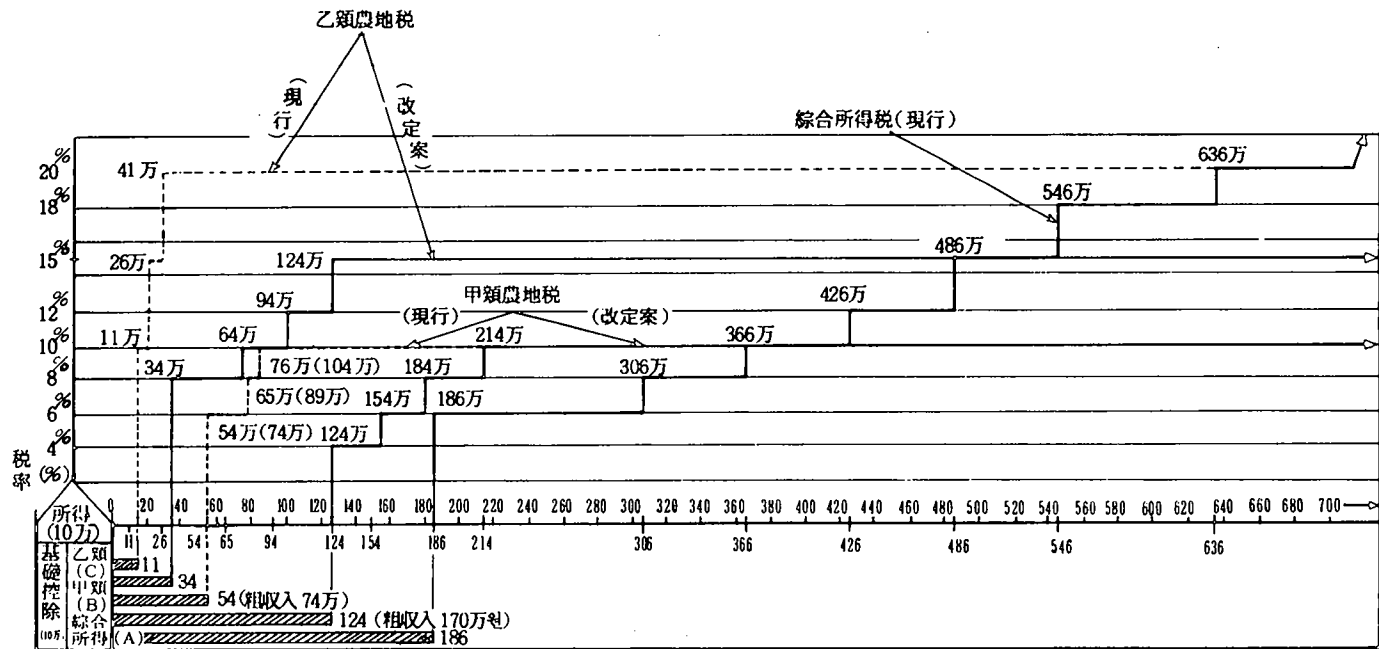
다) 가)와 나)의 內容을 綜合整理하면, <表 6-4>와 같으며, 이를 所得概念을 기준으로 綜合所得稅의 稅率構造와 對照圖示하면 <圖 6-1>과 같다.

農地稅의 課標 및 稅率構造의 改定案 중 (1) 甲類農地稅에 있어서 所得 214 萬圓 以上水準(米穀粗收入 292 萬圓, 改定課標 90 萬圓: 所得基準)의 甲類農地稅 稅率과 所得 366 萬圓~426 萬圓 範圍의 綜合所得稅 稅率을 同一率($\frac{10}{100}$)로 정한 것은 <圖 6-1>, 耕地規模 2.0 ha 이상 농가의 米穀所得 210 萬圓~220 萬圓 範圍에 해당하는 農家所得이 360 萬圓~370 萬圓 수준이라는 점에 根拠를 두었으며,⁵⁴⁾ (2) 甲類農地稅 稅率의 上 限水準을 $\frac{10}{100}$ 으로 정한 것은 綜合所得稅 稅率 $\frac{10}{100}$ 이 적용되고 있는 所得水準인 400 萬圓帶(366 萬圓~426 萬圓)는 耕地 最上位 規模인 2.0 ha 이상 農家の 所得水準과 일치하기 때문이다(1979 年 耕地規模 2.0 ha 이상

表 6-4 農地稅 稅率構造 調整試案

現 行				調 整 案				綜合所得稅(現行)		
課 標 段 階	課 標 間 隔	稅 率		課 標 段 階	課 標 間 隔	稅 率		課 標 段 階	課 標 間 隔	稅 率
		甲 類	乙 類			甲 類	乙 類			
1	15 萬圓以下	15 萬圓	$\frac{6}{100}$				$\frac{10}{100}$			
2	15 萬圓主과 ~ 30 萬	15 萬圓	$\frac{8}{100}$	1	30 萬圓以下	30 萬圓	$\frac{15}{100}$			
3	30 萬圓主과 ~	無制限	$\frac{10}{100}$	2	30 萬圓主과 ~ 60 萬圓	30 萬圓	$\frac{20}{100}$			
4	-	-	-	3	60 萬圓主과 ~ 90 萬圓	30 萬圓	$\frac{6}{100}$			$\frac{10}{100}$
				4	90 萬圓主과 ~	無制限	$\frac{8}{100}$			$\frac{12}{100}$
							$\frac{10}{100}$	1	120 萬圓以下	$\frac{15}{100}$
								2	120 萬圓主과 ~ 180 萬圓	$\frac{6}{100}$
								3	180 萬圓主과 ~ 240 萬圓	$\frac{8}{100}$
								4	240 萬圓主과 ~ 300 萬圓	$\frac{10}{100}$
								5	300 萬圓主과 ~ 360 萬圓	$\frac{12}{100}$
								6	360 萬圓主과 ~ 450 萬圓	$\frac{15}{100}$
								7	450 萬圓主과 ~ 540 萬圓	$\frac{18}{100}$
								8	540 萬圓主과 ~ 6,000 萬圓	$\frac{21}{100}$
								9	6,000 萬圓以上	$\frac{21}{100}$
								10	150 萬圓	$\frac{62}{100}$

图 6-1 農地稅外 綜合所得稅의 所得基準 稅率構造圖



* 甲類農地稅의 ()內 數値는 米穀의 粗收入金額 (現行 標準기준) 임.

의 농가의 戶當所得은 4,041,819 원이었음). (3) 乙類農地稅 稅率上限線을 현행의 「 $\frac{20}{100}$ 」에서 「 $\frac{15}{100}$ 」로 下向調整한 것은, 甲類農地稅와 비교하여, 같은 農地稅로서 甲類農地稅 稅率上限線보다 배 이상 (200 % 수준)이나 더 높아야 할 根據가 없으므로 당연히 甲類農地稅率의 上限線인 $\frac{10}{100}$ 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나, 급격한 下向調整에서 야기될 稅收上的 缺陷을 감안, 甲類農地稅 稅率上限線 ($\frac{10}{100}$)의 1.5 배인 $\frac{15}{100}$ 수준까지만 下向調整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 甲類 및 乙類農地稅의 稅率 隔差는 段階的으로 同一水準 稅率로 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論據는 다음과 같다. 즉, 앞의 乙類農地稅의 課標間隔(幅) 再調整 과정에서 基礎控除를 34 萬원으로 하고, 課標間隔과 段階數를 「30 萬원 4 段階制」를 도입한 결과, 最上限線 稅率適用 所得範圍가 124 萬원 이상(乙類農地稅課標 90 萬원 이상) 수준으로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㉞ 綜合所得에 대하여 同一稅率 ($\frac{15}{100}$)을 적용하는 범위의 所得水準 (486 萬원~546 萬원)보다는 아직도 현저히 낮으며(현 26 %~23 %), 또 ㉜ 그보다 낮은 수준인 甲類農地稅 上限稅率 ($\frac{10}{100}$)을 적용하는 所得水準 (214 萬원~366 萬원 범위)에 비해서도 58 ~ 34 % 정도에 불과할 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4) 賃借農에 대한 農地稅 減免

賃借農에 대하여는 農地賃借料 負擔을 경감하고, 그로 인한 耕地利用率 提高를 위하여, 農地稅額의 20 % 수준까지 감액한다(단, 農地 賃借契約 登錄制 등에 의한 賃貸借 事實確認制度를 병행한다).

5) 農地稅 納付方法

甲類農地稅 納付方法을 현행 「單一物納制」에서 物納 또는 金納 중 어느 方法이든 택할 수 있는 「二元一納制」로 전환한다.

6) 乙類農地稅 對象作物의 作況調査

가) 調査能力을 量的, 質的으로 확대키 위하여, ① 調査人員의 數를 늘리고 그들에 대한 敎育, 訓練體制를 확립한다. ② 낡은 調査裝備과 機器를 改善代替하고 調査方法과 技術을 開發普及한다. ③ 地方公務員 등 公採時 稅法(農地稅) 및 調査方法論을 試驗科目으로 必須化한다.

나) 郡 또는 面單位로 調査專擔班을 구성하여 해당 作目別 耕作者

名單에 의거, 失期까지 않도록 適時 巡廻點檢式으로 충분한 回數의 調査를 실시한다.

다) 納稅者 不滿要因과 調査上의 誤差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農家와 統計事務所 職員, 指導所 職員, 農協 職員 및 里長, 班長 등의 다수 調査參與制를 권장, 채택한다.

라) 同一作目の 品種間 所得隔差를 課稅에 반영할 수 있도록 品種別 所得標準率을 설정, 적용토록 연구, 개발한다.

7) 對農民 弘報 및 啓蒙體制의 確立

農地稅에 관한 農民의 沒理解와 無知 등으로 야기하는 農地稅 不滿을 최소화하고, 稅收增大에의 協助를 기하기 위하여 定期的으로 전개할 수 있는 農地稅關聯 啓蒙 및 弘報體制를 확립한다.

8) 農地稅 關聯法規 등의 制定 및 改定 등에 關聯部處間의 調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協議體制를 확립한다(內務, 農水產 및 財務部 등).

나. 其他 租稅 公課金制度

1) 所得稅

農民이 부담하는 일반 所得稅는 전술한 바와 같이 不動產所得 중 田畠을 이용케 하여 발생하는 所得, 事業所得 중 畜產業, 林業, 狩獵業 및 水產業 등에서 발생하는 所得, 山林으로부터의 伐木 및 山地賣渡 등에 의한 所得 및 讓渡所得 등에 부과하는 稅金인 바 그중 改善을 요하는 면은 다음과 같다.

가) 事業所得 중 林業所得에 대한 課稅

林業所得이란 種苗業, 育林業 山林地域에서 영위하는 草木의 진, 껍질, 열매, 뿌리, 꽃, 이끼, 藥用植物 등의 採取業과 버섯類 등의 栽培 및 採取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所得稅法 第20條 및 同施行令 第29條) 이들 品目 중 특히 버섯類 등의 生産과 같은, 輸出을 통한 外貨獲得源이 될 수 있는 分野에 대하여는 增產, 輸出 促進을 위하여 積極적인 減免稅 措置를 취한다.

나)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

山林所得이란 造林한 期間이 5년 이상인 林地의 林木의 伐採 또는 林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인바(所得稅法 第24條) 전술한 바와 같이 木材의 自給度를 높이기 위한 稅制上의 支援策으로서 山林所得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減免稅 方案을 상구하고, 山林崩壊 및 科學營林을 촉진키 위하여 山林의 讓渡所得에 대해서도 減免措置를 強化한다.

다) 農地의 讓渡所得稅

所得稅法 第5條 6의 2에는 「…… 讓渡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自己가 경작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非課稅 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 한하여 讓渡所得稅 非課稅 對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農地의 流動性 提高를 통한 所得規模의 擴大 및 營農의 科學化를 조장키 위하여, 自耕을 目的으로 매수하는 者에게 讓渡時는 法定 非課稅 所要期間을 현행 「8년 이상 ……」에서 「3~5년」으로 단축한다.

라) 相續農地의 相續人間 去來에 부과하는 讓渡所得稅 등

現行法上 相續農地의 相續人사이 賣買行爲에 대해서도 讓渡所得稅와 取得稅 및 登錄稅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數人의 農地相續人 중 非農業 從事者의 相續農地를 他相續人(兄 또는 弟)에게 매도함으로써 多數人 相續에 의하여 細分化된 農地規模를 再統合하려는 意志를 저해하게 되므로 相續人 사이의 農地流通을 원활히 하고, 農地 所有規模의 擴大 및 營農機械化 基盤造成 등을 유도, 촉진하는 趣旨로 그들 사이의 農地去來에 한하여는 讓渡所得稅 등을 감면한다.

2) 住民稅, 財産稅 및 防衛稅

특별히 改善을 요하는 事項은 없으나 다만, 住民稅 중 所得割(農地稅割)稅率이 그 課標인 農地稅額의 7.5% 單一稅率을 적용함에서 야기되는 都農間 및 大小農間の 稅負擔 逆進性(衡平阻害性)이 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점은 農地制度 자체를 전술한 바(第6章 132페이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전제하면 農地稅 負擔(住民稅所得割課標) 자체를 경감케 되어 問題의 소지는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3) 取得稅와 登錄稅

同一人으로부터의 農地相續人 상호간에 農地流通을 촉진하고 그 所有規模의 확대를 조장키 위하여, 相續人 사이의 農地賣買에 대하여는 전기 讓渡所得稅와 함께 取得稅와 登錄稅도 감면한다.

4)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

가) 附加價値稅

現行法上 農民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農產物 去來(非農業人이 購入하는)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과세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그 農產物의 生産을 위한 農資材의 去來(農民이 구입하는)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부과하고 있는 바(附加價値稅法 第1條 및 第12條), 이는 課稅 衡平原則에 반하므로 農民과 非農業人(商工人)간의 負擔의 衡平化를 위하여, 農民이 구입하는 工產品 중 최소한 農資材(肥料, 農藥, 農機械)등의 구입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나) 特別消費稅

營農機械化를 위한 農機械의 普及 擴大를 촉진하고, 農用水 適期 最大利用을 위하여 農機械(揚水用原動機포함)用油類에 대하여는 특별 소비세를 감면한다.

5) 公課金 中 農地改良組合會費

農地改良組合 會員農家가 부담하는 農地改良組合會費(俗稱 水稅)는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第4章 111페이지 참조) 그 性質上 그것이 灌溉用水의 使用料만은 아니다. 따라서 農組會費의 50%만을 순수한 물값으로 가정하여 볼 때, 그 물값은 坪當年 35원, 벼 1畝/54kg 生産에 소요되는 물값은 1,382원으로서 家庭用 上水道料(第3種) 5人 家族 2개월分(33㎡當 1,250원)⁵⁵⁾ 과 비슷한 水準의 負擔이다.

農組會費를 통해서 負擔하는 물값이 어느 정도나 비싸고 싼 것인가에 관하여는 깊이 分析치 않았기 때문에 客觀的 基準이 없어 명확히 判定키는 어렵다. 그러나 앞의 <圖 6-1> 및 <表 6-1>에서 分析 提示된 바와 같이 耕地規模 1.5ha 농가로서 水稻單作, 農組會員인 경우, 農組會費는 租稅公課金의 32%, 公課金의 94% 수준임에 비추어,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公課金 중에서 農地稅와 더불어 兩大宗이므로, 農民의 租稅公課金 負擔輕減의

當爲性에 비추어 農地稅制등 각종 稅制의 改善을 요하는 現時點에서 再檢
討되어야 할 必要性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註 및 参考文献

- 註 1. 政府発表 公式資料에 의하면 1974년부터 1977년까지 3개年間은 農家가 都市勤勞者家口보다 戸當 平均所得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家口員 1인당 所得水準은 여전히 農家가 낮으며, 특히 그 都農間 所得比較의 基本資料로 인용되고 있는 經濟企劃院의 「도시근로자가제연보」와 農水産部の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에 의한 統計數値의 직접 比較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쏠림이 없지 않다 (예: 金俊輔, 「韓國經濟와 貨金構造」 1979 . pp. 102 ~ 107, 潘性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과 所得分配」 KDI, 1979. p. p. 114 ~ 124).
2. 經濟科學審議會議, 「高度産業社會에 부응하는 韓國의 農村開發方向」, 1980. p. 30.
3. 1980. 9 ~ 10 월 사이에 실시한 農村輿論調查(郵便, 標本調查) 結果에 의하면, 全國調查對象 總農家 2,464 호 중 응답자는 2,065 호(回收率 84%), 응답자 중 農地稅納付 農家は 87 %였는데, 農地稅納付農家 중 稅負擔過重 내지 課稅의 不公平性에 불만이 있는 農家가 63.8%(全體農家の 5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81년 5월에 一線行政機關(주로 邑面) 稅務担当 實務者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面接 調查結果, 応答者全員이 지적한 現行 農地稅制上的 問題点이, 前記 農民不滿要因과 客觀적으로 有關係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崔在善, 「庶民生活安定을 위한 地方財政의 役割」, 內務部, 地方行政, 1981. 4月号, p. 52참조.
5. K. D. I. 朱鶴中 외,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1979. p. 183 참조.
6. 農民이 부담하는 租稅 및 公課金の 總額概念임.
7. 經濟企劃院, 「도시가계연보」, 1979. p. 65 참조.

8. 農水産部,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해설」, 1962. 참조.
9. 絶对贫困의 概念에 관하여는 見解差가 상당히 있으나 筆者는 韓国事情을 기준으로 하여 1960년대 이전까지 年例行事처럼 반복되어온 이른바 「보리고개」가 존속하던 때의 낮은 所得水準(農家戸当平均所得이 20 萬원 이하)의 狀態를 지적함.
10. 全国 邑 以上 都市家口 平均으로 1974 년부터 1977 년까지는 都農間 所得比가 호당 100.4 % ~ 104.7 %의 比率로 農家가 높았으나 서울市の 平均水準과 비교하면 여전히 農家가 낮았다.
1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轉換期の 韓國農業」, 1979, p. 140 참조.
12. 韓國開發研究院,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1979, p. p. 210 ~ 211 참조.
13. 現行稅法上 地方稅에 屬해 있는 農地稅는 旧韓末(1896年)以後, 日政下(1926年), 先復直前(1945年) 및 大韓民國政府樹立(1948年)期를 거쳐, 1961年初에 이르기까지 「地稅 → 土地收得稅 → 臨時土地收得稅」의 形態로 國稅에 屬해 있었으나, 1961年 12月의 稅制改革에 의하여 國稅인 土地稅 中 農地에 대한 部分이 農地稅란 名稱으로 分離, 地方稅에 編入되었음(다른 部分은 財産稅란 名稱으로 地方稅에 編入됨).
14. 全祥九, 李哲兩 共著, 「地方稅法 實務(1980)」, p. 212.
15. “繭”은 사람을 對象으로 하는 勞動力의 賦課인 “役”의 物納을 意味하며 徭, 徭役, 賦, 貢賦, 布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음.
16. “調”는 戶口를 對象으로 하여 賦課하였던 土產 現物의 賦課이며 貢, 貢賦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였음. 이는 一般生産物을 대상으로 하여 定期的으로 賦課되는 常貢과 地方特産物에 대하여 隨時로 賦課되는 別貢 등으로 区分하였음.
17. 1950年 12月에 制定, 1951年부터 實施한 이 租稅臨時 增徴法에서는 地稅法 以外에도 所得稅法, 法人稅法, 物品稅法 및 織物稅法 등도 大幅改正하여, ① 所得稅法에서는 後方地域의 地價昂騰分을 租稅로 吸收키 위하여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가 復活되었고, ② 法人稅法에서는 累進率 適用, ③ 物品稅는 生糧, 고무신, 紙類, 蔑竹 등 生必需品에 이르기까지 課稅對象을

擴大하였으며, ④織物稅도 大衆消費品인 棉糸, 麻糸에까지 課稅對象을 擴大함으로써 國民의 租稅負擔을 增加시켰다.

18. 1962 年에 實施한 稅制改革은 前記 ①②③ 以外에도 ④彈力性 있는 稅制의 實施, ⑤貯蓄 및 投資의 促進, ⑥重要産業의 保護育成 등의 基本方向이 있었으며, 특히 이때에 土地稅등이 國稅에서 地方稅로 移讓된 反面에 地方稅 中에서는 漁業稅, 交通稅 등이 國稅로 吸收 統合되고 戶別稅를 廢止하였다.
19. 1961 年度 稅制改革에서는 5·16 革命後 地方財政의 確立을 위하여, 國稅 中에서 地方稅의 性格을 가진 農地稅, 自動車稅, 遊興飲食稅, 屠畜稅 및 馬券稅를 地方稅로 移讓하고, 地方稅中에서 漁業稅, 特別行爲稅, 交通稅 등을 國稅에 吸收하는 한편, 戶別稅를 廢止하고 所得稅附加稅와 法人稅附加稅를 新設하는 등과 國稅와 地方稅의 稅源을 再配分키 위하여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을 制定(1961. 12. 2)公布하고 地方稅法을 全幅의으로 改正하였다 <圖 3-5 참조>.
20.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大邱直轄市, 仁川直轄市, 大田市, 光州市 등이었음.
21. 이때 地方稅體系가 大幅 整備되었는데, 道稅는 取得稅, 登錄稅, 免許稅 등으로, 市郡稅는 住民稅, 財産稅, 自動車稅, 農地稅, 屠畜稅, 馬券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事業稅 등으로 編成되었음.
22. 朴成鎬, 「韓國租稅 思想史」, 1978. p. 11 참조.
23. 이경우, 中間挾雜輩는 經濟的으로 地主層, 社會的으로 兩班層, 政治的으로 是 王權을 疎外시키는 執權閥族層, 그리고 租稅面에서는 實際 徵收業務를 맡고 있는 吏屬輩를 稱함 (前掲書 p. 75 ~ 76).
24. 前掲書 p. 113 참조.
25. 農地의 等級別 收穫量이란 農地의 品位 및 情況에 따라 定한 單位面積當 平均收穫量을 말하고, 農地의 基準 等級 및 平均 收穫量은 內務部令으로 定한다. 이때 農地의 等級은 畝에 대하여 100 坪當 平均收穫量을 基準으로 <表 3-3>의 等級別 收穫量에 의하여 決定되며, 平均 收穫量은 平年作의 경우에 生産되는 메벼의 1 坪當 收穫量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한다

(地方税法 施行令 第146条, 施行規則 第83条 1 및 2).

26. 甲類農地稅의 課稅를 두가지 概念으로 区分할 必要를 느끼게 된 理由는 現行 税法上에 나타나 있는 다음의 根拠에 立脚한 것이다. 즉 첫째, 地方税法 第211条에는 “農地稅의 課稅標準은 다음과 같다. 1. 甲類 : 그 農地에 대한 基準 收入金額. 다만 ………” 로 規定되어 있으며, 둘째, 同法 第213条에는 “①農地稅의 稅率은 다음 各号에 定하는 바에 의한다. 1. 甲類 : 基準收入 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다음의 各級으로 区分하여 遞次로 各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金額의 合計額을 그 稅額으로 한다. ① 15 萬圓 以下の 金額 : $\frac{1}{100}$ ………” 로 되어 있어, 基準收入金額 (=課稅)의 概念을 前者 (法 211条)에서는 基礎控除前, 後者 (法 213条)에서는 基礎控除 後의 것으로 指稱되고 있다.
27. 이때 必要經費에는 人件費, 種子代, 肥料代, 農藥代, 施設費, 農機具代(賃借料 包含), 公課金(農地稅 및 農地稅割住民稅 除外), 土地資本用役費, 諸材料 및 修理費, 資本用役費, 畜力費 등을 包含한다 (地方税法 施行令 第147条 1).
28. 糧穀管理法 施行令 第10条 規定에 의거 農水産部長官이 告示한 糧穀買入價格中 粗穀 2等品 價格임.
29. 1980年度에 25等級의 논 6,000 坪을 耕作한 農家가 負擔해야 할 甲類 農地稅額은 다음과 같이 算出된다. 즉, 農地의 基準收穫量 等級表에 의하면 25等級 논의 1坪당 收穫量은 1.5 kg이므로 課稅 A는 $1.5 \text{ kg} \times 6,000 \text{ 坪} \times \frac{22,260 \text{ 원}}{54 \text{ kg}} = 371 \text{ 萬圓}$ 이고, (단 1980年度産 벼 54 kg당 수매가는 22,260 원임) 여기서 基礎控除額 74 萬圓을 控除하면 297 萬圓이 課稅 B 이다. 여기에 遞次로 稅率을 適用하면,
- $$T_1 = 15 \text{ 萬圓} \times \frac{6}{100} = 9,000 \text{ 원}$$
- $$T_2 = (30 \text{ 萬圓} - 15 \text{ 萬圓}) \times \frac{8}{100} = 12,000 \text{ 원}$$
- $$T_3 = 9,000 \text{ 원} + 12,000 + (297 \text{ 萬圓} - 30 \text{ 萬圓}) \times \frac{10}{100} = 28 \text{ 萬 } 8 \text{ 千圓}$$
- 의 稅額이 算出된다.
- 이때 納期內에 納付하면 1割 控除로 255,600 원을 納付하면 되는바, 이

를 物量으로 納付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稅量을 算出한다 (稅量 = 稅額 ÷ 벼 1 kg 당 收買價格).

$$28 \text{ 万 } 8 \text{ 千원 } \div 412.2 \text{ 원 } = 698.69 \text{ kg}$$

$$698.82 \text{ kg} - 69.87 \text{ kg} = 628.82 \text{ kg} \text{ (納期內 納付稅量)}$$

$$628.82 \text{ kg} \rightarrow (\triangle 0.82 \text{ kg}) = 628 \text{ kg} (= \text{告知稅量}) \doteq 11.6 \text{ 畝 (稅量)}$$

30. 乙類農地稅 対象作物中 例컨대 고추를 1980 年度에 2,000 坪 栽培한 農家の 乙類農地稅 負擔額은 다음과 같이 算出된다.

$$\text{즉, 課標 A} = 2,000 \text{ 坪} \times 0.8 \text{ 斤} \times 2,000 \text{ 원} \times 46 \% = 147 \text{ 万 } 2 \text{ 千원이고}$$

(단 1980 年度 고추의 所得標準率은 46 %였던 慶北 義城의 例)

$$\text{여기서 基礎控除를 한 課標 B} = 1,472,000 \text{ 원} - 110,000 \text{ 원}$$

$$= 1,362,000 \text{ 원이다.}$$

여기에 該當稅率을 遞次로 適用하면 다음의 稅額이 算出된다. 즉,

$$T_1 = 150,000 \text{ 원} \times \frac{10}{100} = 15,000 \text{ 원}$$

$$T_2 = (300,000 \text{ 원} - 150,000 \text{ 원}) \times \frac{15}{100} = 22,500 \text{ 원}$$

$$T_3 = 15,000 \text{ 원} + 22,500 \text{ 원} + (1,362,000 \text{ 원} - 300,000 \text{ 원}) \times \frac{20}{100}$$

$$= 249,900 \text{ 원이 된다.}$$

31.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第 1 條 (目的): 「이 法은 糧穀收穫期에 있어서 穀類의 過剩出荷로 인한 穀價의 低落를 防止하고 政府管理糧穀의 適期確保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稅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서울特別市, 釜山市, 大邱市, 仁川市, 光州市, 大田市 以外の 地方自治團體가 納稅義務者로 부터 納期內에 徵收하는 甲類農地稅는 現穀으로 徵收하기 위한 措置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同第 2 條: 「①農地稅는 正租로 徵收한다. 다만, 政府糧穀管理上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는 玄米로 徵收할 수 있다. ②……………」.

32. 1980 年初 政府收買에 所要되는 追加經費는 벼 54 kg 1 畝當, 運搬費 100 원, 가마니값 320 원, 새끼값 45 원, 檢査手數料 6 원 등 計 471 원 이었음 (1980 年 6 月, 金堤・利川 地域의 例),

33. 여기서 家計費란 家計의 費用支出額中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衣服費

및 其他 雜費 등 消費支出額의 合計額 概念임.

34. 配偶者를 包含한 5 人家族(扶養家族 3 人)의 경우의 基礎控除額으로 ① 勤勞所得控除 54 萬원, ②基礎控除 30 萬원, ③配偶者控除 30 萬원, ④扶養家族控除 72 萬원(24 萬원 $\times$ 3 人)의 合計額임.
35. 1974 年 全國 農家戶當 平均 所得은 674,451 圓 이던 것이 1979 年에는 2,227,483 圓으로서 名目上 3.3 倍로 늘었으며, 1.0 ~ 1.5 ha 耕地規模 農家의 所得規模는 1974 年의 771,917 圓에서 1979 年에는 2,467,073 圓으로, 320 % 水準으로 增加되었다.
36. 現行 農地稅課標準間隔 15 萬원은 1974 年 12 月 27 日, 法律 第 2743 号로 制定, 1975 年 1 月 1 日부터 施行된 것임.
37. 坪當 高추收穫量은 0.8 斤, 斤當 高추基準價格은 2,000 圓, 1980 年度 高추所得率은 46 % (以上 慶北 義城地域의 實例)를 適用하여 算出한 것임.
38. 甲類農地稅의 稅率이 現行의 超過累進率制로 바뀌고, 甲乙類農地稅의 課標準間隔이 現行의 15 萬圓 幅으로 決定된 것은 1974 年 12 月, 稅制改正以後부터임.
39. ①地方稅法 第 111 條第 2 項 但書規定에 의한 課稅 時價標準額임.
 ②土地에 대한 1981 년도 課稅時價標準額은 1981 年 현재 土地台帳 및 林野台帳에 登載된 土地等級 價格으로 한다.
 ③土地等級表 等級價額에 의한 課稅時價計算方法 例示 : 京畿道 平沢郡 彭城邑 南山里 10 番地 畓 200 坪, 土地等級 48 等級(坪當 3,500 圓)의 경우, 課稅時價標準額 = 3,500 圓 $\times$ 200 坪 = 7,000,000 圓.
40. 土地의 現行 課稅時價標準額은 1981 년도 현재 土地台帳 및 林野台帳에 登載된 土地等級價格으로, 그 內容은 <表 4 - 4>와 같다.
41. 여기서 法定所得控除는 所得稅法 第 63 條 ①에 規定된 直系卑屬 2 人을 包含한 5 人家族 基準으로, ①基礎控除 年 30 萬원, ②配偶者控除 年 30 萬원, ③扶養家族控除 年 72 萬원(24 萬원 $\times$ 3 人), ④勤勞所得控除 年 54 萬원으로, 合計 186 萬원을 말함.
42. 所得稅法 第 5 條에 定한 非課稅 規定中, 事業所得 가운데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農家副業所得도 非課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때 “大統領令이

- 定하는 農家副業所得”이란 「農漁民이 副業으로 營為하는 畜産, 養漁, 蕎工品(예: 새끼, 가마니등) 및 其他의 所得」을 말한다(所得稅法 施行令 第6條의 2). 그러나, 이들 副業의인 所得도 그 合計額이 186 萬원(1981 1.1 現在)을 超過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所得稅 賦課對象이 된다.
43. 讓渡所得 特別控除率은 讓渡所得稅 課稅對象 中 土地와 建物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取得価額에 10%内外의 每年度別 都 売物価上昇率을 乘하여 算出함. 이 制度는 1979년 1월 1일부터 중단했다가 1980년 12월 31일부터 다시 시행함.
44. 改定前까지와 같은 農地의 納稅證明, 自耕農地證明, 農地稅 課稅證明 등은 不要함.
45. 相統稅法 第11條의 2, ①에 規定한 「大統領令이 定하는 相統人」으로서, 相統開始當時에 相統財産인 農地를 直接 耕作하고 있는 相統人을 말한다(相統稅法 施行令 第8條의 2, ①).
46. 戶主 相統의 相統稅率 優待條項은 이미 1944年 以前에도 있었으나, 現行 相統法은 1950. 3. 22 法律 第114號로 制定 公布하여, 1951. 5月 第1次 改正을 비롯, 1979年 12月 第11次 改正에 이르기까지 約30年이 經過하는 동안 계속 適用되어 왔다.
47.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48. 條件附 免稅란 特別消費稅의 免稅事項 中 同法 第18條①의 規定인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消費稅가 면세되는 경우로서, 同條 同項 第11號에는 “…… 遠洋漁業船舶 등 ……”에 사용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도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9. 農地改良組合會費는 당해 農地改良組合 区域内 會員農家가 부담하는 代表的 公課金 中의 하나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財政收入의 目的으로 農民에게 부과하는 一般租稅와는 性格이 전혀 다르다. 農組 會員農家は 주로 灌溉水供給과 農地改良 및 農業生産技術開發 등의 受惠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灌溉面積에 準하여 부담하는 傳統的으로 淤水稅, 淤稅 및 水稅 등의 概念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農組의 機能, 負擔의 性格과 內容 등의 變化로 “農地改良組合會費”로 表現이 바뀌었다.

50. 組合費의 決定은 農地改良組合의 定款上 規定事項으로서, 貯水・揚水地區間 또는 農地 等級間에 差異가 있으며, 「……特別負擔金의 負擔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에는 蒙利面積 10 a 당 揚水地區가 25 ~ 27 kg, 貯水地區가 14 ~ 20 kg 등의 特別會費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1. 慶南 咸安郡 農組의 경우, 1980. 1. 1 現在로 電動機 25 台, 原動機 34 台(金海農組는 電動機 43 台, 原動機 31 台)로서 原動機用 1年間 所要 油類代는 35,714 千원, 그에 따르는 特別消費稅 負擔額은 3,571,400원 으로 추산됨.
52. K.D.J. 朱鶴中 外,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1979. p.p. 206 ~ 208.
53. 上掲書. p. 219 ~ 222.
54. 1979 年度 耕地規模 2.0 ha 이상 農家 戶當 平均 農家所得 中 米穀所得의 比率은 約 60 % 수준이었음.
55. 1981. 2 ~ 3 月分(1981. 4 月 納付), 서울江南區 水栓 第 3280 號 家口의 例.

参 考 文 献

- 關聯各法典(國稅基本法, 地方稅法, 所得稅法, 防衛稅法, 租稅減免規制法, 相續稅法, 附加價值稅法, 特別消費稅法, 農地擴大促進法, 農村近代化促進法, 公有水面埋立法 …… 등).
- 財務部, 「韓國稅制史(上, 下)」, 1979.
- 鄭煥談, 「韓國稅制上の 問題點과 改善方向」, 1977.
- 全經麟, 「租稅行政反應에 관한 特別調査」, 1975.
- 朴成鎬, 「韓國租稅思想史」, 1978.
- 農經研, 「轉換期の 韓國農業」, 1979.
- , 「農業稅制에 관한 研究」, 1976.
- 經科番, 「高度産業社會에 副應하는 韓國의 農村開發方向」, 1980.

- 經科審, 「中長期稅制 改編에 관한 研究」, 1980.
- K.D.I ,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1979.
- ——, 「第5次5個年計劃作成을 위한 經濟社會政策協議會 — 討議資料 및 內容 —」, 1980.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各年.
- ——, 「도시가계연보」, 各年.
- 農水產部,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各年.
- ——, 「농림통계연보」, 各年.
- ——,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 各年.
-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各年.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
- 韓國稅經協會, 「改正稅法要解」, 1980.
- 內務部, 「지방재정연감」, 各年.
- ——, 「지방세정연감」, 各年.
- 韓國鑑定院, 「土地時價調査表」, 各年.
- 農協中央會, 「全國土地時價調査表」, 各年.
- 農振公, 農水產部, 「농업기반조성사업통계연보」, 各年.
- 金永勲譯, (C.Schultze) 「豫算의 決定과 PPBS」, 1972.
- 車耕權, 「租稅概論」, 1971.
- 金海東, 「調査方法論」, 1974.
- 奉明根, 「農村調査」, 1963.
- 劉鍾海, 「現代行政學」, 1981.
- 高永福, 「現代社會心理學」, 1976.
- 慮貞鉉, 「韓國近代化論」, 1980.
- 日本, 財經詳報社, 「各國의 租稅制度」, 1980.
- Aaron, Henry J., ed., Inflation and the Income Tax,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6.
- Hinrichs, H. H., A General Theory of Tax Structure Chang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Law School, 1966.